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와 關聯制度의 改善方向

序 言

最近 世界經濟가 地域化(regionalization)와 世界化(globalization)의 양상이 深化됨에 따라 世界的으로 海外直接投資의 比重은 날로 增大되고 있다. 地域主義가 擴散되고 汎世界競爭(global competition)이 치열해짐에 따라 貿易障壁의 回避 및 國際競爭力 확보를 目的으로 하는 企業의 海外直接投資의 重要性이 그 어느 때보다도 浮刻되고 있다.

이러한 趨勢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例外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 우리나라는 海外直接投資 歷史上 最初로 總投資殘額이 100억달러를 超過하는 등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世界的인 增加趨勢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急增現狀을 지켜보는 視角이 肯定的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急增하고 있는 大企業 中心의 海外直接投資의 大型化로 인한 國內資本의 海外流出이 國內經濟에 미칠 수 있는 貿易赤字 및 產業空洞化 등의 惡影響에 대해 憂慮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論議는 우리나라의 貿易收支 및 國內經濟環境이 改善되지 않는 한 持續될 것으로 豫想된다.

本 研究는 이러한 現 狀況에서 既存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理論的 背景을 考察하고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現況 把握과 그리고 經濟的 效果分析을 바탕으로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評價 및 推進方向을 提示하였다. 本 報告書는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올바른 視角을 定立할 수 있는 根據를 提示하는 作業으로서 매우 중요한 意味를 가진다. 또한 本 報告書에서는 急增하는 海外直接投資와 國內外 經濟環境의 變化 및 우리 경제의 國際的 位置를 고려한 海外直接投資 關聯制度에 대한 재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에 따라 關聯制度의 檢討 및 改善方案의

모색을 통해 政策的인 示唆點을 導出하고 있다.

本 報告書는 本 研究院의 韓道淑 博士가 執筆하였으며, 洪忠基 研究員과 安相淑 研究助員이 原稿整理에 도움을 주었다. 著者는 本 報告書의 草稿段階에서 유익한 助言을 해주신 建國大學校의 柳在元 教授와 本 研究院의 金裕燦 博士께 감사를 표하고 있다.

끝으로 本 報告書의 내용은 著者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本 研究院의 公式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12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I. 序 論	13
II. 海外直接投資의 最近 動向	15
1. 外國의 海外直接投資 最近 動向	15
가. OECD國家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15
나.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最近 動向	17
2.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最近 動向	19
가. 海外直接投資 推移	19
나. 業種別 海外直接投資	21
다.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28
라. 投資規模 및 投資比率別 海外直接投資	35
III.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背景	38
1. 海外直接投資의 定義 및 概念	38
2. 海外直接投資 理論	41
가. 傳統的 海外直接投資 理論	41
나. 日本型 海外直接投資 理論	45
다. 世界競爭戰略 理論	48
라. 經營國際化的 進化論	50
IV.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52
1. 海外直接投資가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52
가. 海外直接投資의 貿易增大 및 貿易減少效果	52

나. 既存의 研究	54
다.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와 貿易과의 關係	57
2. 海外直接投資와 產業空洞化	67
가. 產業空洞化의 定義	67
나. 外國의 事例	68
다.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와 產業空洞化	69
V. 海外直接投資制度	76
1. 許可制度	76
가. 投資要件	76
나. 海外直接投資 許可	78
2. 事後管理制度	79
3. 最近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制度의 自由化 措置	80
4. 外國 海外直接投資制度의 自由化 段階	85
5.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制度의 改善方向	86
가. 海外直接投資制度 自由化의 擴大方案	86
나. 自己資金 調達義務 및 母企業 支給保證 制限의 改善方案	88
다. 事後管理制度의 改善	89
VI. 海外直接投資 關聯 租稅制度	91
1. 海外直接投資 關聯 租稅制度	91
가. 海外直接投資 損失準備金制度	92
나. 外國納付稅額 控除制度	93
다. 間接外國納付稅額 控除制度	94
라. 海外事業에 對한 所得控除	94
마. 外國納付稅額 擬制制度	95

사. 海外資源開發事業으로부터의 配當所得에 對한 法人稅免除	95
아. 二重課稅 防止協定	95
2. 改善方向	96
가. 海外直接投資 損失準備金の 差等化	96
나. 外國納付稅額의 前期移越控除 導入 및 損金算入 期間의 延長	97
다. 二重課稅 防止協定 締結의 擴大	98
라. 間接外國稅額 控除制度의 補完	99

Ⅶ. 海外直接投資 關聯 金融, 投資保障 및 情報 支援制度 ... 102

1. 金融支援制度	102
가. 海外投資資金 貸出	102
나. 對外經濟協力基金 海外投融資資金 貸出	105
다. 外國法人에 對한 事業資金 貸出	105
라. 域外資金 融資支援制度	106
마. 外國換錢銀行의 海外投資資金 貸出	107
바. 其他 金融支援制度	107
2. 投資保障 및 情報支援制度	108
가. 海外投資保險制度	108
나. 投資保障協定	111
다. 情報支援制度	111
3. 改善方向	112
가. 金融支援制度	112
나. 投資保障 關聯 支援制度	114
다. 情報支援制度	115

VIII. 海外直接投資에 對한 評價 및 推進方向	117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要因	117
가. 國內生産費用的 增加	117
나.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	120
다. 世界的 競爭에 따른 企業의 世界化 趨勢	121
2. 海外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122
가. 海外直接投資와 貿易	122
나. 海外直接投資와 産業空洞化	123
3. 評價 및 推進方向	125
가. 評價	125
나. 推進方向	127
IX. 政策的 示唆點	132
〈參考文獻〉	138
〈附錄 1〉 海外直接投資 關聯法規	150
1. 外國換管理規定	150
2. 海外直接投資指針	166
〈附錄 2〉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關聯制度	172
1.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管理制度	172
2. 日本의 主要 海外直接投資 租稅支援制度	174
3.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金融支援	175
4.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保險支援制度	177
5.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情報支援體制	179

表 目 次

〈表 II - 1〉 OECD國家의 海外 및 外國人直接投資 動向	18
〈表 II - 2〉 年度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20
〈表 II - 3〉 業種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22
〈表 II - 4〉 製造業 業種別 投資 比重 推移	23
〈表 II - 5〉 主要國의 製造業 賃金 推移	24
〈表 II - 6〉 主要國의 賃金上昇率 推移	26
〈表 II - 7〉 中小企業 海外投資比重的 年度別 推移(總投資 基準)	28
〈表 II - 8〉 件當 平均投資規模 變化推移(投資殘額 基準)	28
〈表 II - 9〉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29
〈表 II - 10〉 舊共產圏과 NAFTA地域의 海外投資 推移	31
〈表 II - 11〉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5大 投資對象國	32
〈表 II - 12〉 우리나라의 地域別 · 投資規模別 海外投資 現況	36
〈表 II - 13〉 우리나라의 業種別 · 投資規模別 海外直接投資 現況	36
〈表 II - 14〉 우리나라의 業種別 · 投資比率別 海外直接投資 現況	37
〈表 IV - 1〉 業種別 輸出(通關)	64
〈表 IV - 2〉 業種別 輸入(通關)	65
〈表 IV - 3〉 主要地域別 輸出入:先進國	66
〈表 IV - 4〉 主要地域別 輸出入:開發途上國	66
〈表 IV - 5〉 우리나라의 産業構造 推移	71
〈表 IV - 6〉 우리나라의 産業別 經濟成長率	71
〈表 IV - 7〉 失業率 및 製造業 · 서비스業의 雇傭比重 變化 推移	72
〈表 IV - 8〉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規模(國際收支基準)	74
〈表 IV - 9〉 主要國別 國內投資 및 直接投資	74

〈表 V-1〉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 段階	81
〈表 VI-1〉 우리나라의 二重課稅 防止協定 現況	96
〈表 VII-1〉 海外投資 金融支援制度 現況	103
〈表 VII-2〉 遊休設備 海外移轉資金 貸出 實績	108
〈表 VII-3〉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金融支援 實績	109
〈表 VII-4〉 海外投資保險 引受實績	110
〈表 VII-5〉 投資保障協定締結國	111
〈表 VIII-1〉 製造業의 賣出額 對比 主要 費用의 推移	118
〈表 VIII-2〉 主要國의 製造業 生産職 賃金 比率 (美國을 100으로 기준)	118
〈表 VIII-3〉 主要國 製造業의 金融費用負擔率(金融費用/賣出額) ..	119
〈表 VIII-4〉 外國의 主要工團 分讓價	120
〈附表 1〉 最近의 主要大規模 海外直接投資(1995년 이후)	146
〈附表 2〉 우리나라의 年度別·投資規模別 海外投資 現況	147
〈附表 3〉 우리나라의 地域別·投資比率別 海外投資 現況	148
〈附表 4〉 外國支店과 外國子會社의 租稅負擔 比較	148
〈附表 5〉 外國納付稅額 控除限度額 算出方式	149

圖 目 次

[圖 II-1] 年度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20
[圖 II-2] 主要國 製造業의 賃金 推移	25
[圖 II-3a] 主要國의 賃金上昇率 推移(Ⅰ)	27
[圖 II-3b] 主要國의 賃金上昇率 推移(Ⅱ)	27
[圖 II-4]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30
[圖 III-1] 海外直接投資와 海外間接投資의 構成	38
[圖 III-2] 海外直接投資企業 生産의 製品週期	44
[圖 IV-1] 海外直接投資가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54
[圖 IV-2] 海外直接投資에 의한 産業空洞化 過程	67
[圖 VII-1] 經濟發展과 産業의 高度化 過程	124

I. 序 論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1968년 對인도네시아의 삼림개발투자를 효시로 하여 초기에는 資源開發 및 輸出增大를 목적으로 제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추세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 이어져 왔다. 그러나 1986년 經常收支 黑字의 實現과 規制緩和에 힘입어 海外直接投資가 비로소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國內生産費用의 증가와 해외의 保護貿易主義의 深化에 따라 더욱 급증하게 되었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추세는 199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해외직접투자의 總投資規模가 100억달러를 超過하는 등 本格化되고 있다.

이러한 海外直接投資의 급증요인으로는 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한 國內企業環境의 惡化와 規制의 緩化 및 世界經濟의 地域主義를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國內外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의 國際化가 그 어느 때보다도 加速化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世界經營戰略에 따른 大規模 海外直接投資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같은 해외직접투자의 大型化 趨勢에 따른 貿易收支效果 및 産業空洞化 등이 우려되고 있다. 本 報告書에서는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의 經濟的 波及效果를 판단하는 基準으로서 해외직접투자와 貿易과의 관계 및 우리나라의 産業構造, 雇傭水準, 海外直接投資의 規模에 대한 分析을 提示하고 있는데 現 時點에서의 經濟的 效果는 肯定的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국내에서의 産業構造調整과 해외직접투자의 推進 結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기업단계 및 산업단계에서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능동적인 추진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초기의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 관련정책은 外國換管理의 차원에서 수

출증대 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매우 제약적이었으나 최근 국내외 環境變化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인해 관련제도의 自由化가 대폭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許可 및 事後管理制度에 대한 自由化는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향후 전망과 세계의 경제환경을 감안하면 完全한 自由化로의 轉換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本 報告書에서는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制度 自由化의 擴大方案과 事後管理制度의 改善方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租稅, 金融 및 投資保障과 情報 支援 制度의 경우는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해외직접투자의 活性化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와 環境變化에 따른 제도의 調整 및 改善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관련제도의 實效性을 높이고 制度의 導入趣旨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本 報告書에서는 해외직접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제도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改善方向을 提示하고 있다.

本 報告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Ⅱ章에서는 外國과 우리나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最近 動向을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국내외 해외투자 현황을 파악하며 第Ⅲ章에서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理論的 背景의 정리 및 고찰을 통해 海外直接投資의 類型 및 國際化 段階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第Ⅳ章에서는 해외직접투자의 經濟的 效果를 貿易과 産業 空洞化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第Ⅴ章에서는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制度를 논의함에 있어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許可 및 事後管理와 自由化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改善方向을 提示하였다. 第Ⅵ章과 第Ⅶ章에서는 해외직접투자 관련 租稅, 金融, 投資保障 및 情報 支援制度를 정리하며 이에 따른 각각의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綜合的인 評價와 推進方向은 第Ⅷ章에서 다루었으며 마지막으로 第Ⅷ章에서는 關聯制度에 대한 政策的 示唆點을 提示하였다.

Ⅱ. 海外直接投資의 最近 動向

1. 外國의 海外直接投資 最近 動向

세계의 海外直接投資는 1980年代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0年代 초반에는 다소 둔화되었으며 1993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추세는 각 기업의 世界化와 각국의 관련제도의 自由化 등을 포함한 투자유치 경쟁에 힘입어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세계적 해외직접투자의 지역별 특징으로는 1980年代에 주류를 이루었던 선진국간의 해외직접투자와 1980年代 末부터 급증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선진국의 對開發途國 해외직접투자로 대별될 수 있다. 이러한 선진국의 對開發途國 해외직접투자는 자본과 기술이 열악한 동남아와 중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빠른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業種別 海外直接投資의 세계적 추세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일차산업을 비롯한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서비스업과 技術 및 資本集約的 部門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전자·정보 부문의 투자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가. OECD國家의 海外直接投資 動向

1995년도 OECD국가들의 海外直接投資는 1994년도의 정체에서 벗어나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였다(〈表 Ⅱ-1〉 참조). 1995년도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2,429억달러로 근래의 최고치인 1990년의 2,115억달러를 능가하였으며 실질적인 규모는 2,500억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表 II-1>에서도 볼 수 있듯이 對OECD 外國人直接投資(inflow)도 急增하여 1995년도 외국인투자액 또한 1990년의 1,638억달러를 초과한 약 2천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IMF의 통계에 따르면 OECD국가의 해외직접투자(outflow)가 세계의 총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3.8%인 반면 OECD 내의 외국인 직접투자(inflow)의 비중은 65.3%로 OECD의 純海外直接投資國(net foreign direct investor)으로서의 位相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OECD국가의 海外直接投資의 급증에 대한 美國의 寄與度는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도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969억달러로 OECD의 총해외직접투자의 40% 정도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에 비해 96.3%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 다음으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기여도가 큰 국가는 독일로 349억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1994년도의 146억달러에 비하면 거의 250%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95년에 나타난 독일 및 영국 등 서유럽국들의 대미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미국 내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증가를 가져다 주었다¹⁾.

전반적인 OECD국가의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에는 특히 의약품산업 및 통신·정보산업 부문 등에서의 기업의 合併과 引受(M&A)를 통한 비용의 삭감과 새로운 시장진입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²⁾.

1) 1995년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는 747억달러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대비 약 50%의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2) 1995년 세계의 국경을 초월한(cross-border) M&A는 전년도 대비 17%가 증가한 2,29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자료: 『한일경협』, 1996. 9).

나.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最近 動向

1980年代 中반까지 日本의 海外直接投資는 다른 선진국들에 뒤지고 있었으나 1986년 말에는 日本의 海外直接投資의 殘存投資가 580억달러 수준에 달하였다. 이 당시 미국의 해외직접투자액은 2,600억달러로 일본은 미국의 25% 정도 수준이었으며 일본기업의 4% 정도가 海外生産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다³⁾. 對日本 외국인직접투자는 공산품을 비롯한 제조업이 대부분인 반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주류업종에는 천연자원, 무역, 금융, 보험 및 부동산 등이 제조업과 함께 포함되고 있다.

1980年代 中반 이후 급격히 증가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貿易摩擦의 回避와 生産費用의 節減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1985년 이후 해외직접투자는 엔화의 강세와 외환규제의 완화에 힘입어 해외로 생산기지를 대거 이전하는 제조업 부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금융 및 투자기관의 활발한 투자로 증가되었으며, 이후 1988년부터 1990년 사이에 나타난 엔화의 약세로 다소 주춤하는 듯하였으나,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엔화강세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움직임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表 II-1〉 참조).

1995년도 日本의 海外直接投資는 1994년의 179억달러보다 증가한 약 223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의 400억달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감소는 銀行과 投資機關 및 保險業의 海外投資의 鈍화와 海外不動産投資의 縮小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조업 부문의 對先進國 및 對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日本 通産省 資料⁴⁾에 의하면 1990년대 초 이전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特徵은 자국 내에서 해외생산에 필요한 부품이나 원자재를 수출하

3) 1986년 당시 미국과 독일기업의 해외생산 의존도는 각각 17%, 20%로 나타났다.

4) 日本 通産省, 「日本企業の 海外事業活動」, 1995.

〈表 II - 1〉 OECD國家의 海外 및 外國人直接投資 動向

(單位：百萬달러)

	해 외 직 접 투 자			외 국 인 직 접 투 자		
	1993	1994	1995	1993	1994	1995
호 주	1,087	5,908	-	3,381	3,789	-
오 스 트 리 아	1,467	1,201	1,050	982	1,314	530
벨기에·룩셈부르크	3,843	2,492	-	10,458	8,899	-
캐 나 다	5,805	4,778	4,782	4,980	6,031	11,182
체 코	90	116	-	568	862	2,558
덴 마 크	1,379	4,040	3,018	1,684	4,890	4,179
핀 란 드	1,407	4,298	1,517	865	1,578	917
프 랑 스	12,167	10,895	9,582	12,142	10,955	12,156
독 일	19,557	14,587	34,890	240	-3,003	9,012
그 리 스	-	-	-	977	981	-
헝 가 리	11	49	1,480	2,339	1,320	4,570
아 이 슬 란 드 ¹⁾	16	-	-	-5	-	-
아 일 랜 드	-	-	-	88	90	-
이 탈 리 아 ²⁾	7,231	5,108	3,210	3,751	2,236	4,347
일본 ³⁾	13,714	17,938	22,262	86	888	37
멕시코	-	-	-	4,901	7,978	4,500
네 덜 란 드	10,993	11,502	7,929	6,507	4,371	5,889
뉴 질 란 드	-1,455	2,259	1,483	2,376	2,790	2,796
노 르 웨 이	882	1,862	2,446	1,951	651	1,363
포 루 투 갈	107	283	606	1,378	1,254	533
스 페 인	2,599	3,899	3,532	6,746	10,024	6,936
스 웨 덴	1,394	6,612	10,367	3,690	6,328	13,672
스 위 스	8,765	10,554	-	-83	2,947	-
터 키	175	78	-	1,016	830	-
영 국	25,697	29,721	37,839	14,536	11,066	29,910
미 국	72,601	49,370	96,897	41,107	49,448	74,701
OECD 계	189,532	187,550	242,890	126,661	138,517	189,788

註：1) 재투자수익을 포함하지 않는다.

2) 1995년 자료 잠정치

3) 각국의 국제수지통계를 기초로 집계되어 있다.

資料：OECD, *Financial Market Trends*, No. 64, June 1996.

는 등 輸出增大 效果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해외직접투자 업종으로는 식료품, 전기기계와 수송기계 부문의 제조업을 들고 있다. 그러나 1986년, 1990년, 1994년 자료를 이

용한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현지생산이 본격화되고 해외기업의 현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엔화의 강세에 따라 식료품, 섬유 및 기계 부문을 비롯한 여러 업종에 걸쳐 저렴한 상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最近 動向

가. 海外直接投資 推移

우리나라 최초의 海外直接投資는 1968년 資源開發을 목적으로 한 인도네시아의 삼림개발투자를 들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는 그 이후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까지는 저조하였으나 1986년 經常收支 黑字의 실현과 規制緩和 및 國內의 經濟環境 變化에 힘입어 급증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1990년과 1991년에 다소 주춤하였으나 1992년에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1993년 이후에 다시 급증하고 있다. 1995년 12월말 현재 투자잔액이 5,326건으로 102억 2,468만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 해외투자 역사상 처음으로 총투자액이 100억달러를 초과한 것이다. 이 중 1986년 이후의 실적이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고 금액 기준으로는 95.5%를 차지하고 있어 투자의 대부분이 1980년대 중반 이후의 國內의 환경변화에 기인한 것임을 말해준다.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선진국들의 保護貿易主義에 따른 수입규제의 심화, 원화의 절상, 임금 및 지가의 상승과 잦은 노사분규 등으로 수출 및 국내생산 여건이 악화되어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함에 따라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에는 生産費用의 節減을 통해 價格競爭力 提高를 목적으로 하는 開發途上國 進出型 해외직접투자와 무역장벽의 회피를 위한 先進國 進出型 등이 대표적이며 이외에도 자원공급의 확보를 위한 資源開發型과 선진국의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技術習得型 등이 있다.

〈表 II - 2〉 年度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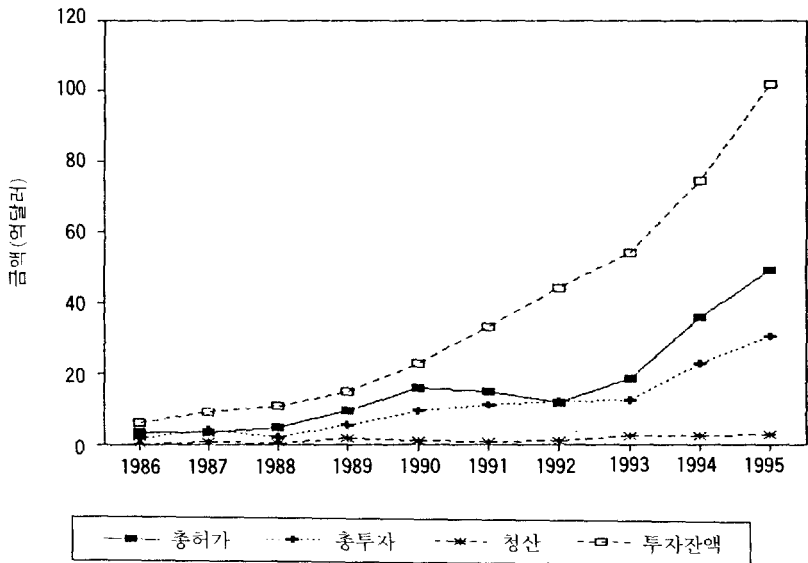
(單位：件, 千달러)

	총허가		총투자		청산 ¹⁾		투자잔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1968~85	691	875,962	603	570,646	160	86,715	443	461,039
1986	74	364,912	52	183,877	19	22,693	464	619,326
1987	110	371,061	92	410,508	32	89,611	523	939,423
1988	253	479,349	176	223,761	32	59,665	664	1,096,046
1989	368	943,346	269	569,590	23	177,203	910	1,488,433
1990	515	1,610,528	338	958,632	22	146,141	1,226	2,300,924
1991	527	1,510,690	443	1,115,046	23	88,140	1,646	3,327,830
1992	631	1,206,655	497	1,218,350	35	120,187	2,109	4,425,993
1993	1,049	1,875,711	682	1,260,274	66	245,519	2,726	5,440,748
1994	1,947	3,587,395	1,475	2,305,090	68	269,221	4,133	7,476,617
1995	1,560	4,913,530	1,285	3,058,943	92	310,882	5,326	10,224,678
누 계	7,705	17,703,917	5,893	11,840,707	567	1,616,029	15,030	28,189,600

註：1) 清算+減資+貸付金回收.

資料：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 연도.

[圖 II - 1] 年度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나. 業種別 海外直接投資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를 業種別로 보면 1996년 6월 말 현재 잔액 기준으로 製造業이 56.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무역업이 21.0%, 광업이 6.5%를 기록하고 있다. 그 밖에 건설업, 수산업, 임업, 운수업 등의 순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

投資業種의 年度別 現況을 살펴보면 <表 II-3>에서도 나타나듯이 1970년대 후반까지는 貿易業, 製造業, 建設業 및 林業部門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1979년도부터는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광업부문의 투자도 급증하였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製造業 및 貿易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1986년 이후 지속적으로 급증하여 전체 투자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6년 말의 26.4%에서 1996년 6월 말에는 56.5%로 상승하였다.

製造業에 대한 업종별 투자구성을 보면 섬유·의복, 1차금속 및 조립 금속 등 勞動集約的 產業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주원인은 국내에서는 生産要素의 價格上昇 등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국내 기업들이 개발도상국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國際競爭力 提高를 꾀하려는 데 있다. <表 II-5>와 <表 II-6>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의 임금수준 및 임금상승률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임금상승률은 1987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투자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에 의한 소규모 소액투자에 의해 급증하였으며, 이는 <表 II-7>에서와 같이 중소기업의 해외직접투자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반면 금액면에서는 건수에 비해 저조한 소액투자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 자유화 조치와 기타 여건의 변화로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대기업 중심의 대형투자로 인해 우리나라의 건당 평균 해외직접투자 규모도 1994년의 이후 大型化 추세를 보이고 있다(<表 II-8>과 <附表 1> 참조).

〈表 II - 3〉 業種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單位: 件, 千달러)

		계	광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건설업	무역업	기타
1968	건수	192	0	7	17	14	15	112	27
~77	금액	79,413	0	20,277	6,277	14,810	3,453	16,383	18,213
1978	건수	85	2	1	8	6	8	53	8
	금액	41,836	420	2,050	1,127	8,850	11,522	6,820	11,047
1979	건수	45	1	1	6	4	6	21	6
	금액	21,047	1,034	2,595	2,894	2,804	5,906	2,898	2,916
1980	건수	40	0	0	1	8	6	20	5
	금액	17,764	0	0	125	6,451	5,449	4,487	1,252
1981	건수	51	2	1	5	7	6	24	6
	금액	35,080	173	10,400	196	4,572	4,475	7,895	7,369
1982	건수	49	4	1	1	6	6	19	4
	금액	100,839	69,136	6,985	60	6,123	5,930	8,895	3,710
1983	건수	56	1	2	4	13	9	19	9
	금액	108,919	45,246	19,339	116	25,925	2,641	12,198	3,454
1984	건수	46	1	0	1	9	7	17	11
	금액	50,186	15,089	5,286	98	13,356	4,480	7,874	4,003
1985	건수	39	2	0	2	12	2	16	5
	금액	115,562	71,424	3,211	2,089	20,747	1,590	11,122	5,379
1986	건수	52	0	0	3	22	1	19	7
	금액	183,877	81,421	469	3,831	73,156	1,911	15,378	7,711
1987	건수	92	3	0	4	32	4	37	12
	금액	410,508	218,879	392	2,329	156,169	2,758	19,629	10,352
1988	건수	176	2	1	4	68	9	69	23
	금액	223,761	64,993	450	13,618	82,154	6,365	42,718	13,463
1989	건수	269	1	1	9	146	3	79	30
	금액	569,590	75,930	34,150	39,197	278,504	12,914	61,257	67,638
1990	건수	338	7	0	17	192	7	78	29
	금액	958,632	151,959	5,550	27,854	488,905	4,931	223,191	54,524
1991	건수	443	4	0	22	277	4	94	36
	금액	1,115,096	123,294	250	14,404	598,767	12,662	232,939	143,682
1992	건수	497	6	1	30	345	3	87	20
	금액	1,218,350	150,159	1,900	26,032	651,340	466	303,268	75,449
1993	건수	682	6	4	12	514	16	94	29
	금액	1,260,274	144,701	4,547	7,752	536,073	20,150	413,400	127,562
1994	건수	1,476	13	3	20	1,083	29	146	162
	금액	2,305,422	113,653	1,035	8,734	1,496,286	64,317	487,897	124,117
1995	건수	1,285	6	2	13	906	40	116	188
	금액	3,059,088	74,335	3,215	12,396	1,981,618	75,834	295,917	579,507
1996	건수	672	8	3	10	474	12	44	121
1~6	금액	2,337,025	102,083	3,222	2,630	1,185,419	41,966	630,230	371,475
누계	건수	6,565	69	27	189	4,135	193	1,164	524
	금액	14,177,877	1,503,600	125,323	171,759	7,631,013	289,720	2,804,396	1,088,307
잔존	건수	5,956	60	22	135	3,973	142	92	697
	금액	12,030,016	786,371	80,859	91,400	6,799,874	252,170	2,524,928	1,494,414

資料: 재무부, 『재정금융통계』, 각 호.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 호.

〈表 II-4〉 製造業 業種別 投資 比重 推移¹⁾

(單位: %, 件, 百萬달러)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음 식 료 품	2.4	2.7	6.4	5.6	5.1	5.4	4.5	4.9	4.9	4.0	6.0	3.8	6.4			
섬유·의복 ²⁾	10.3	17.0	13.7	13.1	27.6	13.7	27.3	13.8	25.4	13.0	25.4	12.1	22.9			
신발·가죽 ²⁾	-	-	4.8	4.0	6.9	4.0	7.6	4.7	8.4	5.0	9.4	4.5	8.8			
목재·가구	3.1	1.8	2.5	3.9	4.0	4.1	4.2	3.9	3.9	2.8	4.2	2.5	4.1			
종이·인쇄	2.3	2.9	1.6	2.0	1.6	2.2	1.5	2.4	1.5	2.1	1.8	1.6	1.8			
석유·화학	7.9	10.0	13.3	11.6	9.5	1.6	8.4	11.4	8.8	9.7	9.8	8.8	9.5			
비금속광물	8.0	6.7	3.8	6.0	3.7	5.2	3.3	5.2	3.1	5.5	3.6	6.1	3.8			
1차 금속	41.0	29.3	23.3	16.1	1.8	7.5	2.0	14.9	2.3	11.1	3.3	9.1	3.5			
조립금속 ³⁾	23.5	26.2	27.2	30.4	18.4	6.8	17.4	27.3	15.9	35.2	11.7	40.2	16.6			
기계장비 ³⁾	-	-	-	2.1	3.8	2.5	3.8	2.7	3.6	3.6	5.0	4.0	5.0			
기타 ³⁾	1.5	3.4	3.2	5.2	17.6	6.9	20.0	8.8	22.2	8.0	19.9	7.2	17.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총 금액 및 총 건 수	389.9	531.0	1,061.2	1,648.2	767	2,273.7	1,098	2,749.0	1,589	4,191.1	2,552	6,013.5	3,521			

註: 1) 섬유·의복 및 신발·가죽은 1989년까지 섬유·신발로 분류됨.

2) 기계장비는 1990년까지 조립금속에 포함됨.

3) 1990년 이전까지 기타에 포함된 봉제완구는 1991년부터 섬유·의복으로 분류됨.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 연도.

〈表 II-5〉 主要國의 製造業 賃金 推移

(單位: 달러)

	한국	미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 시아	태국	인도네 시아 ¹⁾	중국	필리핀
1970	536.2	6933.7	2381.6	-	761.0	2312.0	-	-	-	-	437.0
1971	534.1	7406.9	2782.8	-	893.1	2363.3	-	-	-	-	457.1
1972	569.3	8044.9	3705.9	-	1063.5	2522.5	-	-	-	-	494.4
1973	674.1	8655.9	5135.3	-	1294.6	2718.1	-	-	-	-	534.6
1974	896.3	9193.6	6017.4	-	1403.0	3138.4	-	-	-	-	555.1
1975	951.5	9921.1	6620.0	1083.2	1474.7	3674.5	-	-	400	-	-
1976	1281.4	10884.7	7427.7	1277.1	1721.6	3850.7	-	-	484	-	-
1977	1714.9	11902.8	8971.9	1535.4	2005.1	4060.2	-	-	612	-	-
1978	2303.5	12962.1	12235.8	1754.0	2250.3	4268.2	-	-	647	-	-
1979	2963.2	14005.7	12471.7	2183.1	2477.7	4766.6	-	-	573	-	-
1980	2897.8	15008.2	12943.7	2678.9	2830.3	5371.9	-	740.8	708	523.2	1373.9
1981	3104.3	16536.0	14132.4	3107.1	2909.7	-	-	828.2	858	462.3	1493.2
1982	3317.6	17173.5	12987.8	3210.4	3715.0	-	-	884.9	1024	423.8	1533.0
1983	3508.2	18412.2	14101.6	3335.4	3410.4	-	-	890.1	868	414.5	1347.6
1984	3651.6	19449.6	14765.3	3689.1	3595.7	-	-	1379.2	843	425.8	1180.0
1985	3719.3	20091.2	15068.2	3823.5	3936.5	-	3083.4	1248.6	882	378.3	1258.2
1986	4009.1	20592.5	21748.0	4434.6	4259.8	11709.6	2956.5	1200.5	840	369.9	1285.0
1987	4795.2	21128.1	25982.0	5805.7	4777.2	12105.6	2986.2	-	715	380.7	1480.2
1988	6448.2	21778.1	29839.7	7140.9	5471.8	13390.8	2841.0	-	786	478.8	1703.7
1989	8786.2	22343.4	29282.2	8843.6	6280.0	14914.8	2835.2	1398.8	829	531.5	1899.6
1990	10020.4	22976.7	29174.9	9838.1	7190.1	16740.0	2928.0	1574.5	905	437.0	2104.3
1991	11290.7	23661.6	32782.5	10950.1	8058.0	18621.6	3137.3	1734.4	-	431.2	2109.7
1992	12282.1	24432.7	35303.0	12862.2	8810.6	20234.4	3740.3	1897.3	-	503.0	-
1993	13230.8	25274.1	40074.4	13110.6	9760.1	21813.6	-	2018.0	-	581.0	-
1994	15264.2	26360.9	-	13936.7	10763.4	23943.6	-	2018.3	-	496.9	-
1995	-	26758.7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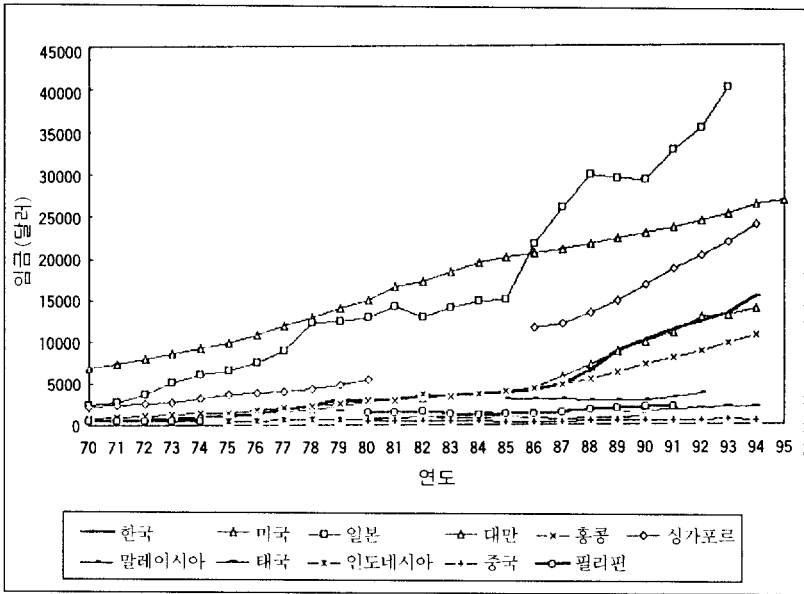
註: 1) 추정치임.

資料: 미국 노동부, *Employment and Earnings*, Vol. 43, No. 7, July 1996.대만,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88, 1994.

일본 노동성, 『海外勞動白書』, 1994.

ILO, *Year book of Labor Statistics*, 각 연도.

[圖 II-2] 主要國 製造業의 賃金 推移



〈表 II -6〉 主要國의 賃金上昇率 推移

(單位: %)

	한국	미국 ¹⁾	일본	대만 ¹⁾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¹⁾	중국	필리핀
1971	-0.39	6.82	16.85	-	17.36	2.22	-	-	-	-	4.60
1972	6.59	8.61	33.17	-	19.08	6.74	-	-	-	-	8.16
1973	18.41	7.59	38.57	-	21.73	7.75	-	-	-	-	8.13
1974	32.96	6.21	17.18	-	8.37	15.46	-	-	-	-	3.83
1975	6.16	7.91	10.01	-	5.11	17.08	-	-	-	-	-
1976	34.67	9.71	12.20	17.90	16.74	4.80	-	-	21.00	-	-
1977	33.83	9.35	20.79	20.23	16.47	5.44	-	-	26.45	-	-
1978	34.32	9.60	36.38	14.24	12.23	5.12	-	-	5.72	-	-
1979	28.64	8.05	1.93	24.47	10.11	11.68	-	-	-11.44	-	-
1980	-2.21	7.16	3.78	22.71	14.23	12.70	-	-	23.56	-	-
1981	7.13	10.18	9.18	15.98	2.81	-	-	11.80	21.19	-11.64	8.68
1982	6.87	3.86	-8.10	3.32	27.68	-	-	6.85	19.35	-8.33	2.67
1983	5.75	7.21	8.58	3.89	-8.20	-	-	0.59	-15.23	-2.19	-12.09
1984	4.09	5.63	4.71	10.60	5.43	-	-	54.95	-2.88	2.73	-12.44
1985	1.85	3.30	2.05	3.64	9.48	-	-	-9.47	4.63	-11.16	6.63
1986	7.79	2.50	44.33	15.98	8.21	-	-4.12	-3.85	-4.76	-2.22	2.13
1987	19.61	2.60	19.47	30.92	12.15	3.38	1.00	-	-14.88	2.92	15.19
1988	34.47	3.08	14.85	23.00	14.54	10.61	-4.86	-	9.93	25.77	15.10
1989	36.26	2.60	-1.87	23.84	14.77	11.38	-0.20	-	5.47	11.01	11.50
1990	14.05	2.83	-0.37	11.25	14.49	12.24	3.27	12.56	9.17	-17.78	10.78
1991	12.68	2.98	12.37	11.30	12.07	11.24	7.15	10.16	-	-1.33	0.26
1992	8.78	3.26	7.69	17.46	9.34	8.66	19.22	9.39	-	16.65	-
1993	7.72	3.44	13.52	1.93	10.78	7.80	-	6.36	-	15.51	-
1994	15.37	4.30	-	6.30	10.28	9.76	-	0.01	-	-14.48	-
1995	-	1.51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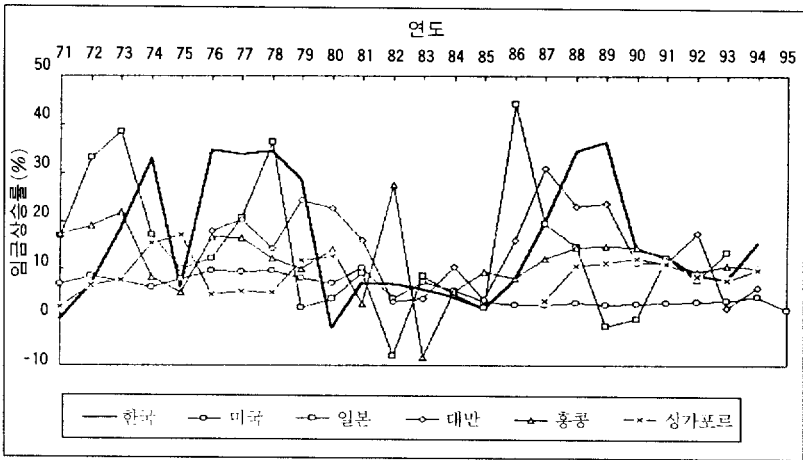
註: 1) 추정치임.

資料: 미국 노동부, *Employment and Earnings*, Vol. 43, No. 7, July 1996.대만, *Yearbook of Labor Statistics*, 1988,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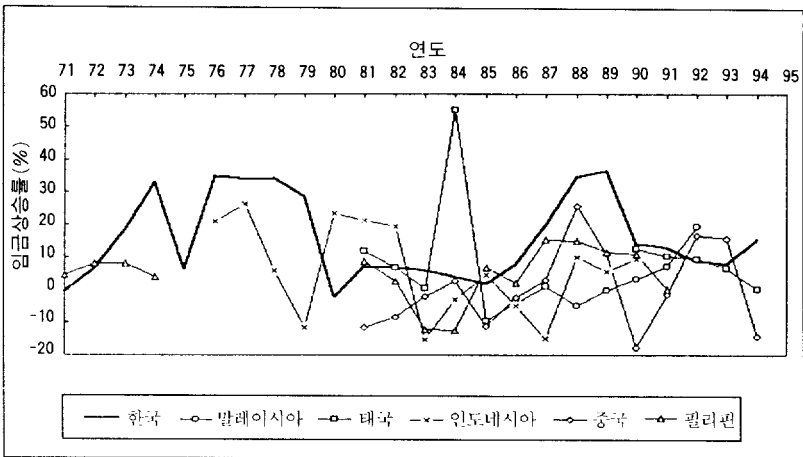
일본 노동성, 『海外勞動白書』, 1994.

ILO, *Year book of Labor Statistics*, 각 연도.

[圖 II - 3a] 主要國의 賃金上昇率 推移(Ⅰ)



[圖 II - 3b] 主要國의 賃金上昇率 推移(Ⅱ)



〈表 II-7〉 中小企業 海外投資比重的 年度別 推移(總投資 基準)

(單位: %)

	1986	198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5.1~6	1996.1~6	殘存
건 수	26.9	34.1	53.4	62.3	73.2	79.3	77.6	71.1	71.9	52.7	64.5
금액	2.1	14.3	16.3	17.7	20.2	24.9	23.0	19.7	25.7	18.9	18.2

資料: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 1996.

〈表 II-8〉 件當 平均投資規模 變化 推移(投資殘額 基準)

(單位: 百萬달러)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5.1~6	1996.1~6
허가기준	3.13	2.87	1.91	1.79	1.84	3.15	2.3	3.5
총투자기준	2.83	2.48	2.51	1.93	1.59	2.38	3.48	2.13

資料: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 1996.

다.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우리나라의 1995년도 海外直接投資의 지역별 투자순위는 아시아, 북미, 유럽 및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對아시아 투자는 1,008건으로 16억 4,053만달러의 실적을 보였다. 이에 비해 對北美 투자는 137건으로 5억 7,329만달러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對유럽 투자는 78건으로 6억 1,125만달러에 그쳤다. 투자 건수면으로는 아시아가 전체의 78.4%를 차지하였으나 금액면으로는 53.6%에 머무르는 등 對아시아 투자가 對先進國 투자에 비해 소규모임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 및 아세안 국가에 집중되어 있는 生産費用 節減型 海外直接投資는 국내에서 價格競爭力을 상실한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진 반면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對先進國 해외직접투자는 시장점유 및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들에 의해 대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⁵⁾. 특히 북미지역에 대해서는 NAFTA의 결성에 따른 수출장벽의 회피와 시장접근을 목

적으로 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1996년 상반기중의 지역별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아시아⁶⁾ 및 미주지역⁷⁾에 대한 투자가 전년동기 대비 59.1%, 122.9%씩 각각 증가하였으며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44.6% 감소하였다. 기타 지역으로 중남미에 대한 투자도 1995년 동기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⁸⁾.

〈表 II - 9〉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推移¹⁾

(單位: %, 百萬달러)

	86달산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아 시 아	18.9 (31.4)	32.2	20.2	22.8	31.3	38.3	44.3	41.5	46.5 (82.1)	53.6 (78.4)
아 세 안 ²⁾	13.4 (11.6)	30.9	13.0	15.9	23.9	29.0	19.8	10.5	7.1 (15.0)	13.6 (10.5)
중 국 ³⁾	0	0	0	1.1	1.7	3.8	11.2	20.6	27.3 (56.6)	26.6 (56.4)
북 미 ⁴⁾	36.2 (36.8)	43.2	43.4	49.7	45.3	42.1	31.2	29.3	24.4 (9.3)	17.8 (10.4)
미 국	23.6 (34.5)	40.9	35.2	29.6	35.7	35.1	27.6	28.8	22.6 (8.7)	17.5 (9.8)
유 럽	9.7 (6.5)	1.7	8.6	3.5	9.9	8.2	11.5	14.4	19.4 (3.9)	20.0 (6.1)
기 타	35.2 (25.3)	22.9	28.1	24.1	13.4	11.3	13.0	14.8	9.7 (4.7)	8.5 (5.1)
금 액 (건 수)	633 (475)	411	244	570	959	1,125	1,255	1,317	2,347 (1,476)	3,059 (1,285)

註: 1) 총투자액 기준.

2)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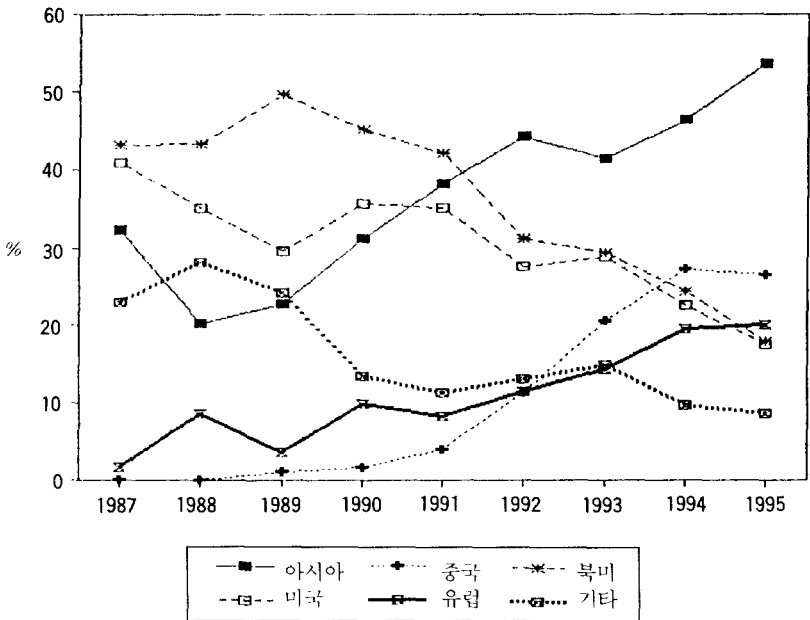
3) 제3국 우회진출 제외.

4) 미국, 캐나다.

資料: 한국은행, 『해외투자통계연보』, 각 연도.

- 5) 1984년 포항종합제철에 의한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2억 2천만달러 규모로 1차급속의 비중을 크게 증가시킨 요인이다.
- 6) 1996년 상반기중 對아시아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인도에 대한 자동차공장(2억 8천만 달러) 설립 및 대형사무실과 상가 건설을 포함한 대형투자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 7) 전자 및 반도체(현대중공업이 미국에 직접 투자한 1억 5천만달러 상당의 증액투자) 등의 대형투자가 대미 해외직접투자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圖 II-4] 地域別 海外直接投資 推移



주요국별 투자순위를 건수 기준으로 보면 中國이 725건(8억 1,445만 달러)으로 단연 선두를 기록했으며 다음은 美國이 126건(5억 3,428만 달러), 필리핀이 70건(5,700만 달러), 그리고 홍콩이 35건(8,575만 달러), 베트남이 34건(1억 7,761만 달러)의 투자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투자금액면에서 보면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필리핀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對中國 투자는 중소기업들의 풍부한 低賃金 勞動力을 이용한 소규모 製造業投資와 시장선점을 위한 투자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對베트남 투자는 1992년 수교 이후 국제경쟁력에 대한 비교우위를 상실한 제조업 부문의 국내기업들이 양질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생산지를 대거 이전함으로써 급증하였다.

8) 1996년 상반기중의 대규모 對中南美 해외직접투자로 오리온전기의 멕시코 브라운관 공장(5천만 달러), 엘지전자의 브라질 PC모니터공장(3,400만 달러), 포항제철의 브라질 철광석공장(3,800만 달러) 등이 포함된다.

특정 經濟地域에 대한 海外直接投資를 살펴보면 구공산권에 대한 투자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對NAFTA 투자의 대부분은 아직도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表 II - 10〉 舊共產圈과 NAFTA地域의 海外投資 推移

(單位: 件, 千달러)

		1991		1992		1993		1994		199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구 공 산 권	중국	69	42,468	171	140,572	377	271,696	836	640,806	725	814,445
	베트남	-	-	8	16,775	15	26,988	44	90,355	34	177,613
	CIS	6	17,756	11	4,241	14	18,153	22	82,679	35	89,041
구동구권 ¹⁾		3	3,460	4	10,645	6	13,457	6	63,981	11	159,606
N A F T A	미국	84	395,244	63	346,872	54	379,646	128	530,794	126	534,283
	캐나다	4	68,066	-	44,770	4	6,450	9	42,490	7	11,589
	멕시코	2	10,835	1	324	7	5,004	4	8,724	5	40,152

註: 1)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資料: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해외투자동계연보』, 1996.

1) 東南亞

19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의 노동집약적 제조업 분야의 주요 해외 직접투자국들로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아세안국가들을 들 수 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베트남 및 필리핀이 중요한 해외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는 비교적 높은 임금으로 인해 노동집약적 제조업보다 전기·전자 등 조립 금속 부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천연자원을 이용한 광업 및 임업 외에 다양한 제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당분간은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집약적인 업종에 대한 투자

가 지속되리라 본다. 필리핀에 대해서는 1990년대의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섬유·의복, 석유·화학과 조립금속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였다. 반면 최근 들어 임금상승과 사회간접자본 등의 투자환경 악화로 태국에 대한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2) 中國

최근의 對中國 투자는 低賃金の 풍부한 勞動力, 시장 潛在力, 지리적 近接性과 풍부한 天然資源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急增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의 1995년도 투자는 투자(허가) 기준으로 725(877)건, 8억 1,445만(12억 3,186만)달러로서 1994년의 836건(1,607건), 6억 4,081만(8억 2,478만)달러에 비해 건수면에서는 다소 줄어든 반면 금액면에서는 증가하였다. 중국은 중소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국으로서는 1991년 이후 단연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表 II - 11) 참조).

〈表 II - 11〉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5大 投資對象國

(單位: 件, 千달러)

순위	1990		1991		1992		1993					
	국가	건수	금액	국가	건수	금액	국가	건수	금액			
1	인도네시아	67	81,298	중 국	99	56,638	중 국	246	145,252	중 국	554	269,599
2	미 국	56	37,968	미 국	59	39,975	미 국	45	22,181	미 국	57	30,149
3	중 국	26	15,399	필 리 핀	40	28,062	필 리 핀	39	15,507	필 리 핀	51	17,905
4	말레이시아	20	17,916	인도네시아	32	35,297	홍 콩	36	15,262	베 트 남	26	25,672
5	필 리 핀	19	6,720	스리랑카	20	14,703	인도네시아	17	12,712	홍 콩	23	9,198

註: 총허가 기준.

資料: 한국수출입은행.

대부분의 對中國 투자는 현지의 풍부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製造業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다시 제3국으로 迂回輸出하고 있

다. 현재 중국정부는 외국법인에 대해 내수시장 및 서비스업종 진출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섬유·의복, 신발, 피혁, 기타 잡화류와 전기·전자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에는 조립금속, 기계장비, 운송 등 기술 및 자본집약적 기업의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3) 베트남

1988년 베트남의 外國人投資法이 제정 시행된 이후 對베트남 외국인 투자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3년 말 현재 외국인투자는 836건으로 75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1988년의 37건, 3억 7천만달러에 비해 5년 만에 각각 건수면에서는 2,160%, 투자면에서는 1,930%나 증가한 수치이다. 對베트남 외국인투자가 급증한 요인으로서 베트남의 민간기업이 외국 기업 및 개인과 직접 合作事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제도개편(1990년 6월 外國人投資法의 개정)과 캄보디아와의 평화협정 체결(1991년 10월)에 이어 미국이 禁輸措置를 해제한 데 있다고 본다.

1991년 이후에는 아시아국가들의 對베트남 투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대만, 홍콩을 필두로 일본 또한 이 추세에 합류하여 현재 투자순위 6위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4위를 기록하고 있다. 1995년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투자는 투자(허가) 기준으로 34(45)건, 금액규모면으로 1억 7,761만(1억 8,393만)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이 다수를 차지하나 석유 가스부분 등의 자원개발과 공업부문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진출 업종은 섬유, 가방, 운동용품 등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화학공업부문의 철강과 화학 등 자본집약적 산업이다.

4) 美國

우리나라의 對美 海外直接投資는 1986년의 1억 5천만달러에서 1995년 말 현재 총 708건, 38억 6,569만달러 수준으로 26배가 넘게 증가하였으며 1995년 투자실적(금액 기준)은 126건, 5억 3,428만 3천달러로 중국(725건, 8억 1,444만 5천달러)에 이어 2위를 기록하였다(〈表 II-10〉 참조).

1995년 현재 對美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보면 貿易業(41.4%)과 製造業(37.3%)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무역업은 투자(허가) 기준 310(320)건에 11억 2,032만(16억 6,212만)달러를, 제조업은 투자(허가) 기준 280(242)건에 10억 1,107만(14억 4,787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제조업 분야는 대체로 대기업 중심의 철강과 전기전자산업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對美 직접투자의 60%가 단독투자인데,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를 살펴보면 45% 이상이 단독투자이다.

5) 유럽

1980년대 중반 이후 對유럽 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해 왔으나 유럽의 대규모 시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表 II-9〉 참조). 1995년 對유럽 직접투자는 전체 투자액의 20%인 6억 1,125만달러에 불과하다. 업종별(투자액기준)로는 제조업(54.6%)과 무역업(32.2%)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제조업은 단순조립 형태의 가전제품 산업에 편중되어 있으며 대기업 중심의 단독투자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국가별로는 獨逸, 英國, 프랑스 순으로 집중되어 있다. 독일이 유럽에 대한 총투자의 18.5%(66건, 2억 8,725만달러)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국이 15.5%(50건, 2억 4,009만달러), 네덜란드가 11.3%(17건,

1억 7,410만달러), 프랑스가 11%(22건, 1억 6,939만달러)의 순을 기록했다(1995년 투자기준). 1995년 투자유치국의 순위는 1994년의 독일 25%(56건, 2억 5,080만 달러), 영국 17.9%(38건, 1억 7,559만 달러), 프랑스 12.7%(19건, 1억 2,421만 달러)로부터 다소의 변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1995년에 대규모의 對네덜란드 해외직접투자자 대기업에 의해 이루어진 데 기인하고 있다⁹⁾.

라. 投資規模 및 投資比率別 海外直接投資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를 투자규모별로 보면 1995년 투자건수의 76.1%인 4,055건이 100만달러 이하의 小規模投資이며 건당 평균투자액은 192만달러 수준이다. 이와 같이 평균 투자규모가 미미한 이유는 중소기업들이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에 다수 진출하여 100만달러 수준의 소규모 투자를 한 데 있다고 본다. <表 II-13>의 업종별 투자규모에서도 10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의 투자가 제조업 전체의 7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對開途國 투자의 영세함을 다시 한번 증명해주고 있다. 반면에 북미지역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건당 평균투자액이 약 418만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유럽의 경우는 1995년에 네덜란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對유럽 투자의 건당 평균투자액이 493만달러로 미국의 경우를 능가하고 있다(<表 II-12> 참조).

1995년 말 현재 투자지분이 50% 이상인 투자가 전체 투자건수의 80.1%인 4,29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지분이 100%인 단독투자가 50.3%(2,680건)를 차지하는 등 단독투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단독투자에 대한 선호는 모든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表 II-14> 참조).

9) 1995년중 對네덜란드의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은 삼성전자에 의한 전기통신부분의 투자(1억 5천만달러)와 대우중공업에 의한 트럭 및 관련부품생산부분의 투자(2,800만 달러)에 기인하고 있다.

〈表 II - 12〉 우리나라의 地域別 · 投資規模別 海外投資 現況

(單位：件, 千달러)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건
아 시 아	3,042	801,868	383	562,736	236	767,921	78	559,096	63	1,882,876	3,802	4,574,497	1,203
중 동	23	8,961	9	12,069	1	2,130	-	-	2	79,574	35	102,734	2,935
북 미	513	171,464	81	121,077	79	259,239	33	245,504	50	2,354,371	754	3,151,655	4,180
중 남 미	157	60,814	37	51,904	29	95,932	7	58,655	3	69,206	233	336,511	1,444
유 럽	185	50,568	29	45,284	42	140,573	21	157,043	36	1,150,915	313	1,544,383	4,934
아 프리 카	34	9,161	5	6,372	3	7,418	2	12,093	7	230,865	51	265,909	5,214
대 양 주	103	33,437	16	25,599	8	27,467	6	43,686	5	119,121	138	249,310	1,807
합 계	4,055	1,136,273	560	825,041	398	1,300,680	147	1,076,077	166	5,886,928	5,326	10,224,999	1,920

註：투자 기준.

資料：한국은행 외환업무부, 『해외투자동계연보』, 1996.

〈表 II - 13〉 우리나라의 業種別 · 投資規模別 海外直接投資 現況

(單位：件, 千달러)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건
광 업	23	10,525	6	8,665	2	5,441	9	67,106	13	609,215	53	700,952	
임 업	11	5,436	2	3,208	1	3,600	2	10,495	2	55,362	18	78,102	
수 산 업	103	25,946	11	16,956	9	30,263	2	16,663	-	-	125	89,828	
계 조 업	2,659	764,795	415	606,339	273	902,151	83	589,042	91	3,150,896	3,521	6,013,223	
건 설 업	90	28,778	22	29,781	13	43,730	4	35,805	3	73,226	132	211,320	
유 수 · 보 관 업	62	18,484	7	9,423	4	13,586	2	15,016	1	20,200	76	76,709	
부 역 업	712	180,084	60	91,513	57	183,639	30	220,587	38	1,316,041	897	1,991,864	
기 타	396	102,577	36	58,067	39	118,270	15	121,363	18	662,403	504	1,062,680	
합 계	4,056	1,136,625	559	823,953	398	1,300,680	147	1,076,077	166	5,887,343	5,326	10,224,678	

資料：한국은행 외환업무부, 『해외투자동계연보』, 1996.

〈表 II - 14〉 우리나라의 業種別 · 投資規模別 海外直接投資 現況

(單位：件, 千달러)

	20% 미만		20~50% 미만		50%		51~100% 미만		100%		계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광업	3	37,210	4	112,689	9	224,571	9	11,928	28	314,554	53	700,952
임업	-	-	2	20,612	1	450	7	12,830	8	44,210	18	78,102
수산업	5	6,936	33	17,965	22	7,980	32	23,358	33	33,589	125	89,828
제조업	83	195,977	662	648,540	340	347,225	837	2,081,549	1,599	2,739,932	3,521	6,013,223
건설업	2	3,420	35	12,232	13	17,948	24	56,890	58	120,830	132	211,320
운수·보관업	1	76	12	11,799	11	12,940	13	6,438	39	45,456	76	76,709
무역업	11	4,255	79	23,194	53	32,955	74	91,373	680	1,840,087	897	1,991,864
기타	26	126,738	71	164,978	51	51,530	121	185,864	235	533,570	504	1,062,680
합계	131	374,612	898	1,012,009	500	695,599	1,117	2,470,230	2,680	5,672,228	5,326	10,224,6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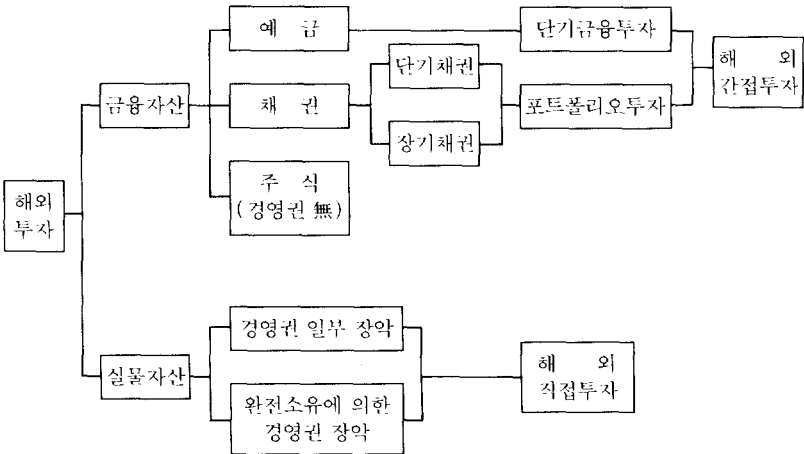
資料：한국은행 외환업무부, 『해외투자동계연보』, 1996.

Ⅲ. 海外直接投資의 理論的 背景

1. 海外直接投資의 定義 및 概念

海外直接投資(foreign direct investment)는 단순히 배당 및 이자 등 자본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포트폴리오투자(portfolio investment)를 통한 해외간접투자(foreign indirect investment)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투자가가 해외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를 가리킨다([圖 Ⅲ-1] 참조). 각국은 국제수지통계에서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를 10~25%의 최소소유주식의 일정비율규정¹⁾에 따라 구별

[圖 Ⅲ-1] 海外直接投資와 海外間接投資의 構成



1)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주식 소유비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부록의 제12장 해외 직접투자의 요건 참조.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투자동기에 따라 외국법인에 대한 장기대부, 해외지사 및 해외부동산 보유 유무 등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海外直接投資는 다수국에서 생산활동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의 활동 중 일부를 차지하며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활동은 다공장기업활동(multi-plant economies)의 한 유형에 속한다.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는 1950년대 이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enterprise : MNE)들이 선진기술의 독점적 우위요소(ownership advantage:O)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직접생산을 통해 총이윤을 極大化하고자 하는 가운데 급증하였으며, 이에 따라 초기의 해외직접투자 관련 연구는 대부분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시장진출형 투자가 초기의 해외직접투자의 전형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선진국의 해외직접투자는 獨占的 優位要素를 보유한 기업이 立地的 優位要素(locational advantage:L)를 갖고 있는 국가에 기업을 설립하여 생산과정을 內部化(internalization:I)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 이윤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전통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설명하는 3가지 주요요소로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O), 입지적 우위요소(L), 내부화 우위요소(I)를 들고 있다. 이 같은 3가지 우위요소를 결합한 O-L-I 모델의 해외직접투자 이론은 Dunning(1998)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흔히 절충이론(eclectic theory)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이후 1970年代 中반부터 본격화된 일본기업의 海外直接投資는 기업이 독점적 우위요소를 보유한 전통적인 선진국형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와 그 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즉, 초기의 일본형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에서 비교우위를 상실하였거나 상실과정에 있는 사양산업을 일본보다 발전의 단계나 속도가 낮은 개도국으로 이양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같은 해외직접투자는 母國과 제3국으로의 무역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 같은 해외직접투자는 일본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본다. 일본의 1960~1970년대 해외직접투자는 개도국에 대한 해외생산투자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했으며 동시에 선진국에 대한 해외판매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선진국 대열에 참여하게 된 일본은 해외직접투자면에서도 종전의 對開途國 해외직접투자 이외에 전통적인 선진국의 다국적기업형 해외투자에도 주력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일본기업의 국제화 전략은 수출중심에서 해외의 현지생산으로 발전해 왔으며 현지화를 통한 경영의 세계화(globalization)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각기 다른 유형의 해외직접투자를 전통적인 해외직접투자이론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이 부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²⁾.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로는 선진국기업의 市場進出型, 일본의 對開途國 직접투자를 통한 貿易擴大型 이외에도 부존자원 확보를 위한 資源開發型, 선진국의 첨단기술 전수를 위한 技術習得型과 자본수익률 및 환율의 차이에 따른 자본이득을 추구하는 資本移動型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기업 또한 다양한 투자동기에 의해 투자를 실행하고 있으나 대부분 일본의 해외투자 초기단계와 같이 경쟁우위를 상실한 제조업 부문의 對개도국 투자와 수입규제 회피 및 현지시장 확보를 위한 市場進出型 투자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本章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해외직접투자를 앞서 실행한 선진국 및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연구가 제시하는 해외직접투자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동기와 유형 및 향후 나아갈 방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논리적 근거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일본형 해외직접투자는 Kojima(1978)에 의해 소개되었으며 이 외에도 Ozawa, Nakajo, Giddy & Young(1982)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2. 海外直接投資 理論

가. 傳統的 海外直接投資 理論

전통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생산활동의 동기를 설명하는 이론적인 근거로 市場失敗(market failure)와 기업 특유의 無形(기술, 지식, 정보, 특허 등) 또는 有形(설비, 상표, 차별화된 제품 등)의 所有資產(firm-specific assets)을 들고 있다. 시장실패의 요인으로는 소수의 기업이 국내시장을 독점하여 완전경쟁이 불가능할 경우³⁾ 기업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가격 조정과 시장거래를 통한 생산요소 및 중간제품과 최종제품의 원활한 조달 및 판매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기업은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시장거래의 일부를 내부화하게 된다. 또한 기업이 해외시장을 점유할 목적으로 기업 특유의 자산을 활용하여 현지기업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1) 獨占的 優位理論(ownership advantage)⁴⁾

獨占的 優位理論은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기업특유의 독점적 우위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產業組織理論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투자기업은 문화적 차이 및 기타 현지의 국내기업(indigenous firm)에 비해 불리한 입장을 극복하기 위해 현지 국내기업이 소유하지 못하는 기업 특유의 자산을 소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투자기업은 다양한 기술부문의 혁신과 效率性 提高 및 附加價值 增大를 위한 기업특유의 독점적 경쟁우

3) 자연적인 시장실패로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에 의해 국내시장규모가 한 개 또는 소수의 기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4) Hymer(1976)에 의해 처음으로 산업조직론적 관점에서 체계화되었다.

위요소를 활용하여 현지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이와 같은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는 立地自由的(non location-bound) 또는 立地制限的(location-bound)일 수 있으며, 입지자유적인 요소의 경우는 기업의 통합·조정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입지제한적인 우위요소는 기업이 특정입지에 대해 적응 및 반응·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2) 内部化理論(internalization)⁵⁾

内部化理論에 따르면 생산요소 및 제품시장의 불완전성이나 시장실패에서 오는 비효율적인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시장거래를 내부화하는 과정에서 海外直接投資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부화를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다공장기업 모델을 사용하여 설명될 수 있으며, 내부화의 유형에는 개별공장들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水平的 統合에 의한 내부화, 일부 공장에서 다른 공장에 투입요소로 사용되는 산출품의 생산단계를 통합하는 垂直的 내부화와 수직적 또는 수평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多角經營企業(diversified firm) 등이 있다. 수직적 내부화의 경우 기업은 생산과정에서 직면하는 생산요소와 중간 및 최종제품에 대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시장거래를 내부화하게 된다. 수평적 내부화는 소비제품이나 서비스 산업에 많이 집중되며 해당 기업은 다공장생산(multi-plant economies)을 통해 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이 같은 수평적 내부화의 경우 기업은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를 각 지역에 따른 제품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두며, 변화하는 지역별 수요에 맞는 제

5) Buckley와 Casson(1976), Rugman(1986), Teece(1986)등에 의해 처음으로 체계화된 이론이다.

품의 적기공급을 위해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3) 折衷理論(eclectic theory)

折衷理論은 Dunning(1977)에 의해 체계화된 해외직접투자 이론으로 위의 獨占的 優位理論과 內部化理論을 결합하여 현실에서 상이하게 나타나는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및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절충이론은 기업 특유의 우위성(O)과 내부화로부터 발생하는 실익(I) 이외에도 입지적인 우위요소(L)가 존재함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즉 이 세 가지의 우위요소(O-L-I)의 결합에 의해 해외직접투자의 형태가 결정지어진다는 것이 절충이론의 핵심이다. O-L-I 모델을 기초로 하는 절충이론이 독점적 우위이론이나 내부화이론에 추가적으로 기여한 바는 유사한 우위요소를 소유한 기업간에도 상이한 해외직접투자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海外直接投資는 기업특유의 우위요소와 입지적 우위요소를 보유하고 있는 현지국 사정에 따라 좌우됨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가 입지제한적(location-bound advantage)일 경우 현지국 특유의 우위성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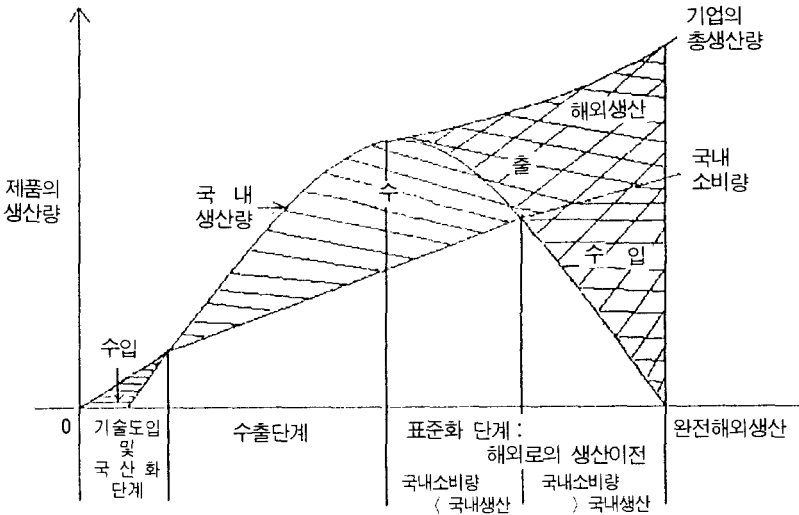
4) 製品壽命週期論(product life-cycle theory)⁶⁾

製品壽命週期論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대한 해외이전을 제품의 수명주기를 이용해 설명하고 있다. 제품의 導入段階, 成長段階, 標準化 段階에 따라 생산입지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동태적인 해외직접투

6) Vernon(1966)에 의해 미국계 다국적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이다.

자 현상을 설명해주고 있다. 즉, 신제품의 개발을 통한 제품의 도입초기에는 가격탄력성이 낮으므로 소량의 국내수요를 위한 국내생산에 주로 의존하나, 제품이 어느 정도 성장기에 도달하여 제품이 표준화되면 기술이전이 용이해지고 따라서 타기업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구축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한 다량생산을 하게 된다. 이때 생산요소가 저렴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품수명주기론은 기업이 처음의 제품 개발단계에서는 국내생산에 의한 국내수요에 초점을 맞추다 점차 수출을 통해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제품의 성숙기와 표준화 단계에서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생산과정으로 나아가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圖 Ⅲ-2] 참조).

[圖 Ⅲ-2] 海外直接投資企業 生産의 製品週期



5) 資本移動論⁷⁾

資本移動論에 의하면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생산요소의 機會費用에 의한 자본수익률 차이로 설명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은 투자의

豫想收益率(expected return)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즉 해외직접 투자를 資本仲裁(capital arbitrage) 수단으로 이용하여 예상수익률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자본을 이동함에 따라 투자가 발생하게 된다고 한다.

자본이동론은 해외직접투자의 흐름이 예상수익률 이외에도 국가간의 환율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는 국가간 투자수익률이 동일한 경우라 할지라도 強勢通貨國의 자산가치가 弱勢通貨國의 자산가치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강세국 기업의 투자비용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리는 해외직접투자가 強勢通貨國에서 弱勢通貨國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나. 日本形 海外直接投資 理論⁸⁾

1960~1970년대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유형은 대체로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제품의 기술이 成長期에 도달하여 국내생산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 부문의 산업에 대해 아직 비교우위가 있거나 개발단계에 있는 개도국으로 이전하여 標準化된 低技術製品을 생산하는 것이었다.

초기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다른 구미선진국의 경우와 다른 점 중의 하나는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며 또다른 점은 대부분 규모가 작은 對開途國 투자로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투자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대부분이 輸出主導

7) 투자수익률 차이에 바탕을 둔 자본이동론은 1950년대 미국의 대유럽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나 이후 미국의 대유럽투자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8) Kojima(1978, 1985, 1990), Ozawa(1979)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이는 유럽의 학자들과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후 이 부문은 Nakajo(1980), Giddy & Young(1982), Wells(1981) 및 Lall(1983) 등에 의해 연구되었다.

형태로 개도국의 현지기업과의 合作投資가 용이한 中小企業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형 小數獨寡占 多國籍企業들이 기업 특유의 첨단기술 또는 경영기법을 활용한 완전소유형태의 해외자회사 설립을 통해 현지경영을 장악하는 경우와는 대비되는 것이다⁹⁾.

일본의 對開途國 해외직접투자는 성장기 산업 또는 비교우위 부문에 투자를 하여 자원을 수입하거나 표준화된 제품을 母國 또는 제3국으로 수출하여 무역을 창출하는 반면 선진국형 해외직접투자는 현지생산을 통해 투자유치국의 시장점유를 목표로 설정함으로써 무역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다양한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를 활용한 對先進國 투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일본형 海外直接投資 理論은 처음 Kojima(1978)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를 Hecksher-Ohlin(H-O) 모델¹⁰⁾하에서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존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보다 효율적인 국제간의 자원배분을 위한 해외직접투자의 유형을 거시적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다.

Kojima는 海外直接投資를 미국형 해외직접투자자와 일본형 해외직접투자로 구분하여 기업이 활용하는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를 미국형 해외

9) 이에 대한 또다른 시각으로 국가간 성장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즉 이 시기의 일본의 성장 또는 개발단계의 정도가 구미 선진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음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고도의 첨단기술을 구비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의 상당 부분이 구미 선진국형 해외직접투자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10) H-O 이론은 고전주의 무역이론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근대의 무역이론으로도 불려지며 국제간 무역을 각국의 부존요소(factor endowment)에 의한 상대적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로 설명하고 있다. H-O 이론에 따르면 국가간 부존요소의 차이도 중요하나 이외에도 이 같은 부존요소의 차이로부터 말미암은 국제무역과 국내요소의 배분 그리고 더 나아가 국내소득의 분배로의 연결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부존자원의 접근에 대한 또 하나의 장점은 일반적 개념으로 다양한 경제적 요소 또는 입지적 요소의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투자의 경우에는 商業指向的이라고 특징짓는 반면 일본형 해외직접투자는 生産指向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선진국형 해외투자는 투자국에서는 비교우위가 있는 고기술 또는 고차원의 경영기법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기술흡수능력을 갖추지 못한 개도국으로 이전되는 逆貿易指向的이라는 것이다. 개도국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은 현지의 부존요소에 적합한 저기술의 노동집약적 해외직접투자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만이 自由貿易을 대신하는 최선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바람직한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국의 부존요소와 경제 및 기술발전 단계에 맞는 산업에 대한 투자여야 하며 선진국이 국내생산을 통해 계속 수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수입장벽이나 기타 이유로 對開途國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할 경우 이는 투자국의 輸出代替는 물론 産業空洞化를 가속화함과 동시에 투자산업과 유치국 내 산업발전단계와의 상당한 격차로 말미암아 개도국의 산업조직을 孤立化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국과 피투자국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Ozawa는 Kojima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가 기존의 선진국 다국적기업의 경우와는 달리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이 용이한 과점적 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산업에 대한 다수의 중소기업들의 투자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동기를 巨視經濟的인 요인과 賦存要素의 부족으로 인한 高賃金 및 高地價 그리고 자원공급의 불확실성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1980년 후반부터 生産費用의 節減을 목적으로 급증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對開途國 해외직접투자에도 유사하다고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母企業과 子會社간의 분업을 통한 제품의 高度化로 보는 또 하나의 시각¹¹⁾도 존재한다. 즉 일본기

11) Nakajo(1980)는 일본의 대개도국 해외직접투자를 기업내 분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업은 국내에서 기업 내 핵심부문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반면 일부 비핵심부문의 공정과정은 해외로 이전하며 垂直的 分業을 통한 기업내 무역을 증대시키며 다른 한편으로는 모기업의 다양한 제품의 일부를 현지생산·판매하는 水平的 分業을 통해 현지시장 개척을 주도하는 것이다.

일본형 해외직접투자 이론에 대해 대부분의 구미학자들은 일본형 해외직접투자가 미국형 해외직접투자와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에는 동의 하나 일본형 또는 개도국형 해외직접투자 또한 넓은 의미의 전통적인 獨占의 優位理論이나 內部化理論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¹²⁾. 개도국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우위요소로는 생산방법상의 기술, 선진국으로부터 도입한 기술의 개량을 통한 현지화 적응능력, 설비에 대한 중고시장의 부재, 낮은 관리비용 및 저임금의 숙련된 노동력 등을 들 수 있다. 개도국 해외직접투자의 또 하나의 特徵으로는 선진국의 다국적기업들이 규모의 경제를 통한 效率化를 추구하는 데 비해 소규모의 투자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다. 世界競爭戰略 理論

世界競爭戰略 理論은 기업의 세계화(globalization)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업의 경쟁우위(competitive advantage)는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현지기업과 모기업 또는 현지기업간의 생산 및 가치창출의 배치(configuration)와 조정(coordination)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것이다. Porter(1985)는 기업의 경쟁우위는 기업의 비용면이나 제품차별화면에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세계적 기업의 경우 현지기업의 국가별 경쟁우위는 서로 연계되어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조정과 배치

12) Giddy & Young(1982), Dunning(1996) 참조.

(global-mix)를 거친 후에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기업의 세계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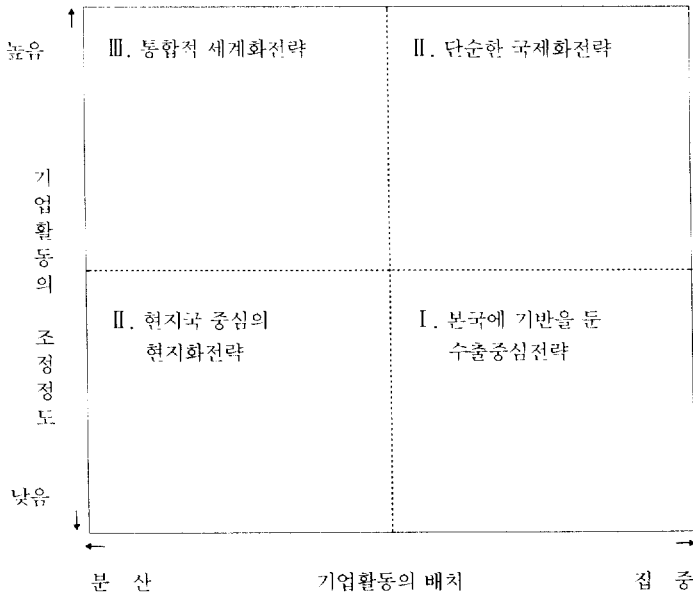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기업의 세계화에는 소비제품이나 서비스 등 생산의 下流段階에서 현지 특유의 나라별 전략수립이 요구되는 반면, 생산활동의 上流段階에 해당되는 핵심부문인 생산 또는 기술개발 및 연구활동과 기업의 이미지 구축, 마케팅 전략 등 전세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의 수립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업은 비용의 감소와 차별화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며, 즉 세계경쟁은 비용과 차별화로 경쟁우위가 결정지어지게 된다.

기업의 세계화가 추구하는 기업 특유의 경쟁적 우위성은 3가지의 경제적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첫번째는 規模의 경제(economies of scale)로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을 통해 생산비용 및 유통, 마케팅비용의 절감을 유도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範圍의 경제(economies of scope)로 하나의 기업이 제품의 多邊化 또는 多角化를 하는 것이 여러 기업이 각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효율적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기업 내의 축적된 지식 및 기술 등 기업 내의 모기업과 현지기업간에 공유가 가능한 입지자유적인 요소의 이전에 바탕으로 두고 있다. 세번째로 중요시되고 있는 概念으로 연결의 경제(economies of network)를 들 수 있으며 이는 기업간의 정보연결로부터 발생하는 상승효과, 학습효과, 신기술 개발의 창출효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Porter에 의하면 기업은 이와 같은 競爭의 優位性을 바탕으로 기업활동의 세계적인 배치와 조정([圖 Ⅲ-3] 참조)을 통해 國際化 戰略을 전개하며, 국제화전략의 유형은 輸出中心 戰略, 단순한 國際化 戰略, 現地 國 中心戰略과 統合의 世界戰略 등 4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각 기업은 산업구조에 따라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 수출중심전략은 기업활동의 중심을 本國에 집중하는 한편 마케팅은 지역에 맞게 分權化하는 국제화 전략이다. 단순한 세계화전략은 일부 해외생산을 동반한 본국 중심의 기업 활동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전략으로 기업의 調整이 중요시된

다. 현지국 중심전략은 기업활동을 地域別로 分散·配置하고 현지 중심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는 전략인 반면 통합적 세계전략은 高度의 分散과 調整이 함께 이루어지는 전략으로 다국간의 원활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대규모 해외투자가 이에 해당된다.

[圖 Ⅲ-3] 國際化 戰略의 類型



라. 經營國際化의 進化論

經營國際化의 進化論은 세계경쟁전략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의 발전 단계를 이에 결합함으로써 기업의 국제화 단계를 통한 환경에의 적응을 기업활동의 선택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세계경쟁전략론이 해외직접 투자에서 나타나는 국제화 전략의 선택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영국제화 진화론은 국제화 전략의 발전과정을 動態的으로 제시하고 있다. 경영국제화의 진화론에 의하면 기업의 국제화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는 첫 단계에서는 기업의 활동이 국내에 집중하게 되며 소규모의 수출을 하는 국내지향적 본국 중심의 전략을 펴게 된다고 한다. 그 다음 단계는 본격적인 국제화 단계로 2가지 방향으로 전략이 전개되는 二元化 現象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 한 방향은 해외에 몇개의 생산거점을 중심으로 세계시장에 대한 수출에 주력하는 輸出指向的 또는 貿易指向的 國際化이며, 다른 한 방향은 기업활동의 많은 부분을 해외로 분산·배치하여 現地化를 指向하는 國際化이다. 그리고 국제화의 3번째 단계는 세계화 단계로 기업활동의 분산과 조정을 통한 표준화를 중시하는 世界統合戰略 단계와 지역에 대한 적응을 중시하는 세계연결전략 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世界統合戰略은 본사 중심의 경영구조의 標準化 및 경영관리의 一貫性을 통해 국제화 전략을 전개하게 되며, 세계연결전략은 본사가 경영에 대한 관점을 세계적 차원에 두고 기초연구를 비롯해 재무, 인사, 조직문화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며 국제화전략을 펴나가게 된다. 이와 같은 다단계 발전이론은 산업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를 두는 등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의 이원화된 다단계 국제화의 선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Ⅳ.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海外直接投資는 제Ⅲ장의 이론이 제시한 바와 같이 외생적 또는 내생적으로 주어진 국내의 환경 및 기업의 특정상황 또는 우위요소 등에 따라 투자동기 및 유형을 달리하고 있으며 투자동기와 유형을 국제화 단계와 전략에 따라 각기 달리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각기 다른 투자동기와 국제화 단계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평가 및 촉진방향의 제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本章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상관관계와 생산활동의 해외이전과 관련된 産業空洞化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海外直接投資가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가. 海外直接投資의 貿易增大 및 貿易減少效果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해외생산은 국내의 貿易收支와 貿易外收支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대체와 역수입으로 인한 수출의 감소효과와 수출유발 및 수입전환으로 인한 수출의 증대효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현지기업의 유형과 現地化 또는 國際化의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1)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외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해외투자기업의 국내에 대한 과실송금, 이자수익과 국내거주자의 해외취업에 대한 임금송금 등을 통해 나타난다.

해외생산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해외시장에서의 국내제품의 수요를 증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수출을 대체 또는 보완·증대할 수도 있다.

輸出對替效果²⁾는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현지생산 제품이 현지시장에서 판매되거나 제3국으로 우회수출됨으로써 국내 수출을 대체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로 인해 국내 수출은 감소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출대체효과는 수출대체율³⁾에 의해 추정되며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 초기에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현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출대체효과 또한 높아지게 된다. 특히 해외직접투자의 초기에는 현지와의 連繫性이 미미하고 현지조달비율도 낮을 뿐 아니라 국내제품에 대한 수출대체율과 역수입비율도 낮아 수출대체효과가 국내의 무역수지에 미치는 악영향의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逆輸入效果⁴⁾는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현지생산 제품이 국내로 역수입되는 것을 가리키며 이로 인해 국내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역수입효과는 해외의 현지기업의 총매출액에 대한 국내 수입액의 비율로 추정될 수 있다.

輸出誘發效果⁵⁾는 海外直接投資를 통해 해외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 등을 국내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수출을 유발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는 해외 현지기업의 매출액 중 국내로부터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로 추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출유발효과는 해외직접투자의 초기에는 높게 나타나지만 점차 현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輸出轉換效果⁶⁾는 국내의 생산활동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생산에 소요되던 투입요소의 수입이 해외로 전환됨에 따라 국

2) 수출대체액 = (해외매출액 - 역수입액) × 수출대체율.

3) 수출대체율이 높을수록 수출감소의 규모가 증가하여 무역수지 흑자의 축소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해외현지기업의 매출액 중 수출대체비중에 대한 통계가 없어 현실적으로 수출대체효과를 추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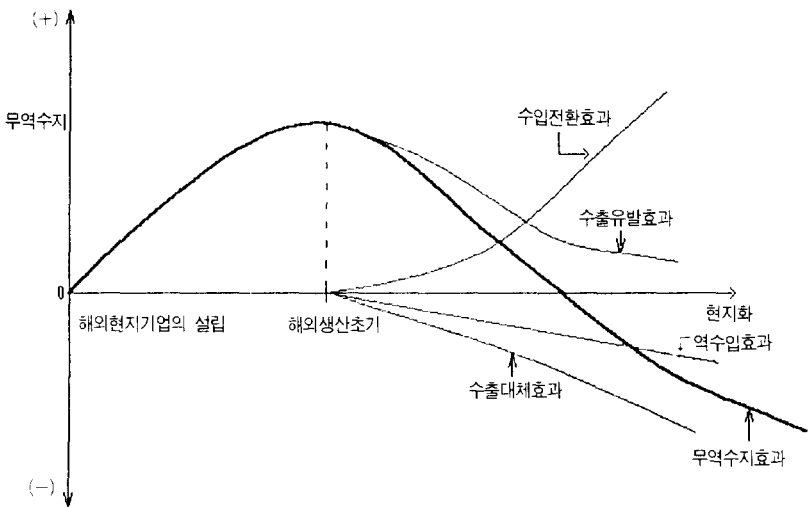
4) 역수입효과 = 해외매출액 × 역수입비율.

5) 해외의 현지법인에 대한 수출액.

6) 수입전환액 = (수출대체액 + 역수입액) × 수입유발계수.

내수입이 감소하게 되는 현상이다. 수입전환효과는 국내의 수입유발계수(1단위 생산이 수입을 유발하는 비율) 또는 수출유발계수(1단위 수출이 수입을 유발하는 비율)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 등이 외생적으로 주어진 경우에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圖 IV-1]와 같이 초기에는 무역증대효과를 유발하게 되며 해외현지기업의 현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무역감소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해외생산이 다른 제품의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이 경우는 무역증대효과가 무역감소효과를 압도하게 된다.

[圖 IV-1] 海外直接投資가 貿易收支에 미치는 影響



나. 既存의 研究

海外直接投資와 貿易에 대한 기존의 실증적 연구⁷⁾에 의하면 대부분 해외직접투자와 국내수출간에 보완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對開途國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는 對先進國 해외직접투자보다 輸出補完的으로 나타나고 있다. Eaton and Tamura(1994)의 연구는 일본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와 미래 수출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제Ⅲ장의 일본형 해외직접투자 이론에서 주장하는 일본형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지향적임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한 선진국간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실증분석에서 나타나는 수출증대효과는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생산이 기업의 특정제품에 대한 시장점유율 이외에 가타 보완적인 기업의 활동⁸⁾에 대한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시사하고 있다. 즉 특정제품의 현지생산을 통한 기업의 인지도 제고에 따라 동 기업의 타 제품에 대한 해외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에 대한 김준동(1994)의 횡단(cross-section) 자료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는 전체적으로 수출을 증대시키는 보완성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현지의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生産據點型으로 국내로부터 부품 및 원자재 부분의 수출을 증대하는 輸出指向型인 반면, 대선진국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는 주로 현지시장의 진입장벽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국내수출과의 보완성은 그리 크지 않은 市場接近型으로 나타나 해외직접투자 이론에서 구분하고 있는 輸出指向型和 市場接近型 해외직접투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을 비교한 時系列 分析結果(김준동, 199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海外直接投資가 수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반대로 수출이 海外直接投資를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경우는 자유화가 일찍부터 이루어져 각 기

7) Lipsey & Weiss(1981, 1984), O'Sullivan(1993), Eaton and Tamura(1994), 김준동(1994) 참조.

8) 보완적인 기업활동으로는 마케팅 및 서비스 등 수출보완적 활동이 이에 해당된다.

업이 국내외 환경에 따른 수출변화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한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규제에 의해 海外直接投資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는 섬유와 금속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수출을 대체해 온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유화가 진행된 이후의 최근 자료는 해외투자가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등 상반된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연구자는 최근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일본의 경우와 같이 수출이 해외투자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가는 등 海外直接投資와 국내수출간에 陽(+)⁹⁾의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시사하고 있다⁹⁾.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입의 관계를 분석한 Ryou(1995)의 연구결과 APEC지역의 경우도 수출이 해외직접투자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對開途國 투자에서는 수출증대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對先進國 투자에 대해서는 수출증대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업종별로 보면 섬유·의복과 신발 및 가죽업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수출증대효과를 보이는 반면 화학 및 조립금속 부문에서는 역수입으로 인한 수출감소효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결과가 공통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일반적으로 對開途國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와 수출간에 陽(+)⁹⁾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아직 본격적인 해외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수출유발효과가 수출대체나 역수입효과를 압도하는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출 등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해 나감으로써 해외직접투자가 수출을 유발하는 결과를 가져온 일본기업의 경우를 볼 때 해외직접투자가 자유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은 국내외 환경변화에 보

9) 본격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와 수출에 대한 시계열 분석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투자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존의 연구들도 해외직접투자를 활발히 하는 기업이 수출을 많이 하며 해외직접투자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에서 수출유발효과도 크게 나타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와 貿易과의 關係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表 II-3>에서와 같이 제조업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6년 이후 계속 급증하여 1996년 상반기까지의 잔존투자액은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56.5%인 약 68억달러의 규모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를 業種別(<表 II-4> 참조), 地域別(<表 II-9> 참조)로 細分化하여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국내수출(<表 IV-1> 참조) 및 수입 규모(<表 IV-2> 참조) 또한 업종별, 지역별로 검토해 봄으로써 주요 업종 및 지역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와 수출 및 수입의 관계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최근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 주력업종을 투자금액 기준으로 보면 조립금속, 섬유·의복, 1차금속 및 석유화학의 순이다. 조립금속은 1995년 투자금액 기준으로 40.2%를 기록하는 등 전기·전자 부문을 주축으로 계속 해외직접투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1차금속의 경우는 41.0%를 기록한 1988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5년에는 전체 제조업에 대해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섬유·의복의 경우는 1989년의 17%를 정점으로 1995년의 12%를 제외하고는 그 비중이 13%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석유·화학의 경우는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외에 음식료품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도 1990년대 초 이후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역별 海外直接投資는 아시아·북미·유럽의 3개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초기에는 자원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對東南亞 투자와 수출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북미와 유럽과의 무역업의 주축을 이루었으

나, 1980년대 후반부터 국내 생산여건의 악화로 인한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 다수의 영세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중국 및 동남아로 생산기지를 이전하여 1995년의 對아시아 해외직접투자는 금액 기준으로 전체의 53.5%, 건수 기준으로 78.4%를 기록하게 되었다. 제조업 부문의 對아시아 투자는 섬유·의복, 신발·가죽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주를 이루는 반면, 북미와 유럽지역에는 1차금속과 전기전자를 포함한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가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 밖에 광업, 운수·보관업 및 부동산업에 있어서도 동남아 지역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附表 1〉 참조)가 이루어짐에 따라 1996년 상반기중의 對아시아와 對美洲 지역의 해외직접투자는 59.1%와 122.9%씩 증가하였고 중남미 지역에 대한 투자도 전년에 비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대미 투자는 전자 및 반도체 부문 등의 대형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조만간 북미 지역의 비중이 재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5년 우리나라 수출에 대한 업종별 비중(〈表 IV-1〉 참조)을 살펴보면 중화학공업품이 70.3%를 차지하였으며 경공업품이 23.5% 그리고 원료 및 연료 부문과 음료 및 소비재가 각각 3.9%와 2.4%를 기록하였다. 중화학공업품에서 전자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이며 이 밖에 기계류가 약 16%, 철강제품이 10%, 화공품이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1986년 이후 우리나라의 중화학공업품의 수출은 세계적으로 경기가 다소 침체되었던 1989~1990년을 제외하고는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1994년과 1995년의 중화학공업품의 증가율은 22.4%와 37.7%로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등의 3대 수출 주력업종의 수출이 대폭 증가함을 잘 반영하고 있다. 1994년과 1995년의 3대 수출 주력업종의 수출증가율은 36.1%와 53%로 전체 수출증가율인 16.8%와 30.3%를 크게 능가하였다. 그러나 1996년 상반기에 들어와서는 반도체, 철강 및 화공품의 국제가격이 크게 하락⁹⁾한 데다 엔화 약세로 중화학공업품의 對日競爭力이 약화되어 전년동기 대비 11.8% 증가

한 651억달러의 증가에 그쳤다. 반면 1995년도 경공업 부문의 수출을 보면 섬유제품이 경공업품 수출의 거의 60%를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를 타이어·튜브(4.5%)와 신발류(4.1%)가 차지하고 있다.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表 IV-1>에서와 같이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증가율이 계속 낮아지다 1992년과 1993년에는 수출절대액이 감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경공업제품의 수출부진은 섬유제품의 수출둔화와 신발류 수출액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특히 신발류는 1991년 이후 계속 감소하여 1994년 이후의 수출액은 1986년도 수준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상반기의 경공업제품의 수출은 전년동기에 비해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귀금속품의 수출이 증가하고 타이어의 수출이 호조(전년동기 대비 20.3% 증가)를 보인 반면 섬유류의 수출이 전년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 그치고 신발류가 대폭 감소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1995년 업종별 수입 비중(<表 IV-2> 참조)의 경우는 원료 및 연료 부문이 50%, 자본재가 거의 40%를 각각 차지하였으며 식료 및 소비재가 10.3% 정도를 차지하였다. 우리나라 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 및 연료 부문을 살펴보면 원유가 이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공품(12.3%), 경공업원료(10%), 철강재(10%), 금속광(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본재에 대한 수입은 기계류가 43.2%, 전기전자가 36.4%, 수송장비가 8.8%로 구성되어 있

9)

반도체의 수출가격동향

(單位 : 달러, %)

	1995. 6	1996. 6	증 감 륜
반도체(16MD램, 개당)	50	16	-68
LDPE(톤당)	1100	880	-20
햇코일(톤당)	454	322	-29

다. 그리고 식료 및 소비재 중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53%이며 나머지를 곡물(17.2%)과 기타품목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유 수입은 1989년 급증한 이후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 1995년에는 수입이 다시 급증하여 수입액이 최초로 100억달러를 초과하였다. 철강재와 경공업원료의 수입도 1994년부터 다시 급증하는 등 1995년도의 원료 및 연료의 수입증가율(32.6%)이 전체 수입증가율(32%)을 초과하였다. 자본재 수입의 경우도 1992년과 1993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다 최근에는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소비재의 수입은 1993년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1996년도 상반기에도 소비재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원유와 일반기계 등의 수입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본재는 경기하강으로 인해 기업의 시설투자가 진정되고 수출용 부품의 도입도 크게 둔화됨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의 경우는 철강재와 석유제품 수입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국제 원자재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비철금속과 경공업원료의 수입이 감소하여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음료 및 소비재의 경우에는 국제곡물가격 상승으로 곡물수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소비수요의 고급화에 따른 승용차, 의류, 화장품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높은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선진국에 대한 貿易收支는 1990년부터 적자로 돌아섰는데 1995년에는 237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先進國 수출증가율은 수입증가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도까지만 해도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對美와 對유럽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1991년부터 수입액이 수출액을 빠르게 초과하여 1995년에는 對先進國 무역수지 적자의 34%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추세는 1996년 상반기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對先進國 수출의 둔화현상은 對日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됨과 동시에 의류 금속제품 등의 對美 수출과 철구조물 등의 對캐나다 수출이 크게 감소한 데 기인하고 있다. 對開途國 무역수지 흑자는 對東南亞 地域의 수출이

수입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지속되고 있으며 중남미 지역에 대해서는 1991년부터, 중국에 대해서는 1992년부터 수출이 수입을 압도하고 있다. 1995년도 對開途國 무역수지는 약 14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1996년도 상반기중의 개도국에 대한 수출은 중등으로의 선박과 전자제품 수출, 구소련 및 동유럽으로의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수출이 활발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동남아와 중국 및 그 밖의 지역에서의 금속제품과 화학품 등의 중화학공업 제품의 수입 부진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1996년도 상반기중의 對先進國 수입은 자본재 도입이 진정된 데 힘입어 큰 폭으로 둔화되었으며, 對開途國 수입은 전반적인 수입둔화세에도 불구하고 철강재 등을 중심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선진국 중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은 기계류와 전기·전자 등 자본재 도입이 전년동기보다 감소하여 최근 들어 처음으로 수입증가율이 감소세(-5.9%)로 반전되었다. 반면, 對美와 對유럽 수입의 경우는 의류, 화장품 등의 고급소비재 수입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對開途國 수입의 경우는 원자재의 국제가격 하락에 힘입어 전반적인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철강재 및 화학제품의 수입과 중국으로부터의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가운데 生産據點型的의 경우는 중국과 동남아를 중심으로 섬유·의복, 신발·가죽, 석유·화학,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한 노동집약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市場接近型的의 경우는 무역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제조업으로는 1차금속과 조립금속 및 기계장비 등의 비중이 높다.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생산거점형 해외직접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동남아 지역에 대한 무역수지는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992년 韓中修交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도 1992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다 1993년부터는 흑자로 반전되었고 이 같은 추세는 1996년 상반기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듯 최근까지도 對開途國의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對開途國의 해외직접투자로부터

터 유발되는 수입증가 및 수출감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면서 對開途國 무역수지 흑자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진행되면서 해외생산에 소요되는 자본재, 중간재 및 부품을 국내로부터 조달함으로써 투입요소에 대한 국내수출이 증가하게 되어 수출유발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對先進國 해외직접투자의 경우는 保護貿易主義로 인한 무역장벽을 회피하려는 노력으로 북미와 유럽지역으로 진출하여 현지생산을 통한 현지판매로 국내수출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최근 대선진국 수입을 살펴보면 국내경기가 하강세에 접어들어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 등의 수입이 근래 들어 최초로 감소(-5.9%)하였으나 미국과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은 의류, 자동차, 화장품 등 고급소비재를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對美와 對유럽 국내수입의 증가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역수입효과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소비수준이 고급화됨에 따라 고급소비재 수요가 급증하는 데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수입의 50%와 40% 이상을 각각 차지하는 원료 및 연료 부문과 자본재 부문은 역수입이 나타나지 않는 분야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역수입 효과는 아직까지 우려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으나 1996년 상반기의 중화학공업품에 대한 수출 증가율 둔화현상¹⁰⁾은 우리나라 3대 수출주력 업종의 국제가격의 하락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이며 해외직접

10)

연도별 수출증가율

(單位: %)

	90~93	94	95	95. 1~6	96. 1~6
전체 수출증가율	7.2	16.8	30.3	33.2	11.8
3대 주종품목	14.1	36.1	53.0	60.5	-2.6
기타품목	5.5	11.0	22.0	23.9	18.2

투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품의 수출 부문은 섬유수출의 수출둔화와 신발류의 수출감소¹¹⁾에도 불구하고 1992~1993년을 제외하고는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공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수출을 대체함으로써 수출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섬유 수출의 경우는 국내섬유의 고급화를 통한 차별화 생산에 의해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오다가 1996년 상반기에 감소세로 전환됨으로써 199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를 기록하게 되었다. 신발 수출의 경우는 1989년 이후 계속 높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대체효과에 의한 수출감소가 큰 업종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과 수입을 해외직접투자자와 관련하여 지역별·업종별로 살펴본 결과,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對開途國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수출증대 효과를 수반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對先進國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는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직접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최근의 對先進國 무역수지 적자 확대현상은 해외생산을 통한 수출대체 효과보다는 수입급증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본다.

11)

신발 및 섬유 수출 동향

(單位: %)

	90~93	93	94	95	96. 1~6
섬유 수출 증가율	1.2	0.8	8.1	5.6	-2.8
신발 수출 증가율	-8.8	-30.4	-26.6	-19.7	-28.1

〈表 IV-1〉 業種別 輸出(通關)

(單位: 百萬달러, %)

	계	음료 및	원료 및	정공업품				중화학공업품				
		소비재	연료		섬유제품	타이어·튜브 ¹⁾	신발류	화학품	철강제품	기계류	전자제품	
1986	34,715 (14.6)	1,684 (33.7)	1,199 (-12.7)	14,451 (29.7)	8,229 (24.1)	197 (35.7)	2,044 (34.0)	17,381 (5.4)	676 (17.6)	3,355 (0.8)	1,935 (40.3)	4,169 (43.4)
1987	47,281 (36.1)	2,191 (30.0)	1,522 (27.0)	19,634 (35.8)	10,997 (33.6)	284 (43.9)	2,731 (33.6)	23,934 (37.7)	855 (26.4)	3,983 (18.7)	3,230 (67.0)	6,421 (54.0)
1988	60,696 (10.9)	2,621 (19.6)	1,402 (-7.9)	23,937 (21.9)	13,461 (22.4)	406 (42.9)	3,407 (24.8)	32,736 (32.8)	1,221 (42.7)	5,377 (35.0)	4,951 (51.4)	8,551 (33.2)
1989	62,377 (2.8)	2,466 (-5.9)	1,666 (18.8)	24,782 (3.5)	14,427 (7.2)	405 (-0.1)	3,219 (-5.5)	33,462 (2.2)	1,338 (9.6)	5,763 (7.2)	5,625 (8.8)	9,149 (9.8)
1990	65,016 (4.2)	2,290 (-7.1)	1,719 (3.2)	25,147 (1.5)	13,938 (-3.4)	364 (-10.4)	4,024 (25.0)	35,859 (7.2)	1,743 (30.2)	5,663 (-1.8)	6,056 (7.7)	10,223 (11.8)
1991	71,870 (10.5)	2,409 (5.2)	2,658 (54.6)	25,305 (0.6)	14,722 (5.6)	330 (-9.2)	3,575 (-11.1)	41,499 (15.7)	2,354 (35.1)	5,989 (5.8)	7,002 (15.6)	11,604 (13.4)
1992	76,631 (6.6)	2,347 (-2.5)	3,170 (19.3)	24,828 (-1.9)	15,007 (1.9)	269 (18.4)	2,910 (-18.4)	46,285 (11.5)	3,455 (46.8)	7,019 (17.2)	7,550 (7.8)	12,773 (10.1)
1993	82,236 (7.3)	2,288 (-2.5)	3,470 (9.4)	24,077 (-3.0)	15,125 (0.8)	262 (-2.5)	2,027 (-30.3)	52,400 (13.2)	3,792 (9.7)	8,046 (14.6)	8,654 (14.6)	13,464 (5.4)
1994	96,013 (16.8)	2,570 (12.3)	3,753 (8.1)	25,743 (6.9)	16,337 (8.0)	1,233 (8.9)	1,488 (-26.6)	63,948 (22.0)	4,903 (29.3)	7,783 (-3.3)	10,326 (19.3)	18,169 (35.0)
1995	125,057 (30.3)	2,980 (16.0)	4,822 (28.5)	29,348 (14.0)	17,258 (5.6)	1,329 (7.9)	1,194 (-19.7)	87,907 (3,705)	7,186 (46.6)	9,971 (28.1)	13,873 (34.4)	26,216 (44.3)
1996	65,100 (11.8)	1,587 (13.7)	2,711 (21.4)	16,004 (10.6)	8,407 (-2.8)	796 (20.3)	454 (-28.2)	44,797 (11.6)	3,500 (-4.6)	3,642 (-31.3)	7,412 (18.4)	12,643 (10.6)

註: 1) 1994년 10월부터 품目 合板·木製品에서 타이어·튜브로 변경.
 資料: 재정경제원, 『재정금융동계』, 1996. 7~8.

〈表 IV-2〉業種別 輸入(通關)

(單位: 百萬달러, %)

	식료 및 소비재		원료 및							자본재				소비재
	소비재	곡물	연료	원유	금속광	정공업원료	화학품	철강재	기계류	전기전자	수송상비			
1986	31,584 (1.4)	1,670 (2.0)	916 (-4.9)	17,165 (-2.3)	3,346 (-40.0)	1,289 (5.8)	2,510 (12.8)	2,431 (23.7)	1,346 (14.7)	11,326 (2.2)	4,617 (34.1)	4,351 (44.4)	1,157 (-70.3)	1,389 (-8.6)
1987	41,020 (29.7)	1,899 (13.6)	1,001 (9.2)	22,539 (31.3)	3,702 (10.7)	1,754 (36.0)	3,549 (41.4)	3,243 (33.4)	1,888 (40.7)	14,552 (28.4)	6,189 (34.0)	5,707 (31.1)	1,035 (-10.4)	1,989 (36.2)
1988	51,810 (26.3)	2,637 (38.9)	1,375 (37.4)	27,877 (23.7)	3,688 (-0.4)	2,284 (30.2)	4,721 (33.0)	4,249 (33.0)	2,427 (28.5)	19,033 (30.8)	7,904 (27.7)	7,176 (25.7)	1,845 (77.4)	2,220 (11.6)
1989	61,465 (18.6)	3,486 (32.2)	1,736 (26.3)	32,969 (18.3)	4,933 (33.8)	2,901 (27.0)	5,027 (6.5)	4,818 (13.4)	3,229 (33.1)	22,370 (17.5)	10,127 (28.1)	7,766 (8.2)	1,880 (1.9)	2,595 (85.6)
1990	69,844 (13.6)	3,585 (2.8)	1,621 (-6.6)	37,653 (14.2)	6,386 (29.5)	2,782 (-4.1)	5,222 (3.9)	4,948 (2.7)	3,361 (4.1)	25,451 (13.8)	11,810 (16.6)	8,540 (10.0)	2,205 (17.2)	3,063 (14.7)
1991	81,525 (16.7)	4,325 (20.7)	1,601 (-1.2)	43,357 (15.1)	8,222 (27.4)	3,135 (12.7)	5,093 (-2.5)	5,469 (10.5)	4,696 (39.7)	30,092 (18.2)	14,039 (18.9)	9,996 (17.0)	2,538 (15.1)	3,751 (18.3)
1992	81,775 (0.3)	4,626 (7.0)	1,810 (13.1)	42,620 (3.4)	9,548 (17.4)	2,749 (-12.3)	4,835 (-5.0)	5,123 (-6.3)	3,385 (-27.9)	30,580 (1.6)	13,245 (-5.7)	10,748 (7.5)	3,078 (21.4)	3,948 (5.5)
1993	83,800 (2.5)	4,418 (-4.5)	1,804 (0.4)	44,417 (4.2)	9,225 (-3.4)	3,113 (13.2)	5,011 (3.6)	5,513 (7.6)	3,246 (-4.1)	30,604 (0.1)	12,772 (-3.6)	11,141 (3.7)	2,884 (-6.3)	4,361 (10.5)
1994	102,348 (22.1)	10,941 (24.6)	1,904 (5.5)	50,978 (14.8)	8,878 (-3.0)	3,167 (1.7)	5,296 (5.7)	6,479 (17.5)	4,711 (45.1)	40,430 (32.1)	16,985 (33.0)	14,391 (29.2)	4,083 (41.6)	5,629 (29.1)
1995	135,118 (32.0)	13,982 (27.8)	2,450 (28.7)	67,581 (32.6)	10,809 (21.7)	3,913 (23.6)	6,750 (27.5)	8,340 (28.7)	6,731 (42.9)	53,555 (32.5)	23,160 (36.4)	19,516 (35.6)	4,729 (15.8)	7,412 (31.6)
1996 상반기	72,751 (11.5)	8,052 (21.7)	1,635 (40.7)	37,281 (14.0)	6,231 (10.3)	1,904 (4.6)	3,111 (-5.3)	4,362 (5.4)	3,654 (32.1)	27,417 (5.6)	11,826 (2.9)	10,222 (10.5)	2,153 (0.6)	4,084 (18.8)

資料: 〈表 IV-1〉과 동일.

〈表 IV-3〉 主要地域別 輸出入 : 先進國

(單位: 百萬달러, %)

	일 본			미 국			E U		
	수출(A)	수입(B)	(A-B)	수출(A)	수입(B)	(A-B)	수출(A)	수입(B)	(A-B)
1988	12,004	15,929	-3,925	21,404	12,757	8,647	8,132	6,042	2,090
1989	13,457	17,449	-3,992	20,639	15,911	4,728	7,394	6,492	901
1990	12,638	18,574	-5,936	19,360	16,943	2,418	8,844	8,410	433
1991	12,356	21,120	-8,764	18,559	18,894	-335	9,728	9,879	-151
	(-2.2)	(13.7)	-	(-4.1)	(11.5)	-	(10.0)	(10.5)	-
1992	11,600	19,458	-7,858	18,090	18,287	-197	9,255	9,160	-355
	(-6.1)	(-7.9)	-	(-2.5)	(-3.2)	-	(-4.9)	(-2.7)	-
1993	11,564	20,016	-8,452	18,138	17,928	210	9,415	10,170	-755
	(-0.3)	(2.9)	-	(0.3)	(-2.0)	-	(1.7)	(5.8)	-
1994	13,522	25,390	-11,867	20,552	21,579	-1,026	10,616	13,237	-2,621
	(16.9)	(26.9)	-	(13.3)	(20.4)	-	(12.8)	(30.2)	-
1995	17,102	32,645	-15,543	24,124	30,412	-6,288	16,338	18,207	-1,869
	(26.5)	(28.6)	-	(17.4)	(40.9)	-	(53.9)	(37.5)	-

註: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증감률.

資料: 재정경제원, 『재정금융동계』, 1996. 7~8.

〈表 IV-4〉 主要地域別 輸出入 : 開發途上國

(單位: 百萬달러, %)

	동 남 아			중 남 미			중 국		
	수출(A)	수입(B)	(A-B)	수출(A)	수입(B)	(A-B)	수출(A)	수입(B)	(A-B)
1988	7,770	5,065	2,705	-	-	-	372	1,387	-1,015
1989	8,892	6,062	2,830	-	-	-	437	1,705	-1,268
1990	10,405	7,157	3,247	-	-	-	585	2,268	-1,683
1991	13,877	8,414	5,463	2,860	2,296	564	1,003	3,441	-2,438
	(33.4)	(17.6)	-	(36.1)	(33.0)	-	(71.4)	(51.7)	-
1992	17,215	9,227	7,963	4,941	2,494	2,446	2,654	3,725	-1,071
	(25.6)	(9.2)	-	(71.7)	(8.6)	-	(164.7)	(8.3)	-
1993	18,836	9,652	9,185	4,921	2,383	2,537	5,151	3,929	1,222
	(9.4)	(4.6)	-	(-0.4)	(-4.4)	-	(94.1)	(5.5)	-
1994	23,234	10,309	12,927	6,430	3,278	3,152	6,203	5,462	740
	(23.3)	(6.8)	-	(30.7)	(37.5)	-	(20.4)	(39.0)	-
1995	32,555	13,525	19,030	7,359	4,178	3,181	9,189	7,407	1,782
	(40.1)	(31.2)	-	(14.4)	(27.5)	-	(48.1)	(35.6)	-

註: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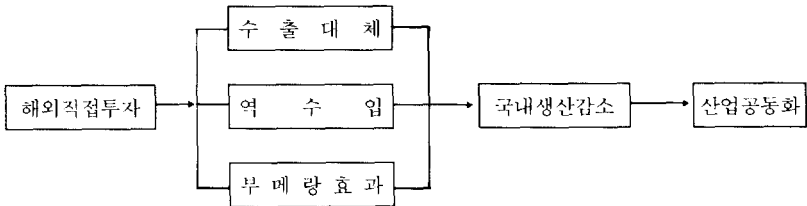
資料: 〈表 IV-3〉과 동일.

2. 海外直接投資와 産業空洞化

가. 産業空洞化의 定義

일반적으로 海外直接投資에 의한 産業空洞化는 國內通貨의 강세와 국내의 생산요소 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해 海外生産의 증대를 가져오면서 국내 제조업 분야의 萎縮을 초래하게 되며 이와 같은 생산설비 및 투자의 해외이전은 국내수출의 대체, 역수입의 증대 및 관련 업종의 고용감소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산업공동화는 [圖 IV-2]에서와 같이 국내수출의 대체, 역수입 및 국내기술의 해외이전으로 인한 부메랑 효과 등의 3가지 경로를 통해 국내생산을 위축시키게 된다. 수출대체를 통한 산업공동화는 국내의 생산비용 증대로 해외의 저렴한 생산요소를 활용하기 위해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生産據點型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現地化가 진행됨에 따라 수출대체와 더불어 해외제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逆輸入 效果까지 동반하게 된다. 이외에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국내기술이 해외로 이전되어 우리나라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산업공동화를 초래하는 한 가지 경로에 해당된다.

[圖 IV-2] 海外直接投資에 의한 産業空洞化 過程



특정산업 내에서 일어나는 微視的 차원의 산업공동화와 제조업 전반에 걸친 산업공동화를, 巨視的 차원의 경제 전반의 産業構造 調整과 구

분할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의 산업공동화는 경제의 고도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산업구조 조정 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低附加價値의 斜陽産業이 해외로 이전되고 高附加價値를 창출하는 새로운 산업의 출현이 이를 대체하는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본다면 산업공동화는 경제가 고도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며, 주어진 자원 내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산업공동화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이 수반되지 않는 산업공동화는 국내의 경제전반에 침체를 가져오는 등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外國의 事例

美國의 경우 1980년대 미국의 貿易赤字가 급증하면서부터 산업공동화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EEC(유럽경제공동체)의 결성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EEC의 결성에 따른 關稅障壁을 회피하기 위해 對유럽 海外直接投資를 증대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對유럽 수출의 감소와 역수입의 증가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58년부터 1968년 사이에 미국의 GDP 대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28%를 유지하였으나 1969년 이후부터 하락세로 접어들어 1985년에는 20%선 이하로 감소하였으며 이처럼 제조업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하됨에 따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조업의 축소 원인은 달러의 강세와 해외 직접투자에 의한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에 있는 것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초반기를 제외한 1980년대 미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GNP 대비 6% 정도를 유지하였으며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1993년을 제외하고는 GNP 대비 7% 내외를 기록하고 있어 貿易收支 黑字의 감소원인을 해외직접투자로 단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日本에서의 海外直接投資와 관련된 産業空洞化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중반 이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전개되었으나, 제조업의 고부가가치의 실현과 최근까지 지속되는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해외직접투자의 비중(1994년기준 GNP 대비 39%)에도 불구하고 산업공동화현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失業率도 1990년대 초반까지 2%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가 최근 3%(1995년 기준 3.2%) 수준을 기록하는 등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여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고 있다¹²⁾. 미국의 경우도 급증하는 해외직접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1990년 이후 최저치인 5.6%의 실업률을 기록하였다¹³⁾.

다.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와 産業空洞化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근 일련의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¹⁴⁾와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대규모 해외직접투자¹⁵⁾의 급증이 국내경제에 미칠 수 있는 波及效果의 하나로 국내투자의 대체에서 오는 産業空洞化가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해외생산이 국내기술의 유출은 물론 국내투자의 상대적 감소와 특정 제조업의 국내 생산위축을 가져오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산업공동화에 대한 대처방안으로는 국내 투자환경의 개선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및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국내산업의 高度化를 들고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확대에 의한 국내 주력산업의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12) 재정경제원, 「해외지표」, 『월간 경제동향』, 1996. 9. 참조.

13) 재정경제원, 「해외지표」, 『월간 경제동향』, 1996. 9. 참조.

14) 제Ⅳ장 제3절의 ‘해외직접투자 제도의 자유화 조치’ 참조.

15) <附表 1> 참조.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업종의 해외투자를 禁止하거나 許可制로 재전환하는 조치 등 일종의 緊急投資制限措制度 도입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산업공동화에 대한 정책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의 산업공동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산업공동화의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조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신흥산업이 사양산업을 대체하는 속도 및 수준, 무역수지 및 경제성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검토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판단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고용수준 및 총해외직접투자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産業構造

우리나라의 産業構造는 <表 IV-5>와 같이 農林漁業, 鑛工業(製造業 포함), 建設業과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 등으로 크게 네 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들어와서도 계속 증가하다 1988년의 32.1%를 정점으로 그 비중이 감소 추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5년에는 제조업 비중(26.9%)이 다소 증가하는 반면 서비스업(52.3%)의 그 비중은 하락하였다. 현재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 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나 제조업 생산의 절대규모는 1990년부터 1995년 기간 중 연평균 8.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을 살펴보면 <表 IV-6>과 같이 1992년과 1993년에는 낮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경제전반에 걸친 성장률 둔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과 1995년에는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이 각각 10.4%와 10.7%로 전체 산업의 성장률인 8.8%와 9.1%를 능가하였다. 특히 1995년의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은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제조업 부문의 위축을 단정짓기에는 근거가

〈表 IV-5〉 우리나라의 産業構造 推移

(單位: %)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및 기타 ¹⁾
1975	25.0	27.5	26.1	4.8	42.7	
1980	14.9	31.0	29.7	8.4	45.7	
1986	11.2	31.9	30.8	7.0	49.9	
1988	10.2	32.9	32.1	7.6	49.3	
1990	8.7	29.8	29.2	11.5	50.0	
1991	7.7	29.0	28.5	13.9	49.4	
1992	7.4	28.2	27.8	13.7	50.7	
1993	7.0	27.3	27.0	13.9	51.8	
1994	7.0	27.2	26.8	13.5	52.3	
1995	6.6	27.2	26.9	14.1	52.1	

註: 1)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사회·개인 서비스업, 정부서비스, 민간 비영리 서비스가 포함됨.

資料: 韓國銀行, 『國民計定』, 1995.

〈表 IV-6〉 우리나라의 經濟成長率

(單位: %)

	농림어업	광공업	제조업		서비스업 및 기타 ¹⁾	전체산업
1990	-4.6	9.3	9.7	9.9	10.3	
1991	0.4	8.9	9.1	10.9	9.6	
1992	6.0	4.8	5.1	6.9	5.7	
1993	-2.9	4.9	5.0	7.6	6.4	
1994	1.6	10.4	10.4	10.8	8.8	
1995	2.8	10.6	10.7	10.0	9.1	
1996(상반기)	0.2	6.9	7.1	8.7	7.4	

註: 1) 전기·가스·수도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사업 서비스업, 사회·개인 서비스업, 정부 서비스, 민간 비영리 서비스가 포함됨.

資料: 재정경제원, 『월간 경제동향』, 1996. 9.

미약하다. 이같이 최근 제조업 부문의 성장률이 증가세로 전환됨에 따라 국내의 산업구조 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2) 雇傭水準

우리나라의 國民經濟 전체의 就業者數는 1981년 1,400만명 수준에서 1995년에는 2천만명을 초과하는 등 실업률이 1985년 이후 계속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988년에 2.5%를 기록하여 2%대로 진입하였으며 1995년에는 사상 최저치인 2.0%를 기록하였다(〈表 IV-7〉참조). 최근 들어 3D업종 부문의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제조업 부문의 노동공급 부

〈表 IV-7〉 失業率 및 製造業·서비스業의 雇傭比重 變化 推移

(단위: %)

	실업률	총고용비중	
		제조업	서비스 ¹⁾
1984	3.8	23.2	48.7
1985	4.0	23.4	50.6
1986	3.8	24.7	50.5
1987	3.1	27.0	50.0
1988	2.5	27.7	50.9
1989	2.6	27.8	52.1
1990	2.4	27.2	54.5
1991	2.3	26.8	56.3
1992	2.4	25.5	58.4
1993	2.8	24.2	60.9
1994	2.4	23.7	62.5
1995	2.0	23.4	64.0

註: 1) SOC 부문 포함.

資料: 통계청 내부자료.

축현상이 심화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저부가가치 제조업에서 고부가가치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으로 전환되는 산업구조 조정 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낮은 실업률과 제조업 부문의 노동공급 부족현상을 고려하면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현 시점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總投資規模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의 殘存投資 규모는 1995년 현재 총 102억 2,468만달러로 국내 총생산의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는 기업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투자규모의 적정수준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는 쉽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규모를 다른 국가의 경우와 비교해보는 국제비교는 가능하다고 본다.

IMF의 공식자료(〈表 IV-8〉)에 의하면 1994년 현재 미국, 영국, 독일 등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인해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6%로 절대규모면(1994년 기준)에서는 미국의 5%를 조금 초과하며, 일본의 14%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잔액규모면에서도 미국의 1.2%, 일본의 2.8%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비슷한 대만의 31% 정도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海外直接投資의 大型化로 인해 국내자본의 해외유출이 예견되고 있으며 經常收支 赤字가 계속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국내투자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1995년 국내총투자율은 37.5%로 1993년(35.2%) 이후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表 IV-9〉의 국제비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국내투자가 국민경제

〈表 IV-8〉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規模(國際收支 基準)

(單位: 百萬달러, %)

	미 국		영 국		독 일		일 본		대 만		한 국	
	ODI	ODI/GDP	ODI	ODI/GDP	ODI	ODI/GDP	ODI	ODI/GDP	ODI	ODI/GDP	ODI	ODI/GDP
1988	15,448	0.32	37,112	4.42	11,432	0.96	34,210	1.18	4,120	3.35	643	0.35
1990	29,950	0.54	19,327	1.96	24,210	1.61	48,050	1.64	5,243	3.27	1,056	0.42
1991	31,380	0.55	16,304	1.60	23,720	1.49	30,740	0.92	1,854	1.03	1,500	0.51
1992	42,660	0.71	18,982	1.80	19,670	1.09	17,240	0.47	1,869	0.88	1,208	0.39
1993	72,590	1.14	25,671	2.71	14,480	0.84	13,740	0.33	2,451	1.10	1,361	0.41
1994	49,380	0.73	25,334	2.47	14,650	0.80	17,970	0.39	2,460	1.02	2,524	0.66
누적 잔고	612,100	9.08	286,400	27.97	194,100	10.58	275,600	6.00	24,800	10.28	7,600	2.00

資料: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Feb. 1996(대만을 제외한 모든 통계)
Taiwan Statistical Databook, 1995(대만통계)
『Jetro 白書』, 投資篇, 1996(누적잔고 통계).
金時中, 1996. 6.

〈表 IV-9〉 主要國別 國內投資 및 直接投資

(單位: %)

	ODI/GDP		IDI/GDP		DINV/GDP		(IDI-ODI)/GDP	
	1980년대	199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O E C D	1.18	1.85	0.85	1.73	22.23	21.05	-0.33	-0.13
주요 아시아국	0.48	1.55	2.46	3.95	29.93	34.27	2.11	2.99
한 국	0.18	0.45	0.28	0.30	29.20	36.67	0.11	-0.16

註: 1. ODI: 해외직접투자, IDI: 외국인 직접투자, DINV: 국내 총투자
2. 1990년대는 1990~1993년치임.
3. 주요 아시아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를 말함.

資料: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각 연도(GDP와 DINV).
IMF, *Balance of Payments Yearbook*, 각 연도(ODI와 IDI).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해외직접투자의 경우와는 달리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같이 국제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를 살펴본 결과 현단계에서는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인한 국내투자의 대체효과는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V. 海外直接投資制度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는 최근 들어 급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大型化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알맞는 제도의 自由化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해외직접투자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本章에서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許可制度, 事後管理制度 및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海外直接投資制度의 自由化 措置와 외국의 사례를 소개하고 자유화의 확대방안 및 사후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1. 許可制度

海外直接投資 許可制度는 투자에 대한 許可·申告 또는 認證 취득을 위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가. 投資要件

1) 投資資格

海外直接投資者의 자격요건은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자로 분류되지 않은 자에 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금융부실거래처로 분류되었어도 법정관리업체가 기존의 遊休設備나 保有技術을 투자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개인의 경우에는 해외이주 수속중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100만달러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매출실적이 있는 個人事業者는 최근 會計年度 매출액의 30%선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2) 投資對象國

해외직접투자 대상국가는 韓國輸出輸入銀行이 평가한 국가별 신용도가 A~D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투자유치국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적극 誘致・保護하기 위해 설치한 自由貿易地帶, 經濟開放地區 등에 진출하는 경우, 우리나라와 투자유치국간에 투자보호협정이 체결되어 있을 경우, 그리고 우리 정부가 특정 국가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 해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3) 投資方法

投資方法으로는 외화증권 취득, 외화대부채권 취득, 공동사업 참여 및 개인기업 영위 등이 있다. 외화증권 취득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취득하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인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의 2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투자비율이 20%를 넘지 않는 경우일지라도 임원과견, 1년 이상에 걸친 원자재 및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중요한 제조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경제관계 수립시에는 해외 직접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외화대부채권 취득 방법은 투자자가 출자한 현지법인인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외국법인에 1년 이상 금전대여를 하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공동 사업참여는 해외개발사업(조사단계는 제외) 또는 기술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하며 개인기업 영위는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단독으로 소유・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 海外直接投資 許可

현지투자 사업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投資의 必要性 및 事業의 妥當性이 인정된 경우 투자방법별로 소정의 허가신청서류를 해외직접투자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투자사업을 진행시키도록 되어 있다. 단, 다른 법령 등에 의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허가와는 별도로 필요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¹⁾. 해외직접투자가 허가되면 허가기관은 그 허가서와 사본을 각각 신청인과 현지공관으로 송부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허가기관은 투자규모 및 자금지원 여부에 따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과 외국환은행으로 구분되어 있다.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직접투자 중,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투자사업과 50% 이상의 자기자본에 의한 투자 및 외국환은행이 50% 이상 자금지원하는 투자사업은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은 자은행이 50% 이상 자금지원을 하는 사업의 허가를 담당하고 있다. 1천만달러 이상 5천만달러 미만 규모의 투자는 신고수리로 처리가 된다. 1천만달러 이하 규모의 투자는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및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서 인증을 받으면 된다.

이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자는 투자허가나 신고수리, 인증을 받은 후에 외국환은행에서 확인을 받아 투자자금을 송금하여 현지법인을 설립·운영하게 된다.

1)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에 따라 인가받은 영업 이외의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같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계열기업군 여신관리대상기업은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기술용역 제공의 경우는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事後管理制度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事後管理은 외국환관리의 일부로서 허가를 행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사후관리의 목적은 현지법인의 건전경영 유도 측면에서의 경영부실 현지법인에 대한 대책수립 및 투자자산의 海外逃避 방지에 있다. 해당 허가기관은 해외직접투자 자금의 송금 및 현지법인의 운영성과 등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事後管理를 하게 된다.

사후관리 내용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종목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

- ① 허가조건 이행여부 관리.
- ② 투자결과에 대한 관계증빙 징수 및 심사.
- ③ 현지법인의 운영상태 점검.
- ④ 제반 보고서의 정당성 여부 및 목적 외 사업추진 여부 확인.
- ⑤ 청산시 그 사유의 타당성 및 잔여재산 회수액의 적정성 심사.
- ⑥ 법령, 규정 및 허가조건 위배시 제재조치.
- ⑦ 중점 사후관리 대상을 설정하고 별도로 구분 관리.

중점 사후관리 대상으로는 3천만달러 이상의 대규모 사업 및 1천만달러 이상의 투자자 자본을 초과하는 사업이 포함되며 제한사업 중 예외로 허가를 받은 업종 등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이 있다.

투자자는 그 허가조건에 따라 해당 투자원리금, 배당금, 출자회수금 등을 현금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海外直接投資 청산시에는 이를 당해 허가기관에 신고하고 잔여자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는 이를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기타 이유로 청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허가기관이 현지공관에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청산을 대신한다.

海外直接投資者가 규정 및 지침 등 부여된 義務를 履行하지 않을 경우 허가기관은 1차 경고에 이어 일정기간 사전지급을 위한 인증을 받을 자격을 정지시키고, 나아가 全國銀行聯合會에 불량거래처로 분류토록 통보한다. 그리고 당해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중단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외투자 허가를 취소하거나 고발한다.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투자자는 즉시 투자사업을 청산하여야 한다.

- ① 외국환 관계법령 위반시.
- ② 勞動關係法 등 현지국의 법규 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로 대외경제협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²⁾.
- ③ 이익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을 경우.
- ④ 許可, 申告修理, 認證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한 경우.
- ⑥ 규정에 부여된 의무의 불이행으로 제재받은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最近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制度의 自由化 措置

초기의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制度는 외국환관리의 일부로서 제한적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허용하는 등 정부의 산업구조 조정, 수출증대, 기술진흥 등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자원개발 또는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증대를 도모하는 임업, 광업 및 일부 무역업과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이후 1980년대 후반에 경상수지 흑자가 실현되면서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자유화가 추진된 것은 경제발전 단계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국내기업의 세계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요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인 해외직접투자 제도의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으며(〈表 V-1〉 참조) 이에 따라 투자요건 및 투자

2)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신규 해외투자 및 기존사업의 증액투자 허가 등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

대상 사업이 대폭 완화되었고 허가 관련 절차도 간소화되었다.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 제도의 자유화 조치는 1992년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表 V-1>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 段階

시 기	내 용
1987.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요건확인제 도입 ○ 투자금액 20만달러 이하의 투자는 요건확인만으로 허가에 같음
1987.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부의대상 100만달러 이상 → 300만달러 이상으로 확대
198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건확인 허가대상 20만달러 → 50만달러로 확대
1987.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만달러 이하의 투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 ○ 해외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부의대상을 300만달러 이상 → 500만달러 초과로 확대
1988.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금액 100만달러 이하의 개인투자 허용
1988.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대상 200만달러로 확대
1989.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요건 중 '기업체 평가표상 일정수준 이상' 요건 폐지, 외환증권 취득 비용 요건 50% → 20%, 허가신청서류 7종 → 3종으로 축소, 신고대상 투자 중 한국수출입은행(수은) 용자사업을 수은행장이 허가하도록 함. 개인의 투자규모 제한 폐지(일반기업의 투자 절차에 따르도록 함).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간소화
1989.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 부동산 투자대상 확대
1990.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 제한적 허용
1992.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대상 축소: 기존의 200만달러 초과에서 500만달러 초과 사업으로 (500만달러 이하 사업은 신고수리 대상) ○ 해외투자심의위원회 부의대상 축소: 500만달러 초과에서 1천만달러 초과 사업으로 ○ 해외직접투자시 자기자금조달 의무규정 폐지 ○ 해외직접투자 정의에 융통성 부여: 투자지분 20% 미만 사업의 경우에도 실질적 경영참가 사업을 해외투자에 포함 ○ 사후관리 강화: 3천만달러 초과 혹은 자기자본 이상의 1천만달러 초과 사업대상

〈表 V-1〉의 계속

시 기	내 용
1993.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업종 축소 : 기존 30개 제한업종 중 13개 업종 제한 폐지, 7개 업종 제한 완화 ○ 해외부동산 취득 범위 확대 : 보험회사 자산운용 목적 및 해외근로자 개인의 주거용 주택 ○ 허가기관의 다원화 : 기존의 한국은행 및 수출입은행에서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까지
1994.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업종 축소 : 기존 17개 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 허가제도 자유화 확대 : 30만달러 이하 사업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인증으로 신고수리 대체, 천만달러 이하사업 신고수리 대상, 천만달러 초과사업 허가 대상 ○ 절차 간소화 : 은행의 자금지원과 허가·신고 수리의 동시처리, 백만달러 이하 사업 제출서류 간소화, 합작투자 계약서 현지공관 확인 생략 등 ○ 자산운용 목적의 해외부동산 허용대상 확대 : 보험회사 이외 금융기관, 종합무역상사, 연기금에도 허용
199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및 신고수리 대상 확대 및 허가대상 축소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인증범위 확대 : 기존 30만달러 이하에서 천만달러 이하로 신고수리 대상 확대 : 기존 천만달러 이하에서 5천만달러 이하로 ○ 허가대상 축소 : 기존 천만달러 초과 사업에서 5천만달러 초과 사업으로 ○ 제한업종 축소 : 기존 14개 업종에서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으로 ○ 자기자금 의무조달비율 도입 : 1억달러 이하 10%, 1억달러 초과 20% 자기자금 조달 비율 부과 ○ 모기업 지급보증에 의한 현지금융의 제한 : 총투자액의 50%까지만 지급보증 인정 및 50% 초과시 투자로 간주, 국내 모기업 자기자본 한도이내로 현지금융의 지급보증 규모 제한
1996.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부동산 투자 자유화 : 부동산 관련 3개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한 해제 ○ 해외투자절차의 간소화 : 국가신용도 A급 국가에 대한 투자를 대상으로 15일 자동허가제 실시 ○ 개인사업자 투자한도 확대 : 기존 50만달러 이내에서 100만달러 이내로

資料 :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

1992년 9월 제도개편에 따라 許可對象이 기존의 200만달러 초과에서 500만달러 초과 투자사업으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500만달러 이하의 투자사업은 申告修理 對象으로 규정되는 등 해외직접투자 절차가 종전에

비해 단순화되었다. 또한 自己資金 調達의 의무규정이 폐지되었으며 좀 더 탄력적인 해외직접투자 운영을 목적으로 20%의 最小投資持分 規定에 대한 예외규정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 또는 역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천만달러를 초과하거나 자기자본의 1천만달러 초과 사업대상에 한해서는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후 1993년 12월에는 海外投資 制限業種을 기존의 30개 업종에서 17개 업종으로 축소(7개 업종은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범위를 자산운용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경우와 해외근로자 개인의 주거용 주택까지 확장하는 등 海外直接投資의 자유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었으며, 허가기관을 종전의 한국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국한하던 것을 산업은행과 중소기업까지 추가하여 편의를 도모하였다.

1994년 2월의 제도개편에서는 제한업종을 14개로 다시 축소하였으며 투자절차를 간소화³⁾하고 허가대상(1천만달러 초과사업)을 축소하고 신고수리 대상(1천만달러 이하)을 확대하였으며 30만달러 이하의 투자에 한해서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 인증으로 허가를 대신하는 방안을 도입하였다. 또한 資産運用 목적의 해외부동산 허용대상을 보험회사 이외에도 금융기관, 종합무역상사 및 연기금까지 포함시켰다.

이 같은 제도의 자유화는 1995년에 들어 외국자본의 國內流入이 급증함에 따른 海外直接投資 活性化 정책에 힘입어 더욱 加速化되었다. 1995년 10월에 단행된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인증 및 신고수리 대상을 기존의 30만달러 이하에서 1천만달러 이하로, 기존의 1천만달러 이하에서 5천만달러 이하로 각각 확대하였으며, 허가대상은 기존의 1천만달러 초과 사업에서 5천만달러 초과사업으로 대폭 축소하였다. 제한

3) 절차 간소화 방안에는 은행의 자금지원과 허가·신고수리의 동시처리 및 100만달러 이하 사업에 대한 제출서류의 간소화, 합작투자계약서에 대한 현지공관 확인 생략 등을 포함하고 있다.

업종 또한 기존의 14개 업종에서 부동산 관련의 3개 종목⁴⁾으로 대폭 자유화하였다.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에 따른 무분별한 투자를 제한하고 투자기업의 건실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自己資金 義務調達比率 규정과 母企業 支給保證에 의한 現地金融의 제한조치를 도입하였다. 정부는 이 조치를 통해 과도한 해외차입에 의한 해외투자를 억제하고 자기자금 의무조달비를 규정을 통해 해외투자기업의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제고하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해외기업의 해외투자액이 1억달러 이하일 경우는 투자액의 10%를, 1억달러 초과시에는 투자액의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한다. 또한 모기업 지급보증에 의한 현지금융의 제한규정에 따르면 현지기업의 투자액의 50%까지만 모기업의 지급보증이 인정되며 50% 초과시는 모기업의 해외투자로 간주하여 초과분에 대한 모기업의 자기자금조달비율을 적용하는 등 현지금융의 지급보증 규모를 제한하고 있다. 현지기업의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부실발생시 늘어날 외채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데 정부가 이와 같은 조치를 도입한 취지가 있다. 그러나 해외의 低金利를 이용하고 있는 해외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이 조치가 해외투자의 비용을 증가시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규제로 받아들여져 많은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전반적인 海外直接投資制度의 자유화 추세는 1996년 상반기까지 이어져 1996년 6월에는 추가적으로 부동산 관련 3개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한이 철폐됨으로써 해외직접투자 업종에 대한 자유화가 실현되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도 기존의 50만달러 이하에서 100만달러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투자국의 신용도 A급의 경우는 15일 이내의 自動許可제가 도입되어 해외직접투자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다.

4) 3개 제한업종에는 부동산 임대업 및 분양 공급업, 골프장 건설운영업이 포함된다.

4. 外國 海外直接投資制度의 自由化 段階⁵⁾

日本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自由化도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전쟁 후의 국제수지의 압력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는 1964년 日本銀行에 의한 4만달러 이하 투자의 事前申告制 도입을 시점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전신고 투자금액을 1969년의 20만달러에서 1970년에는 100만달러로 확대했으며 1971년에는 이와 같은 금액한도를 철폐하였다. 또한 1971년부터는 해외직접투자의 定義를 확대하고 자회사의 소유지분을 규정짓는 최소지분소유 규정도 대폭 완화하였으며 일본정부는 기업의 해외투자비용을 절감해주려는 취지에서 損算算入에 대한 세제지원과 해외투자보험에 대한 지원정책을 펴 나갔다.

이후의 해외직접투자 자유화는 1974년 이후 오일쇼크와 국제수지 압력에 의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1977년 이후 여러 부문에 다시 자유화가 증폭되면서 1980년 말부터 비로소 海外直接投資制度가 完全申告制로 전격 전환됨으로써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실현되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의 투자요건은 10% 이상의 지분소유 또는 장기적인 투자가와 경제적 관계유지로 융통성 있게 규정되어 있다.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제는 심사부 사전신고제로 신고 후 20일 이내에 정부의 중지·변경 또는 권고의 명령 등 제동이 없으면 자동허가로 간주하여 투자실행이 가능하다.

美國, 英國, 獨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시 투자업종이나 투자금액 등 투자요건에 관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단지 정부에 대한 신고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5) <附錄 2>의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 제도 참조.

臺灣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까지는 해외직접투자를 상당히 규제하였으나 외환보유액의 급증, 對美 무역마찰의 심화 및 국내통화의 강세가 나타나자 1985년에 투자요건을 완화하는 등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1987년에는 연간 500만달러 이내의 외화유출을 허용하는 등 外換自由化가 이루어졌으며, 1989년에는 해외투자의 범위 및 대상을 확대하고 100만달러 이하 투자에 대해 事後申告制를 도입하였다. 1990년에는 500만달러 이상 투자의 자유화와 6개월 이내의 사후 신고 허용 등 전면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5.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制度의 改善方向

海外直接投資 制度의 기본 개선방향은 기업의 세계화 추세에 맞는 海外直接投資 制度 自由化의 定着 및 事後管理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는 각 기업이 이윤동기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 및 부담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WTO 출범에 따른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와 최근 OECD 가입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최근 취해진 일련의 해외직접투자 제도의 자유화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앞으로의 자유화 확대방안을 위한 보다 신속한 제도의 정착 및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인해 국민 경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정책 마련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가. 海外直接投資制度 自由化의 擴大方案

지난 수년 동안 허가제도의 자유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된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제도의 자유화는 많이 진전이 되었으나 바람직한 제도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행 제도상에서는 투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업종을 철폐하는 등 전면

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졌으나 투자요건이나 투자방법에 대한 규정은 아직 자유화 단계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투자방법의 다양화 및 기업의 세계화를 고려하여 투자비율 등의 투자요건 범위에 대한 정의의 완화조치가 필요하다. 즉, 투자요건으로 정의되어 있는 最小所有持分の 비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일본을 비롯한 다수의 선진국은 해외투자기업의 最小所有持分을 OECD 규정에 따라 10%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이 확정적인 상황하에서 이와 같은 완화조치는 우리나라 기업의 원활한 해외활동과 OECD의 海外投資自由化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실질적인 해외투자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申告制로의 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OECD의 가입⁶⁾을 위해서도 서두를 일이라고 본다. 현행 신고제도에 대해 기업들은 신고제가 허가제와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외환운용상의 규제조치에 대해서도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행 제도상 신고제도는 심사 후 신고수리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에 대한 자료의 보완 요구에 따라 신고수리가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속한 해외직접투자를 위한 완전신고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대형화

- 됨에 따라 현행 허가기준 금액 철폐의 타당성이 논의되고 있으며 특히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 규정하의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규정의 준수를 고려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실현될 것이라고 본다.

6) OECD의 자본이동자유화 규정에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도 포함되어 있다.

나. 自己資金 調達義務 및 母企業 支給保證 制限의 改善方案

1995년 10월에 도입된 自己資金 出資義務 및 母企業 支給保證 制限措置⁷⁾는 海外投資 自由化 措置의 擴大 및 전반적으로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으로 인한 무분별한 海外直接投資의 急増으로 초래되는 부실기업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적 차원에서 도입되었다고 보인다. 즉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투자기업의 재무구조를 건실화하고 부실기업이 도산할 경우 증가할 외채부담을 줄이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기업의 機會費用을 증가시킴으로써 투자를 왜곡시킬 뿐 아니라 해외투자 기업의 國際競爭力을 감소시키는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 특히 해외의 저렴한 현지금융을 이용하는 기업은 그렇지 못한 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한 투자의 건실화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초기 투자규모의 위축만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기업들의 外部金融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해외직접투자 기업에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다. 1994년의 경우 우리나라 국내 제조업의 자금조달 구성비를 살펴보면 외부금융에 대한 평균의존도가 58.1%로 內部金融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⁸⁾. 이같이 기업 전반에 재무구조상의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自己資本 調達義務 規程을 해외투자 기업에만 적용하는 데는 衡平性의 문제가 존재하며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외부금융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부터의 탈피를 유도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실효성이 의문시되며 국내투자와 해외투자간의 非衡平

7) 제3절의 '최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 조치' 참조.

8) 이인표, 「고금리의 원인과 대책」,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6. 11 참조.

性으로 인한 투자의 왜곡을 초래하는 규제는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생각되며 빠른 시일 내에 완화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자기자금 출자의무 규정의 경우는 OECD가입 협정과 관련된 우리나라 자본이동 자유화 계획에 따라 1억달러 이상 투자액의 20%에 해당하는 자기자금 조달의무 규정이 1997년 12월로 폐지가 예상되고 있으나, 1억달러 이하 투자액에 대한 10% 규정의 완화 또한 검토·시행되어야 한다.

모기업 지급보증에 의한 현지금융의 제한조치에 대해서는 현지금융 사용의 적정수준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특히 해외기업의 합병과 인수(M&A)를 통한 첨단기술 분야의 해외직접투자는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 모기업 지급보증을 통해 현지금융을 조달하는 것은 국내 자본시장의 驅逐效果(crowding out effect)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현지금융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는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기업 지급보증 제한조치에 대한 實效性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 事後管理制度의 改善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事後管理 또한 외국환관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해외투자를 허용하던 해외직접투자 제도의 틀 내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수준이 종전의 제한적인 투자의 범위를 초월하여 기업의 국제화가 보편화되고 투자제도 또한 점차 자유화됨에 따라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는 사후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의 초점은 實效性的의 提高와 簡素化에 있다고 본다. 사후관리제도의 기본목적은 해외직접투자의 실행여부와 부실기업의 건전성 유도 및 투자자산의 해외도피 방지에 있으므로 해외직접투자 실행관련 보고도 송금증명서 등으로 단일화하고 청산관련 보고도 사후보고로 현지 公認會計士의 확인으로 대신하는 등

실효성은 높이면서 절차는 대폭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⁹⁾.

반면, 자산도피를 목적으로 한 자본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이후 투자에 대한 과실송금 여부의 조사 등을 실행하는 방안¹⁰⁾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해외투자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 등을 포함한 實態調査를 실행하는 반면, 지역별 또는 국가별로 우리 기업들간에 協議體¹⁰⁾를 구성하여 현지정부와의 창구 및 단체협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장려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협의체를 통해 현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도모하고 우리 정부의 해외투자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창구로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함이 바람직하다.

9) 현행 해외투자허가에 대한 사후관리보고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직접투자 자금 송금보고서(또는 현물출자 통관보고서) 2. 외화증권 및 외화채권 취득보고서와 개인기업 영위시는 해외직접투자사업 설립보고서 3. 원리금외수시 이에 대한 보고서 4.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 5. 해외직접투자 사업 청산시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6.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보고서

10) 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해외기업들은 이미 이와 같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 협의체가 우리 정부와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진출 기업의 경우는 몇 개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미미하거나 친목도모 단계에 그치고 있다.

VI. 海外直接投資 關聯 租稅制度

1. 海外直接投資 關聯 租稅制度

우리나라 稅法上 國內法人에 대해서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國稅를 납부할 의무가 주어진다. 즉 우리나라는 國內法人의 소득에 대해서는 居住支國課稅制度를 따르고 있으며 國內의 外國法人 소득에 대해서는 國內원천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주장하는 源泉支國課稅制度를 택하고 있다¹⁾. 이에 따라 국내법인은 국내원천소득 이외에도 외국에 설립한 자회사나 지점의 해외원천소득에 대한 국내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단, 해외 자회사의 소득은 국내 모회사에 송금되기 이전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권을 주장하는 원천지국과세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이 국내법인에 대해 거주지국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동시에 국내에 진출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원천지국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등 양 제도를 혼용함에 따라 동일 소득에 이중, 삼중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이와 같이 국가간 과세권 행사에서 오는 이중과세 등에 따른 租稅負擔을 줄이고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1) 일반적으로 국제세법상 국내법인과 외국법인을 나누는 기준은 本店所在地主義와 管理支配地主義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양 제도 중 본점소재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국내법인은 국내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가리키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참조) 그 외의 법인은 외국법인에 속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경우는 본점소재지주의를 따르는 반면 영국 등 많은 OECD 국가들은 관리지배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같은 각종 조세 관련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租稅支援制度에는 해외직접투자 손실준비금제도,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외국납부세액 의제제도와 해외자원 개발사업에 대한 배당소득 면제제도 등이 있으며 정부간의 협정을 통해 해외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이중과세 방지제도가 있다. 최근에는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附表 5〉 참조).

가. 海外直接投資 損失準備金制度²⁾

海外投資를 활성화하고 투자 초기의 손실보전을 지원하기 위해 海外直接投資者가 해외에서 투자활동 수행시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준비금을 적립토록 하는 제도이다. 해외투자자는 해외투자액의 20%까지 해외투자 損失準備金으로 5년간 적립할 수 있으며 동 적립금은 손비로 인정받아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적립 후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후부터 4년간 分割하여 이익금으로 환입된다. 손금에 산입한 해외투자 손실준비금은 투자금액의 회수불능 등으로 인한 損失과 相計가 가능하며 상계 후 잔액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익금으로 환입하여야 한다. 해외투자사업을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즉시 이익금으로 환입하여야 한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참조.

나. 外國納付稅額 控除制度³⁾

우리나라의 法人稅法에서는 외국에 자회사나 지점을 두고 있는 국내 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해외원천소득의 총액에 대해 法人稅를 賦課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을 부과하듯이 외국 정부도 우리나라 해외진출 현지법인의 원천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다. 이 결과 국내법인의 해외진출 현지법인의 소득은 우리 정부와 외국 정부에 대해 이중으로 稅負擔을 지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 사업 수행시 외국 정부가 법인세를 부과하여 이를 납부한 경우에 국내에서는 세액공제 한도액 내에서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액을 당해 연도 국내법인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세액공제 한도액은 당해 연도 법인세 산출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것이다.

최근 1994년 12월에 개정된 법인세법에 의하면 외국 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한 외국법인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당해 사업연도부터 5년간 移越控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다수의 국가에 위치한 사업장으로부터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외 원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외국소득으로 포함시켜 국내소득과 구분하는 一括限度制와 국가별로 한도액을 적용하는 國別限度制 중에 선택이 가능하게 되었다(〈附表 5〉 참조).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은 법인의 課稅所得을 기준으로 하여 외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부과된 法人稅와 特別附加稅 그리고 배당 및 이자와 사용료 등에 부과된 源泉徵收稅 등이다. 부가가치세나 매출세 등의 간접세의 대부분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3) 법인세법 제24조의 3 참조.

다. 間接外國納付稅額 控除制度⁴⁾

1995년 12월에 도입된 間接外國納付稅額 控除制度에 따라 國內 母企業이 출자한 해외 자회사로부터 이익을 배당받는 경우 해외 자회사가 외국 정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국내 모기업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제도의 채택 이전에 현지법인은 해외투자 소득에 대해서 송금된 배당 등에 징수된 원천징수액만을 공제받는 등 세제상 해외 지점보다 불리하였으나 이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해외진출 형태(자회사 또는 지점)에 따른 과세상 불공평성이 해소되었다(〈附表 4〉 참조).

또한 해외 현지법인 설립을 節稅 또는 租稅回避 目的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 모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20% 이상을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되고 있다.

라. 海外事業에 對한 所得控除⁵⁾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단,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공제된다.

4) 법인세법 제24조의3 제4항

5) 조세감면규제법 제20조 참조.

바. 外國納付稅額 擬制制度⁶⁾

外國納付稅額 擬制制度는 우리나라와 二重課稅 防止協定을 체결한 상대국가가 자국 내의 외국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우리나라 해외투자자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해 준 경우 감면받은 상당액만큼을 외국에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우리나라에서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세액 공제 및 공제율은 각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 海外資源開發事業으로부터의 配當所得에 對한 法人稅免除⁷⁾

이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資源保有國이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로부터의 配當所得에 대해 免稅하는 경우 면제받은 분에 한해 국내의 法人稅를 면제해 주는 제도이다. 단, 국내법인의 배당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 의제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한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의 순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장려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 二重課稅 防止協定

二重課稅 防止協定은 海外直接投資에 대해 국제적 租稅處理를 단순화하고 해외투자 기업의 租稅負擔을 줄임으로써 국가간의 투자교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소득이나 부동산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 및 부동산이 소재하는 국가

6)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의 3 참조.

7) 조세감면규제법 제30조 참조.

에서 과세권을 행사하며 해운 및 항공운수에 대한 과세권은 거주지국에 있다. 배당 및 이자는 양국에서 과세 가능하나 소득원천지국에서는 10~20%의 일정비율 내에서 과세한다. 이중과세 방지는 소득원천지국에서의 납세금액만큼 거주지국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거나 또는 외국원천소득을 국내에서 非課稅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와의 이중과세 방지협정 체결국은 1996년 5월 말 현재 다음과 같이 45개국에 이르고 있다.

〈表 VI-1〉 우리나라의 二重課稅 防止協定 現況

계 (54개국)	시행국 (45개국)	일본, 태국, 독일, 영국, 덴마크, 벨기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방글라데시, 터키, 스리랑카, 인도, 필리핀, 룩셈부르크, 파키스탄,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튀니지, 헝가리, 브라질, 아일랜드, 폴란드, 이탈리아, 몽골, 이집트, 중국, 베트남, 루마니아, 스페인, 멕시코, 피지, 체코, 불가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서명국 (3개국)	슬로바키아, 그리스, 포르투갈
	가서명국 (6개국)	모로코, 나이지리아, 몰타, 쿠웨이트, 파푸아뉴기니, 카자흐스탄

註 : 1. 시행국 : 서명한 협약에 대해 국회비준을 받아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협약체결이 발표된 국가

2. 서명국 : 실무대표간 합의된 협약을 양국 외교체널을 통하여 서명한 국가

3. 가서명국 : 협약내용에 대해 양국 과세당국 실무대표간 합의가 이루어진 국가

資料 : 재정경제원 국제조세과,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현황」, 1996. 5.

2. 改善方向

가. 海外直接投資 損失準備金の 差等化

현재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損失準備金은 해외투자금액의 20%로 규정되어 있으며 투자지역이나 업종에 관계없이 一律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좀더 효율적인 해외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 손실준비

금을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差等 適用할 필요가 있다. 국내의 산업구조 조정과 連繫하여 투자장려업종과 투자억제업종 및 투자장려지역과 투자억제지역으로 차등화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첨단기술 부문의 투자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투자인센티브로서 이 제도를 필요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본다. 물론 이와 같은 차등화가 해외직접투자 제도의 자유화에 역행해서는 안 될 것이며 단지 투자장려 부문을 誘引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사례로 가까운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해외투자 손실준비금이 투자지역과 업종에 따라 차등화되어 있으며, 손실준비금 내역을 살펴보면 개발도상국 투자시에는 투자액의 15%가 적용되고 해외 특정 투자법인의 경우에는 20%, 자원개발 투자사업은 40%, 그리고 자원개발 탐광사업은 100%가 각각 적용되고 있다.

나. 外國納付稅額의 前期移越控除 導入 및 損金算入 期間의 延長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현행 法人稅法은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대해 “課稅標準에 國外源泉所得이 包含되어 있는 경우”로 규정하여 외국납부세액 초과분이나 미달분에는 이월공제나 소득공제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해외진출 기업들은 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실효세율 초과분에 대한 공제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다. 특히 결손시에는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즉 고세율 국가로부터의 초과 외국납부세액과 결손시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의 이월공제나 손금산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관련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의 租稅負擔이 국내 동 기업에 비해 높아 租稅衡平의 原則에도 어긋남은 물론 해외투자 촉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

기를 차기 5년으로 개정하였다(1994. 12. 22). 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 초과분이나 결손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차기 이월공제를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최근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해외로 다수 진출하여 사업초기의 5년 이상 적자로 인한 결손금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초과분이나 결손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에 대해서는 이월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점차 연장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英國, 獨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홍콩은 차기 이월공제 기간을 무기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美國은 15년의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더 나아가 외국납부세액 공제 여유액이나 결손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전 사업연도 이익에 대해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의 前期移越控除制度의 도입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특히 缺損 비중이 큰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이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美國, 英國, 프랑스의 경우는 전기이월공제 기간을 3년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獨逸(1천만 DM 한도 내)은 2년 그리고 日本은 1년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도입시기 처음에는 1년의 전기이월공제를 중소기업에 한해 허용하고 점차 기간 및 대상을 확대해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제도의 도입은 우리나라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외국기업에 대한 競爭力 提高에 일조할 것이다.

다. 二重課稅 防止協定 締結의 擴大

二重課稅 防止協定の 의의는 국제적 租稅處理의 단순화와 海外直接投資의 租稅負擔을 줄임으로써 협정 체결국간에 통상 및 투자교류를 증대하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45개국과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밖에 9개국이 가서명 또는 서명국으로 되어 있다(〈表 VI-1〉 참조).

여러 지역에 진출한 해외직접투자 기업들이 투자지역에 상관없이 주어진 조세관련 지원⁸⁾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 방지협정국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서명국과의 협정체결 발효를 위해서 국내비준을 서둘러야 한다.

라. 間接外國稅額 控除制度의 補完

우리나라 세법상 1996년 間接外國稅額 控除制度의 도입 이전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직접세 부분만을 공제해 주는 一般稅額控除方式(ordinary tax credit)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진출 기업과 국내의 모기업간의 연결세무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기업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송금받는 배당에 대해 해외 자회사가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다. 그래서 해외진출시 해외지점이 현지법인 형태보다 節稅의 관점에서 유리한 상황이었다(〈附表 4〉 참조). 이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을 통한 해외직접투자를 활성화하여야 하는 국내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었다.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의 도입은 해외진출 기업의 현지화를 통한 國際競爭力 提高와 해외진출 지점과 현지법인간의 租稅負擔의 公平性 維持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고 본다.

외국의 예로서 미국은 세법상 연결세무신고를 의무화하여 해외 현지법인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이 제도를 도입해 자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도모하여 왔다.

間接外國稅額 控除制度는 해외소득의 국내송금에 대한 비용을 감소시켜 해외소득의 국내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으나,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

8) 지원제도로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외국납부세액 의제제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등이 있다.

를 節稅 또는 租稅回避의 목적으로 역이용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 간접 외국세액 공제의 대상요건으로 국내기업의 현지법인 중 배당 확정지불일 이전 6개월 이상 외국법인으로 당해 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발행 주식의 20%(일본의 경우는 25%)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모기업에 대한 국내 有效稅率이 해외의 현지법인이 위치한 외국의 세율보다 높은 경우 모기업은 현지법인으로부터의 果實을 現地留保시킴으로써 이에 대해 국내로부터의 세금을 이월하는 등 節稅의 효과를 얻게 되어 과도한 현지유보를 초래하는 등의 악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가 정착됨에 따라 節稅 또는 租稅回避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투자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를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로 租稅避難處에 대한 대책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제정된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서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부담액이 실제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해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에게 귀속될 배당 또는 이익은 실제 배당 여부를 불문하고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⁹⁾. 해외투자소득의 과도한 현지유보를 억제하는 또 하나의 방안은 특정한 소득에 대해서는 투자대상국이 조세피난처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투자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모두 배당된 것으로 간주하여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현재 美國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정소득에는 受動的 所得(passive income), 내국인이

9) 법률로 정한 특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실제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사무소 등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제도의 개선에 따른 정책의 정착이 필요하다.

해외에 설립한 持株會社(foreign holding company)의 소득과 수동적인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거나 자산 중 수동적인 부분이 큰 해외투자 기업의 소득 및 배당되지 않은 해외투자 소득 중 거주지국 재산에 투자한 부분 등이 포함되어 있다.

Ⅶ. 海外直接投資 關聯 金融, 投資保障 및 情報支援制度

1. 金融支援制度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金融支援 방안으로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의한 해외투자자금 대출과 해외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환은행에 의한 해외투자자금 대출 등의 자금대출제도와 이외에 특수한 성격을 지닌 해외투자 사업의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 해외투융자 자금 대출과 유휴설비 해외이전자금 대출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석유개발기금 및 해외자원개발기금 등이 구성되어 있다. 해외투자 관련 금융지원제도에 대한 구분 및 지원조건(〈表 Ⅷ-1〉 참조)과 내용은 다음에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海外投資資金 貸出

한국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해외투자자금 대출 제도의 종류에는 海外投資資金 貸出¹⁾과 海外事業資金 貸出²⁾이 있다. 해외투자자금 대출은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출자시 필요한 자금이나 출자한 현지법인의 현지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기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외사업자금 대출은 우리나라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사업에 대한 설비의 신설 또는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1항 6호 자금 참조.

2)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 1항 5호 자금 참조.

〈表 VII-1〉 海外投資 金融支援制度 現況

구 분	대 상	지 원 조 건			취급기간
		융자비율	이자율	기 간	
해외투자 자금대출	해외투자를 행하는 국내기업	90% 이내	고정금리: CIRR~CIRR+1.0% 변동금리: LIBOR+(0.5~1.25%)	최장 10년 (3년 이내 거치 포함)	수출입 은행
외화대출	해외투자 허가를 받은 국내기업	70% 이내 (중소기업:80%)	LIBOR+1% 내외	최장 10년 (거치기간 1/3 범위 내)	외국환 은행
대외경제 협력기금 자금투융자	개발도상국의 경제 협력성 인정사업	80% 범위내	5~6% 이내	15년 이내 (거치기간 5년 포함)	수출입 은행
유휴설비 해외이전 자금대출	사업전환 대상업체 · 시설자금 · 운전자금	100% 이내 90% 이내	7% 7%	8년 이내 (3년 거치 포함) 3년 이내 (1년 거치 포함)	중소기업 진흥공단 ·
해외지원 개발기금	석유 이외의 주요 광물 개발사업	80% 이내	5%	15년 이내 (5년 거치 포함)	광업진흥 공사
석유개발 기금	석유가스유전 개발을 위한 탐사비 등	70% 이내 (유개발:100% 이내)	6%	18년 이내 (8년 거치 포함)	석유개발 공사

註: 1. 고정금리로 선택할 경우 LIBOR(런던은행간 금리) 6개월물에 연동됨.

2. 고정금리는 CIRR(상업참고금리)을 기준으로 하여 융자기간(5년 이하, 5년 초과 8.5년 이하, 8.5년 초과)별로 차등적용함.

資料: 한국수출입은행.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는 소요자재의 대부분이 국산품으로 충당될 경우로 제한된다. 해외사업자금 대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법인의 설립이 필요하지 않다. 즉, 해외지사를 통한 영업활동시에도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출대상 사업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³⁾으로 규정되고 있다. 정부의 「海外投資指針」에 의거한 자금지원 금지사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평

가한 국별 신용도가 E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투자사업⁴⁾, 부동산 임대업·분양공급업, 오락·레저시설 운영업, 숙박업, 기타 부동산을 사업의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자산으로 하는 사업 및 금융·보험업, 가사 및 기타 서비스업, 오락관련 사업 등이 있고,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에도 자금지원을 금하고 있다. 대출대상 투자자의 요건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영위하는 국내사업자로서 금융기관의 信用情報交換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 거래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다.

貸出은 외화표시 증서대출로 이루어지며 소요자금 총액의 90% 범위 내로 대출비율 한도가 정해져 있다. 대출에 대한 이율은 固定金利⁵⁾나 變動金利⁶⁾ 중에서 해외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이며 거치기간 3년을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의 성격이나 투자상대국의 투자여건 및 업종 등 사업의 特殊性을 감안하여 伸縮性 있게 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자금 대출은 국내담보⁷⁾를 요구하고 있으며 수출입은행의 신용규정의 기준에 부합하는 우량기업의 경우에는 신용대출(투자기업의 자기자본의 30% 범위 내)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약정수수료를 대기업의 경우는 연 0.5% 징수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면제하는 등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海外投資資金 貸出 實績(〈表 Ⅶ-3〉 참조)은 1989년 처음으로 1억달러를 초과하는 등 1990년도에도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1991년부터 1993년

3)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5조 제12항 참조.

4) 단, 자유무역지대, 경제개방지구 및 우리나라와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예외다.

5) $CIRR \sim CIRR + 1.0\%$: CIRR은 공적수출신용에 관한 OECD협약상의 참고상업금리로 국내금융시장에서 상업대출금리를 대표하는 것으로 최우량 차주에 대한 금리를 의미한다.

6) $LIBOR + 0.5\% \sim LIBOR + 1.25\%$.

7) 국내담보로는 국내외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부동산,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상장회사의 주식에 이에 해당된다.

까지는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가 다시 급증함에 따라 1994년부터 해외투자 자금대출은 다시 급증하고 있다. 1995년의 자금대출 실적은 5억 2,900만달러 규모로 1994년의 3억 120만달러에서 약 76%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海外事業資金 貸出의 경우는 1995년 기준 2,800만달러의 대출실적을 기록하고 있다(〈表 Ⅶ-3〉 참조).

나. 對外經濟協力基金 海外投融資資金 貸出

대상사업이 그 성격상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지원을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對開發途上國 투자사업으로 경제협력성이 인정되고 전망이 있는 투자에 대해 對外經濟協力基金 海外投融資資金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農林業, 水産業 및 炭鑛業과 같이 위험도가 높고 收益性이 낮은 사업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기간이 장기간인 사업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다.

대출은 원화표시 증서대출과 어음대출로 이루어지며 대출한도는 出資 및 融資 등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 償還은 5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해 15년 이내로 규정짓고 있으며 담보로는 국내 또는 국외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에 의한 지원은 1995년에는 4,486만달러 수준으로 1993년의 7천만달러 수준에는 못 미치고 있으나 1994년의 3,759만 달러 보다는 19.3%의 증가를 기록하였다(〈表 Ⅶ-3〉 참조).

다. 外國法人에 對한 事業資金 貸出

外國法人에 대한 事業資金 貸出은 해외 현지법인이 시설확장 및 추가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이 해외 현지법인 앞으로 직접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출자

한 외국법인으로 「海外直接投資指針」⁸⁾에 명기된 해외투자자금지원 금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이다.

대출기간은 시설자금 대출시는 10년 이내이며 운영자금에 대한 대출은 3년 이내로 시설과 운영자금 대출을 같이 할 경우 合算期間은 10년 이내로 정해져 있다.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국내 담보 및 신용 있는 외국금융기관이 발행 또는 확인한 신용장과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취득하며 필요시에는 연대보증인을 세움으로써 담보를 대신할 수 있다. 단, 해외투자자금 대출의 경우와 같이 예외적으로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라. 域外資金 融資支援制度

域外金融(offshore banking)이란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調達하여 비거주자에게 대출하여 주는 금융제도로서, 주로 우리나라 해외진출 현지법인들이 현지에서 소요하는 사업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역외금융의 기본취지는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에 자체신용도의 脆弱으로 겪게 되는 현지금융 조달의 애로를 타개하기 爲해 輸出入銀行의 국제신용도를 바탕으로 조달하는 저리의 자금을 활용해 유리한 조건으로 이들 해외투자기업에게 자금을 조달해 주는 데 있다.

수출입은행의 역외자금 융자지원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 및 해외지점에 대한 대출 또는 차관단 참여, 수출입은행의 고유업무로서 자본재 등의 연불수출지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사업 지원업무⁹⁾와 관련한 외국기업 및 외국금융기관앞 대출, 타 역외계정앞 대출, 국내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의 인수.

8) <附錄 1>의 해외직접투자관련 법규 참조.

9) 수출입은행법 제18조 업무.

대출기간은 최장 10년 이내에서 자금의 용도,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을 감안해 매건별로 결정을 하고 있다. 금리는 固定金利와 變動金利 대출이 포함되어 있으며, 투자자와 보증인의 신용도, 대출기간 및 국제금융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매건별로 각기 달리 정하고 있다. 역외대출에 대해서는 담보를 필요로 하며, 단 투자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가 양호할 경우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다. 대출의 한도는 총소요 자금 범위 내로, 용도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규정짓고 있다.

마. 外國換錢銀行의 海外投資資金 貸出

자금대출의 대상으로 海外直接投資를 수행하는 모든 국내기업 또는 거주자를 포함하고 있다. 대출 종류로는 외화어음대출과 외화증서대출이 있으며, 이율은 연 LIBOR(런던은행간 금리)+2.0% 내외이다. 대출비율은 대기업에는 투자액의 70%, 중소기업에는 80%가 각기 적용되고 있다. 대출기간은 10년이며 국내담보로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원금상환 방법은 연 2~4회 이상 均割償還을 채택하고 있다.

바. 其他 金融支援制度

한국수출입은행과 외국환은행이 제공하는 海外投資 金融支援制度 이외에도 중소기업진흥공사가 담당하는 유휴설비 해외이전자금 대출, 광업진흥공사가 취급하고 있던 해외자원개발기금 및 석유개발공사의 석유개발기금 등이 해외투자와 관련된 金融支援制度들이다.

유휴설비 해외이전자금 대출 대상은 주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대상 업체들로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1994년부터는 개별업체 지원사업은 지자체로 이관하고 지원대상의 초점을 공동화 사업에 두고 있다. 최근 몇 년 간의 유휴설비 해외이전자금 대출 실적

을 살펴보면 <表 VII-2>와 <表 VII-3>에서와 같이 총 9건으로 13억 6,600만원에 이르는 등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海外資源開發基金은 석유 이외의 주요 광물 개발사업을 지원해 왔으나 1994년 1,846만달러의 지원실적(<表 VII-3> 참조)을 올린 것을 마지막으로 1995년부터 폐지되었다. 석유개발기금은 석유·가스유전개발을 위한 탐사비 등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지원실적은 <表 VII-3> 참조).

<表 VII-2> 遊休設備 海外移轉資金 貸出 實績

(單位: 개, 百萬元)

	1989	1990	1991	1992	1993	合 計
업 체 수	4	1	2	1	1	9
대 출 실 적	526	279	390	55	116	1,366

資料: 중소기업진흥공단.

2. 投資保障 및 情報支援制度

가. 海外投資保險制度

海外投資保險은 우리나라 해외진출 기업이 행한 海外直接投資에 대한 투자대상국에서의 불가항력의 위험, 즉 非常危險으로 수용위험, 전쟁위험 및 송금위험 등으로 인해 投資元金 및 配當金과 利子 등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非營利 政策保險의 성격을 띠고 있다. 수용위험은 투자상대국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 의한 투자재산 몰수의 경우이며 전쟁위험은 투자대상국의 정변으로 투자사업이 불가능하거나 破産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송금위험은 외환시장 악화 등으로 인한 투자대상국 정부의 지급유예조치 또는 환거래의 제한으로 배당금과 이자를 포함한 투자원금의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를 가리킨다.

〈表 VII-3〉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金融支援 實績

(單位: 千달러)

	해외투자 자금대출	해외사업 자금대출	대의경제 협력기금	유휴실비해외 이전자금대출	해외자원 개발기금	석유사업 기금
1976	12,541					
1977	32,231					
1978	33,264					
1979	22,727					
1980	3,391					
1981	16,886					
1982	70,170				8,563	
1983	40,863					
1984	17,866				359	24,060
1985	4,161				372	10,070
1986	1,793				61	19,610
1987	6,285					13,930
1988	38,963					44,970
1989	140,589		1,787	1,233	16,680	39,820
1990	197,807		10,032		46,937	45,430
1991	136,361		6,681	532	58,203	45,780
1992	123,871		15,628	70	16,423	39,900
1993	96,677		70,016	145	15,092	78,060
1994	301,201	21,034	37,588		18,461	46,990
1995	528,998	28,005	44,861			

註: 연평균 對美 달러 환율로 환산.

資料: 한국수출입은행, 『수은 20년사』, 1996.

한국수출입은행 경제기획부.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업진흥공사.

석유개발공사.

1992년 7월 이전에는 해외투자보험 업무를 한국수출입은행이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이를 맡고 있다. 보험대상 투자는 외국법인의 자본취득(신규투자, 확장, 증자 포함)으로, 합작투자자에 대한 장기대부(이자포함), 해외직접투자 사업용 부동산, 광업권, 공업소유권 등의 취득에 국한되어 있다. 담보율은 투자금액의 90% 범위 내로 정하고 있으나, 단 중소기업의 경우는 95%로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보상률의 경우도 손실발생액의 90% 이내이나 중소기업의 경우는 95%로 정하고 있다. 해외투자보험 요율은 기본적으로 위험비중에 따라 4단계로 구분된다. 보험기간은 통상 3~15년 이내에서 투자자가 임의로 결정하며 연장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해외투자보험의 引受實績은 <表 Ⅶ-4>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외투자의 건수 및 규모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6년 6월 현재 우리나라 해외투자보험 인수실적은 겨우 55건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 총해외직접투자가 5,956건(1996년 6월 현재)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해외투자보험의 건당 평균 투자보험금액은 64억 8,791만원 수준으로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보험인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⁰⁾.

<表 Ⅶ-4> 海外投資保險 引受實績

(單位: 건, 百萬圓)

	1992	1993	1994	1995	1996. 1~6	계
건 수	17	9	10	12	7	55
보 험 금 액	71,974	70,970	85,670	117,253	109,688	356,835
보 험 료	289	306	378	675	551	2,199

資料: 한국수출보험공사.

10)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의 건당 평균투자금액은 총투자기준으로 1996년 현재 213만달러임(<表 Ⅱ-8> 참조).

나. 投資保障協定

投資保障協定은 국가간 정부차원의 협정으로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 비상위험으로부터 海外直接投資者를 保護하여 투자교류를 증진시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1996년 5월 말 현재 투자보장협정 체결국은 33개국이며 서명국은 11개국에 이르고 있다(〈表 Ⅶ-5〉 참조).

투자보장협정의 주요내용으로는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보장, 국유화 및 수용의 금지, 전쟁 등의 긴급사태로 인한 손실의 보전, 자유로운 투자원금 및 과실의 송금보장과 투자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등을 들 수 있다.

〈表 Ⅶ-5〉 投資保障協定 締結國

(單位: 百萬元)

시행국(33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파키스탄, 몽골,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페루, 서독,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벨·룩경제동맹, 프랑스, 덴마크, 헝가리, 폴란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터키, 루마니아, 스페인, 체코, 타지키스탄, 그리스, 튀니지, 세네갈
서명국(11개국)	필리핀, 인도, 아르헨티나, 체코, 핀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자이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볼리비아, 라오스
가서명국(6개국)	브라질,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콩고, 나이지리아, 이집트
계 (50개국)	

資料: 재정경제원, 『투자보장협정체결국현황』, 1996. 5.

다. 情報支援制度

우리나라 海外投資企業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기관은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정보센터를 비롯해 한국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대한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며 이외의 몇 기관들¹¹⁾ 또한 각기

해외투자정보 및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投資制度 및 절차의 안내와 진출대상국의 사업환경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몇몇 기관들은 합작투자 및 기술제휴 대상업체에 관한 정보 제공과 알선도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정보가 기관별로 분산관리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에 투자관리 각종 정보를 지원·상담하는 종합센터는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3. 改善方向

가. 金融支援制度

우리나라 금융지원제도 중 韓國輸出入銀行의 자금대출의 경우는 대출금리나 용자비율과 같은 지원조건의 잦은 변경으로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어 왔다. 대부분의 자금대출 및 용자조건은 투자업종이나 지역별로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지원제도를 통해 특정업종이나 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는 데는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경쟁우위를 상실한 사양산업의 對開途國 투자와 첨단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對先進國 투자에 대해서는 우대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출금리나 비율 또는 상환기간과 대출금액의 대출한도를 업종별·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법 등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대출이나 용자를 통한 금융지원은 국내담보가 요구되므로 담보능력이 열악한 해외진출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용자시에는 연 용자잔

11) 한국재외공관, 중소기업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대한상공회의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액에 대해 일정비율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담보능력이 중소기업에 비해 탁월하고 계열기업간의 지급보증 등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衡平性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信用保證基金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특히 개도국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소규모 해외투자가 급증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적절한 금융지원제도의 마련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와 같은 기금을 통한 지원제도는 재원조달이나 형성단계에만 그치지 말고 보다 效果的인 信用貸出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기업의 事業性이나 收益性에 대해 제대로 검토 및 평가를 행해야 할 것이다. 해외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분석·조사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 및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본다.

韓國輸出入銀行이 담당하고 있는 對外經濟協力基金 海外投融資資金 貸出도 대출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表 Ⅶ-3>에서와 같이 이 기금을 통한 대출실적은 기금규모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에는 매년 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설정되어 왔으나 대출실적은 적립기금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기타 금융지원제도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취급하고 있는 遊休設備 海外移轉資金 貸出은 1989년의 123만달러에서 1993년 현재 12만 5천달러로 10배 가량이 감소하였다. 더욱이 1994년부터 개별업체 지원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되어 기금에 비해 대출수준의 미미함이 지속되리라 본다. 이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한 중소기업들이 해외이전시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해외이전을 꾀하는 중소기업들 중에는 기술개발이나 기술혁신을 위한 재투자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국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해 경쟁우위를 상실하여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들 기업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海外投

資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들의 순조로운 海外移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것에 소요되는 資金調達에 대한 지원이 선결과제인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는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소기업을 위한 信用支給保證基金을 들 수 있다. 신용지급보증기금의 신설을 통해 현행 금융지원제도하에서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조달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기존의 신용대출과는 달리 대출의 근거를 담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기업의 收益性에 기초를 두는 보다 實效性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본다.

나. 投資保障 關聯 支援制度

투자보장 관련 지원제도로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海外投資保險制度和 국가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投資保障協定이 있다. 해외투자보험의 경우 인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도 전무한 실정이다. 1992년부터 1996년 6월까지 보험가입 대상은 총 55개 기업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투자에 대한 보험인수 실적이 낮은 요인의 하나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보험사고 발생가능성이 큰 국가에 대한 투자의 보험을 꺼리고 있어 보험가입 기업들이 부담하고 있는 경비가 과중한 데 있다. 그리고 保險料率이 업종별로는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투자대상 국가별로 등급이 나누어져 위험부담이 높은 중소기업이나 제조업 부문의 투자기업들은 해외투자보험제도로부터 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보험가입 대상 투자가 투자원금 및 배당금과 이자로 제한되어 있어 현지에서 차입을 통해 투자한 경우 채무보증에 대한 보험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海外投資保險은 보험금 지급대상을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대상국에서의 비상위험만으로 국한하고 있어 신용위험의 경우는 제외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보험대상을 투자원금 및 배당금과 이자 이외에 채무보증에 의한 차입금으로 확대하며 또한 보험

금 지급을 비상위험 등에 국한하지 말고 신용위험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실시해야 한다.

해외투자보험 보험가입 대상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 기업들이 부담하는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보험료를 인하조정하며, 특히 위험부담이 큰 中國이나 他 開途國에 대한 중소기업 또는 제조업 분야 투자에 대해서는 보험요율에 대해 우대조건을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위험부담이 큰 지역으로 진출한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를 결과적으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국가간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投資保障協定을 살펴보면 1996년 5월 현재 협정 체결국은 33개국에 불과하여 우리나라 해외투자국 수에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투자장려 차원을 떠나 투자보호 측면에서라도 투자의 수용 및 기타 분쟁위험 발생을 대비해 다수 국가들과의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 情報支援制度

우리나라 해외투자정보의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이 분야의 담당기관들이 각기 해외투자 관련 전반에 걸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대부분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보다는 특정지역이나 업종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특정 유망진출지역 및 진출방법에 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투자정보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해외투자 정보의 ONE-STOP 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ONE-STOP 서비스 투자지원기관을 통해 대상기업들은 해외투자에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제반 정보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로써 기존의 분산된 인력과 재원의 낭비를 줄이는 한편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정보의 電算化를 통해 보다 效率的이고 신속한 최신정보의 제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Ⅷ. 海外直接投資에 對한 評價 및 推進方向

本章에서는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評價와 向後 推進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외직접투자의 평가는 앞에서 살펴본 海外直接投資의 現況, 해외직접투자의 理論 및 經濟的 效果에 대한 논의를 근거로 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의 急增要因과 해외직접투자가 經濟에 미치는 影響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봄으로써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평가를 유도하며, 또한 이러한 評價를 바탕으로 하여 向後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나아갈 方向을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1. 海外直接投資의 急增要因

최근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主要急增要因으로는 國內生産費用의 增加,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의 進展, 世界的 競爭戰略에 따른 우리 기업의 世界化 趨勢 등 크게 3가지를 들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國內生産費用의 增加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主要急增要因의 하나로 國內生産費用의 급증을 들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국내생산비용을 세분화하면 賃金, 金融費用 및 物流費用과 地價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같은 생산비용의 증가는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의 國際價格競爭力의 약화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매출액에서 임금, 금융 및 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1994년 기준) <表 Ⅷ-1>에서와 같이 12.5%, 5.6%, 1.3%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表 Ⅷ-1〉 製造業의 賣出額 對比 主要 費用의 推移

(單位: %)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인건비	9.9	11.2	12.8	12.7	12.0	12.9	12.7	12.5
물류비용	0.9	0.9	1.0	1.0	1.4	1.3	1.4	1.3
금융비용	4.6	4.6	5.1	5.1	5.7	6.3	5.9	5.6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각호.

이인표, 「고금리의 원인과 대책」,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6. 11.

우리나라 製造業部門에서 人件費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9년 이후 계속 12%를 上廻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賃金水準은 〈表 Ⅱ-4〉와 〈表 Ⅱ-5〉에서도 알 수 있듯이 198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부문의 生産織 勤勞者의 賃金水準(〈表 Ⅷ-2〉 참조)은 1975년에는 美國의 5% 정도에 머물렀으며 1980년대까지만 해도 다른 新興工業國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1994년을 기준으로 우

〈表 Ⅷ-2〉 主要國의 製造業 生産織 賃金 比率

(美國을 100으로 기준)

		1975	1980	1985	1988	1990	1992	1994
한	국	5	10	10	17	26	30	37
홍	콩	12	15	13	-	21	-	28
대	만	6	10	12	20	26	32	32
싱	가 포 르	13	15	19	19	25	31	37
영	국	53	77	48	76	85	91	80
이	탈 리 아	73	83	59	-	119	-	95
캐	나 다	94	88	84	-	106	-	92
일	본	47	56	49	91	86	100	125
독	일	100	125	74	131	147	160	160
미	국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註: 시간당 보수비용에는 임금, 수당, 세금·사회보험 포함.

資料: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Hourly Compensation Costs for Production Workers in Manufacturing*, 1995.

리나라 제조업부문의 生産織 勤勞者의 賃金水準은 美國의 37%로 싱가포르와 동일한 수준이며 홍콩 및 대만의 임금수준을 능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금융비용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들어 다소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1989년 이후 계속 5%를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비용을 외국과 비교해 보면 <表 Ⅷ-3>에서도 나타나듯이 일본의 3.5배와 대만의 3.3배의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에 취해진 金利引下 정책에도 불구하고 會社債 收益率은 1996년 5월 현재 11.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¹⁾.

<表 Ⅷ-3> 主要國 製造業의 金融費用負擔率(金融費用/賣出額)

(單位: %)

		1990	1991	1992	1993	1994
한	국	5.1	5.7	6.3	5.9	5.6
일	본	2.1	2.2	2.0	1.8	1.6
대	만	2.5	2.4	2.3	2.2	1.7

資料: 韓國銀行, 『企業經營分析』, 1996.

이인표, 『고금리의 원인과 대책』,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1996. 11.

이 밖에도 제조업부문의 생산비용의 증가요인으로 物流費用과 地價를 들 수 있으며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은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운송수단의 적기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데 있다. 우리나라 제조업의 물류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1994년 기준) 일본의 경우를 능가하며 미국의 물류비의 약 2배 이상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地價도 상당히 높아 生産工場의 移轉 및 設立이 용이하

-
- 1) 금융비용을 결정하는 요소로는 차입금의 평균이자율, 차입금의 의존도 및 총자본의 운용에 대한 효율성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금융부담률이 높은 이유는 차입금에 대한 평균이자율이 높을 뿐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의존도 또한 상당히 높아 차입금의 평균이자율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부담률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工場用地에 대한 費用은 외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表 Ⅶ-4〉 참조).

〈表 Ⅶ-4〉 外國의 主要工團 分讓價

(單位: 달러, m²)

미	국	중	국	태	국	한	국
Airport비즈니스 센터(캘리포니아)	靑島경제기술 특별구			Rayong 공단		외국인전용공단 (광주)	명지녹산공단 (부산)
5~10	9.2~25.3			47.7		107.1	226.8

資料: 통상산업부.

나. 海外直接投資의 自由化

初期의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制度는 外換管理次元에서 제한적으로 투자를 허용하며 정부의 産業構造調整, 輸出增大 및 技術振興 등의 産業政策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즉 1980년대 중반 이전의 해외직접투자는 資源開發 및 輸出을 위한 市場開拓부문에 제한적인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86년 經常收支 黑字實現을 계기로 해외직접투자의 自由化 단계로 접어들었다.

우리나라의 본격적인 해외직접투자의 자유화는 1992년 制度改編에 의해 申告受理對象의 확대(200만달러 이하에서 500만달러 이하)와 自己資金調達에 대한 義務規程이 廢止되고 海外投資審議委員會 附儀對象이 축소(500만달러 초과사업에서 100만달러 초과사업으로)되면서 체도의 절차에 대한 단순화가 이루어졌다. 1993년에는 제한업종이 종전의 30개에서 17개로 축소되었으며 나머지 7개 업종에 대해서도 제한을 다소 완화하였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범위도 보험회사의 資產運用 목적과 해외근로자 개인의 住居用까지도 포함하는 등 확대되었으며 해외직접투자의 許可機關도 기존의 韓國銀行 및 韓國輸出入銀行에서 産業銀行과 中

小企業銀行으로 多元化가 이루어졌다.

1994년에는 外國資本의 國內流入이 급증함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제한업종을 다시 14개로 축소하였으며 허가제도의 자유화를 확대(100만달러 이하는 신고수리, 30만달러 이하는 認證取得으로 허가를 대신)하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으며 자산운용 목적의 해외부동산 허용대상도 확대해 나갔다.

1995년에는 부동산 관련 3개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에 대한 투자를 자유화하였으며 신고수리대상의 폭을 더욱 확대(5,000만달러 이하로)하였다. 1996년에는 나머지 3개업종에 대한 자유화가 이루어져 투자업종에 대한 전면적인 자유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투자한도의 확대로 자유화의 폭이 더욱 넓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無分別한 海外投資를 制限하고 投資의 健實化를 도모하기 위해 自己資金 義務調達比率과 母企業의 支給保證에 의한 現地金融의 制限措置를 도입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들어 자유화가 더욱 加速化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活性化政策에 힘입어 최근의 해외직접투자는 그 어느 때 보다도 急増하는 趨勢를 나타내고 있으며 規模도 大型化되고 있다.

다. 世界的 競爭에 따른 企業의 世界化 趨勢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증가는 國內生産與件의 惡化와 制度의 自由化이외에도 現地市場 開拓과 技術習得을 위한 企業의 世界化 經營戰略次元에서 해외직접투자를 실행하고 있다. 이 같은 市場進出型 또는 技術習得型의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對先進國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先進國의 技術 保護主義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先進國의 現地企業과의 合作 및 引受를 통한 技術移轉을 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市場潛在力이 있는 舊共產圈과 印度 및 中國 등 개도국에도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世界競爭戰略論 관점에서 보면 技術, 製品의 品質 및 經營能力 등에서 競爭優位를 보유한 기업이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하게 되며 이는 尖端産業이나 제품의 差別化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2. 海外直接投資의 經濟的 效果

해외직접투자가 國民經濟에 미치는 영향을 一般化하기는 어려운 작업이며 해외직접투자의 動機 및 類型, 투자의 進展狀況, 國內의 産業構造 및 經濟發展段階에 따라 나타나는 效果는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급증하고 있는 大規模 海外直接投資로 인한 貿易收支 赤字와 産業의 空洞化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現時點에서 해외직접투자가 貿易 및 國內産業과 雇傭 등 經濟의 主要部門에 미치는 效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이 필요하다.

가. 海外直接投資와 貿易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가 輸出入에 미치는 영향을 既存의 研究와 輸出入 種目を 業種別·地域別로 검토하였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貿易收支 效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 있다. 즉, 現時點에서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서 발생하는 輸出代替 및 逆輸入 등의 무역수지 감소요인은 輸出增大效果가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輸出誘發效果는 海外現地生産에 대한 現地化의 미흡으로 인해 국내로부터 原·附資材의 수출비중이 아직 높은 단계임을 알 수 있다. 生産據點型 해외직접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對開途國의 국내수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輸出誘發效果의 존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반면 市場進出型 對先進國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貿易收支效果는 단정짓기 어려우나 최근 관찰되고

있는 輸入의 急增現狀의 주된 要因이 해외직접투자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 最近의 貿易收支의 惡化要因으로는 原料 및 에너지의 輸入增加와 高級消費財의 需要急增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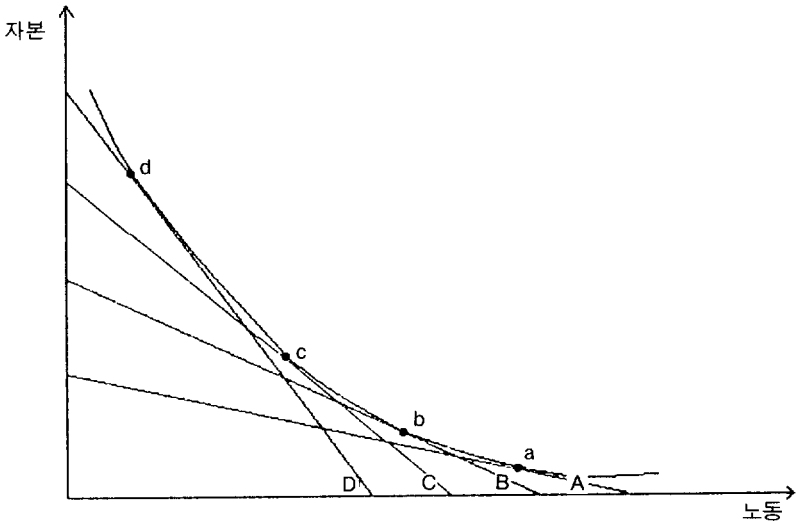
1995년 통산부가 실시한 해외직접투자기업에 대한 設問調査에 따르면 현지법인의 原·附資材에 대한 國內調達比率은 50%로서 전체적으로 이 부문에 대한 輸出效果가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業種別로는 纖維·衣服과 電氣·電子부문의 國內調達比率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金屬部門은 그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역수입의 경우는 현지법인의 總輸出 중 국내로의 逆輸入比重은 40.5%이며 이 중 本社로의 輸入이 35.8%를 차지하는 등 企業內 貿易(intra-firm trade)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金時中(1996년)이 실시한 設問調査에서도 海外投資로 인해 母企業의 生産과 輸出이 증가한다는 응답이 감소한다는 응답의 3배 이상으로 壓倒的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나. 海外直接投資와 産業空洞化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否定的인 영향 중의 하나로 國內産業의 空洞化현상을 들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산업 공동화는 國內通貨의 強勢와 生産要素費用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생산이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의 製造業 분야가 위축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산업공동화는 國內輸出의 代替, 逆輸入 및 國內技術이 해외 이전으로 인한 부메랑효과 등의 3가지 경로를 통해 국내생산기반을 약화시키게 된다. 그러나 産業構造調整 과정에서 나타나는 勞動集約的인 低附加價値 斜陽産業의 해외이전과 資本集約的이며 高附加價値를 창출하는 新興産業의 출현 또한 산업공동화로 볼 수 있으나 이는 경제가 高度化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를 [圖 VIII-1]에서와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발전초기에는 노동집약

적이며 부가가치가 낮은 a를 생산하는 것이 最適의 生産水準을 나타내게 되나 점차 경제가 발전하여 자본이 축적됨에 따라 최적의 생산요소의 결합비율은 자본집약적으로 변화하게 되어 최적의 생산 또한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방향으로 노동집약적에서 자본집약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또한 이 같은 현상은 기업별로 微視的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으며 특정산업 내에서 발생하는 산업공동화와 제조업 전반에 걸친 산업구조조정과는 구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圖 VIII-1] 經濟發展과 産業의 高度化 過程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에 의한 産業空洞化의 發生與否를 判斷하기 위해서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의 産業構造, 雇傭水準 및 해외직접투자의 總投資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製造業이 全産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까지만 해도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1995년에는 이와 같은 추세가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물론 현재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0년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최근 제조업부문의 성장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表 Ⅳ-6〉 참조)

하고 있다. 이 부문의 생산에 대한 절대액은 계속 높은 증가를 기록하고 있어 국내의 産業構造調整이 高附加價値 중심으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3D 업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유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2%의 낮은 失業率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나타나는 저부가가치 부문의 노동공급 부족현상은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고부가가치의 업종 또는 서비스업으로 전환됨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大型化되고 있는 추세로 件當 平均投資規模가 1996년 상반기 許可基準으로 35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전년동기의 250만달러에 비해 급증하고 있다(〈表 II-8〉 참조). 또한 1995년 해외직접투자의 總投資殘額이 100억달러를 초과함으로써 많은 주목과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0.66%로 절대규모면에서는 미국의 5%와 일본의 14%와 대만의 65%에도 못 미치는 등 아직 우려할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자로 인한 국내투자의 감소에 대한 가능성의 우려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IV-9〉 참조). 특히 1993년 이후 國內總投資率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37.5%의 높은 투자율을 기록하였다.

3. 評價 및 推進方向

가. 評價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生産費用의 急增, 制度의 自由化 및 世界的인 競爭戰略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의 類型도 투자동기에 따라 生産據點型과 市場進出型 이외에도 資源確保型 및 技術習得型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

난다. 생산거점형 해외직접투자는 기본적으로 악화된 국내기업환경으로 인한 國際價格競爭力을 회복하기 위한 生存戰略의 一環으로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이 중국과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나타나고 있다. 국내 產業空洞化와 관련하여 이 같은 제조업의 해외이전이 우려되고 있으나 만일 이 부문의 해외직접투자가 人爲的으로 규제될 경우 발생될 企業의 倒産 및 이로 인한 失業의 증가 또한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高金利, 高賃金, 高地價, 高物流費 등의 국내의 高費用 構造와 국내시장의 개방에 따른 국내기업의 취약한 사업기반 이외에 해외의 경쟁기업의 世界化趨勢, 그리고 심화되고 있는 地域化로 인한 貿易障壁 등의 국내외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리라고 보여진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기업에 의한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경쟁전략에 의한 현지에서의 生産, 販賣, 研究 등을 통한 세계적인 경쟁력의 획득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와 같은 세계적 경쟁전략 차원의 해외직접투자는 우리나라 경제의 발전단계에 따른 기업의 經營國際化의 進化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이 같은 戰略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고용수준 및 해외직접투자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現 時點에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국내 製造業분야와 輸出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의 산업구조면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후반의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으나 최근 그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성장률 또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 국내의 제조업부문이 위축되고 있다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본다. 특히 제조업 생산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절대규모는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연평균 8.3%의 높은 成長率을 기록하고 있어 산업의 高附加價値化로의 전환이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雇傭水準도 1989년 이후 계속 2%대의 失業率을 유지하고 있는 등 완전고용에 따른 전반적인 노동공급부족 현상을 나타나고 있어 산업공동화로 인한 構造的인 失業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國際比較나 國內投資와의 比較에서도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규모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와 무역과의 관계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아직까지는 陽의 相關關係가 존재하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특히 對開途國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에서는 原·附資材의 輸出誘發效果로 인해 이 같은 관계는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가 아직은 初期段階에 머물고 있어 現地化를 통한 生産要素의 現地調達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현지화가 진행됨에 따른 輸出代替 및 逆輸入 效果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같은 수출감소 효과는 제Ⅳ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마케팅 및 서비스 등의 補完的인 기업활동과 인지도 제고에 따른 同企業의 다른 제품에 대한 현지의 需要創出을 통한 수출증대를 꾀함으로써 상쇄 또는 극복될 수도 있다. 해외직접투자로 인한 수출감소 및 수입증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으로는 국내의 기술과 지식의 고도화를 통한 세계적인 경쟁우위의 확보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한 신제품개발을 통해 해외 및 국내의 수요창출과 수입의 대체를 통한 수출증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推進方向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經營國際化의 進化(제Ⅲ장 참조)에 따르면 국제화 초기에는 本國 中心으로 수출에 주력을 하며 두번째 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국제화 단계로서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여 수출에 주력하는 輸出指向的 투자와 기업활동의 많은 부분을 해외로 분산·조정함으로써 現地化를 도모하는 2가지 방향의 국제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세번째 단계에서는 技術移轉 등을 통한 標準化를 통해 현지생산이 본격

화되며 마지막 단계는 세계화 전략에 따른 財務, 人事, 連結構造 등 組織文化의 세계적인 공유를 추구하는 가운데 국내 및 현지의 研究開發, 生産, 販賣 등 현지의 수요에 부합되는 현지화를 이루는 것이다.

최근까지도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대부분은 市場確保와 生産據點의 移轉을 목적으로 하는 제2단계의 국제화에 해당하고 있으며 소수기업에 의해서만이 세계적 경쟁우위 획득을 목표로 하는 현지생산 및 연구개발과 경영의 현지화가 추진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아와 미국에 대한 진출이 총투자잔액의 80%를 조금 미달하는 수준이며 이와 같은 지역에 대한 투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 같은 투자의 편중현상은 특히 중국 등 대개도국에 대한 同種企業들의 동시진출에 따른 과당경쟁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양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관찰되고 있는 일본의 성공사례를 교훈으로 하여 시장잠재력 등을 고려한 시장의 선점을 위한 타지역에 대한 투자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제 2장의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업종별 투자현황부문에서도 나타나듯이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부문 중에서도 섬유·의복, 1차금속 및 조립금속 등 노동집약적 소규모투자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가 많은 경우에 있어 국내 생산비용의 증가 및 무역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즉, 국내외 경제환경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세계적인 경영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각 분야에서의 세계적 경쟁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이 따라야 한다.

다음은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부문의 추진방향을 주요산업별로 정리하였다.

1) 電子部門

우리나라의 電子産業은 종전의 간단한 노동집약적인 組立工程을 벗어나 현지에서의 부품조달 및 기술이전을 통한 大量生産體制에 들어갔으며, 최근에는 대형투자 및 현지경영에 중점을 두는 국제화의 최종단계인 세계화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3년부터 현지생산의 규모를 확대해 나아가고 있으며 현지인력에 의한 현지기업의 운영과 지역별 중심의 경영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이 부분에서는 대기업을 주축으로 하여 현지에 연구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尖端技術의 획득을 위한 기존기업의引受를 도모하고 있다.

전기·전자부문에 우리기업의 전략은 종전의 중저가제품의 이미지에서 탈피하여 개발도상국의 제품과 차별될 수 있는 제품의 高級化 및 각기 다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差別化를 이룸으로써 해외시장의 입지를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에서의 核心技術開發을 통한 핵심부문의 국산화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기술의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해외의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기술 및 제품의 수명이 점점 단축되고 있는 情報通信 부문에서의 경쟁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해서는 해외의 선도기업들과의 戰略的 提携(strategic alliance)를 적극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

2) 一般機械

우리나라의 機械工業部門은 1990년대에 들어와 국내의 中小企業들간의 자율적 協力體制가 형성되어 자체기술에 의한 고유모델의 개발을 통한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기업간의 出血輸出을 자제하고 자체적인 상표로 수출을 주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국내기업들의 제품의 품질 및 성능을 개량하며 국산부품의 개발을 통한 제품의 완전국산화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 등의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도

모하여야 하며 이는 일본기업의 투자유치와 기술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전국경제인협회는 2000년까지 투자를 통한 機械類, 部品, 素材에 대한 단기간의 國產化와 競爭力 確保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산화추진전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를 통한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長期的으로는 技術과 知識의 축적을 토대로 기업간의 連結構造를 형성하여 공동학습 및 분업을 통한 세계적인 기술혁신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전망된다.

3) 鐵鋼

노후설비의 개체와 自動化投資의 확대에 의한 原價節減의 노력이 필요하다 고 보며 최근 철강부문의 수출가격의 하락에 의한 국내기술의 개발이 지연된 新鋼種의 개발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高級鋼 및 特殊鋼의 생산비중의 제고도 고려하여 개발도상국의 제품과의 차별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4) 自動車

우리나라 자동차부문의 해외직접투자는 국제화의 제2단계에 이미 접어들어 해외에서의 組立工程을 통한 輸出指向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최근에 개발된 우리나라의 중·소형차는 동종의 해외 경쟁차종 중에서는 중·상위권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部品不良率이 해외제품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부품의 품질개선이 요구되며 부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제품의 標準化와 規格化를 제고하는 부품업체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계의 지역화에 따른 관세장벽의 회피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부품에 대한 國內調達比率을 초과하여야 하는 부담이 따르게 된다. 이를 극복하고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해서는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별 部品物流센터의 확보 이외에도 부

품업체를 동반한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5) 石油化學

석유화학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기업간의 在庫解消를 위한 價格下落 등의 出血競爭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가격경쟁을 통한 단기적인 수출확대보다는 장기적으로 수요자관리체제를 구축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 부문의 對日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국내기술의 개발을 촉진하여야 하며 동남아와 중국에 선점하고 있는 일본기업과의 경쟁력을 배양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6) 纖維

최근의 우리나라의 纖維産業은 제품의 高級化를 통한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중저가 섬유류가 경쟁력을 상실하여 해외로 이전됨에 따라 국내의 섬유부문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섬유수출을 주도하던 화섬업계의 중저급 제품의 생산은 합작투자나 설비수출을 통해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국내의 섬유산업은 신소재개발을 통한 섬유산업의 구조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이들 기업들이 종합화학업체로 변신하기 위해 비섬유부문(석유화학, 정밀화학, 의약)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등 제품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산업내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섬유산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의 방향은 현지화가 진행됨에 따라 공정기술의 향상과 마케팅의 강화를 통한 국내자체 상표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지의 수요에 맞는 지역별 차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동시에 소재에서 의류에 이르는 전부분에 걸친 연결망을 구축하여 종합시스템형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을 통한 세계경쟁 우위의 획득을 목표로 하여야 할 것이다.

IX. 政策的 示唆點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政策은 外國換 管理의 次元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정부는 해외직접투자를 産業構造調整, 輸出增大 및 技術振興 등 産業政策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許可段階부터 많은 제약이 주어져 왔으며 이와 관련된 각종 支援制度 또한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世界의 經濟秩序 및 環境의 변화에 따른 自由化 趨勢는 해외직접투자 부분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정책은 段階的으로 자유화를 확대해 나갔으며, 특히 WTO의 出帆과 최근 確定된 OECD 加入으로 인해 이 부분의 자유화는 더욱 加速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의 業種에 대한 規制政策은 初期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轉換하여 制限事業을 列舉·規定하는 등 투자부문의 업종에 대한 제한규정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1993년 이후 이를 段階的으로 축소하여 1996년 6월에는 海外不動產 투자의 자유화를 통해 드디어 海外直接投資의 業種에 대한 自由化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申告受理對象도 持續的으로 확대하여 대부분의 경우 투자규모가 5천만 달러 이하일 때에는 申告受理로 許可를 대신하며, 1천만달러 이하의 투자는 外國換銀行의 認證을 받음으로써 해외직접투자 許可를 갈음하게 되는 등 許可節次가 대폭 單純化 되었다. 이와 같은 許可節次의 簡素化는 해외진출 희망기업들의 보다 신속한 현지진출을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改善되어 왔다. 그러나 全面的인 完全申告制 실시가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진정한 의미의 해외직접투자 자유화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최근 多樣化되고 있는 海外直接投資의 方法을 고려하

여 해외직접투자시 20%로 규정된 最小持分所有要件의 緩和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대부분 先進國의 경우도 OECD 規程에 따라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最小所有持分을 10% 이상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에 정부가 無分別한 해외직접투자를 制限하고 해외투자기업의 財務構造를 健實化하려는 補完的 차원에서 自己資金 調達義務 및 支給保證 制限措置를 도입하였으나 전반적인 國內企業들의 열악한 財務構造의 현실과 海外의 저렴한 金融費用을 고려하면 정책의 도입취지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財務構造 提高의 實效성과 海外直接投資의 減少效果가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疑問이 提起되며, 정부는 根本的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內部金融을 통한 資金調達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본다. 특히 海外의 現地金融을 이용하는 기업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信用도가 높으며 財務構造가 열악하고 零細한 中小企業의 경우는 現地金融을 이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現地金融을 통한 資金調達は 국내자본에 대한 驅逐效果도 수반하지 않고 있으므로 母企業의 支給保證에 의한 現地金融의 制限措置의 再檢討가 필요하다고 본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事後管理의 경우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접투자와 自由化의 현실을 반영하여 事後報告에 대한 簡素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투자의 實行與否와 企業의 健全性 誘導 및 投資資產의 海外逃避防止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및 支援政策의 基本方向은 海外進出 企業이 각자의 利潤動機에 따라 自律的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도록 制度를 自由化하며 이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급증으로 인해 國民經濟 全般에 미칠 수 있는 否定的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政府는 既存의 直接規制方式이라는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관련 제도를 자유화하며 부분별한 해외진출에서 오는 企業들간의 過當競爭 등에서 오는 副作用을 줄일 수 있도록 海外投資關聯 情報의 제공과 事後管理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우려되고 있

는 國內의 産業空洞化 현상은 現 時點에서는 우려할 정도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향후 해외직접투자의 現地化가 진행됨에 따른 可能性에 대비하여 國內投資環境의 改善과 積極的인 外國人投資의 留置를 통해 産業構造調整의 高度化를 이룸으로써 克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Ⅶ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각종 租稅支援制度가 마련되어 있으나 많은 경우 형식에 치우쳐 그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海外投資 活性化에 커다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改善策으로는 현실에 입각하여 準備金이나 控除 등의 比率를 業種別·地域別 등으로 差等化하는 동시에 損金算入期間의 延長 및 外國納付稅額 前期移越控除의 導入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각 분류에 따른 國內源泉所得과 國外源泉所得의 判定基準을 명확히 하여 내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국외원천소득을 결정하는 데 혼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행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은 投資地域이나 業種에 관계없이 투자금액의 20%씩 一律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이를 投資獎勵 地域과 業種別로 差等化하여 지원함에 따라 無分別한 해외진출에서 오는 國內産業의 空洞化 현상을 줄이는 한편 海外의 尖端技術을 習得하는 데 차등지원함으로써 국내기술의 고도화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外國納付稅額의 控除時期는 현행 次期 5년에서 漸進적으로 延長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사업초기에 상당기간 동안 赤字를 유지하는 다수 中小企業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外國納付稅額의 前期移越控除의 導入도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缺損 比重이 큰 中小企業의 財務構造 改善效果뿐만 아니라 이미 外國納付稅額의 前期 및 次期移越控除 혜택을 받고 있는 外國企業과의 競爭 및 衡平의 차원에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間接外國納付稅額 控除制度가 도입되어 우리나라 母企業은 海外子會社로부터 송금받는 配當에 대한 外國納付稅額을 控除받게 되어 海外進出 形態(海外子會社 또는 海外支店)에 따른 稅制上的 不公平성이

해소되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해외의 자회사 설립을 통한 現地化가 본격화됨에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節稅 또는 租稅回避의 목적으로 해외현지법인 설립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서 間接外國稅額控除 對象要件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連結稅務申告가 義務化되어 있지 않아 국내 實效稅率이 외국의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현지에서 果實을 과다하게 留保시킴으로써 국내에 납부할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한다. 최근 이에 대한 하나의 방지책으로 海外現地法人의 現地負擔額이 실제소득의 15% 이하인 지역에 本店을 두는 경우는 配當與否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課稅할 수 있는 근거로 租稅避難處에 대한 대책을 채택하였다. 이밖에도 이에 대한 또하나의 방지책으로 受動的 所得 등의 特定所得에 대한 課稅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特定所得에 대한 租稅回避 防止策은 美國을 포함한 일부 先進國에서는 이미 施行하고 있다. 해외투자의 급증으로 인한 과다한 外貨流出과 租稅回避를 防止하기 위한 補完措置로 이와 같은 방안의 도입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외에 관련 조세부문에서의 정부의 역할로는 二重課稅防止 協定國의 範圍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기업들의 불필요한 稅負擔을 줄이고 투자지역에 상관없이 조세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를 위한 금융지원제도는 無償支援이 아닌 資金의 貸出이나 融資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대부분이 資金貸出 및 融資條件으로 國內擔保를 요구하고 있으며 中小企業의 信用保證基金을 통한 融資時에는 매년 融資殘額에 대한 一定比率의 追加費用을 부담해야 한다. 擔保 및 現地資金調達 능력이 없어 資金支援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海外進出 中小企業들에게 이와 같은 金融支援制度는 별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擔保能力이 열악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제도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해서는 企業의 收益性이나 事業性에 근거를 두는 信用保證을 위한 基金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信用貸出基金의 構築과 連繫

하여 실효성면에서 有名無實한 韓國輸出入銀行의 對外經濟協力基金을 비롯한 각종 海外投資關聯 基金을 統合·運營하는 보다 效率的인 資金支援 方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現行 金融支援의 또 다른 問題點은 資金貸出 및 融資條件이 投資業種이나 地域別로 전혀 差等化가 되어 있지 않아 特定業種이나 地域에 대한 투자를 도모하는 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特定業種이나 地域에 대한 投資促進 方案으로 金融支援을 差等化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貸出金利와 貸出比率 또는 貸出限도와 償還期間을 業種別 및 地域別로 差等化하여 海外投資를 보다 效率的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밖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로는 投資保障關聯 支援制度和 情報支援制度가 있으나 이들 지원제도의 實效性도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投資保障關聯 지원제도에는 海外投資保險制度和 海外投資保障協定이 있는데 제Ⅶ장에서도 살펴보았듯이 投資保險의 引受實績은 매우 저조하며 이와 관련된 保險金 支給도 全無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中國이나 開途國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危險負擔을 많이 안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이 지역의 해외투자 失敗事例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海外投資保險制度의 再整備를 통해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기업들을 보험가입기업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보험대상의 범위를 投資元金과 利子 및 配當에서 現地借入에 대한 債務保證까지로 확대함과 동시에 非常危險 외에 信用危險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더 나아가 保險率을 引下·調整하여 보험에 가입하기를 꺼리는 中小企業이나 製造業 분야의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보험가입대상에 포함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海外投資保障協定 締結國의 範圍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시 투자의 收用이나 紛爭으로 인한 위험을 政府次元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海外投資情報支援制度는 여러 相關기관에서 諸般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一般的인 정보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特定地域이나 業種에 대한 細部的인 투자정보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相關 기관들간의 보다 원활한 情報交換과 신속한 情報蒐集, 그리고 體系的인 정보의 整理 및 提供을 도모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정보 지원의 한가지 방안으로 海外投資情報의 ONE-STOP 서비스 支援體制의 構築을 들 수 있다. 이 방안은 국내 相關기관에 분산된 인력과 재원을 한 곳에 집중시켜 그 효율성을 提高함으로써 해외투자결정에 직접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김남두, 『韓美間 直接投資의 構造와 投資環境의 變化』,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김시중,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幼稚와 韓國의 進出展望』,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 『海外直接投資의 評價와 政策課題』,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6. 6.
- 김시중·민충기·유재원,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2. 9.
- 김용렬, 「海外投資 國際措置의 得과 失」, 『KIET 實物經濟』, 產業研究院, 1995. 9. 13.
- 김준동, 『글로벌화 시대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12.
- 대한상공회의소, 『海外進出企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 研究』, 1987. 12.
- 민충기,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1.
- 배종열, 『國際收支赤字時代의 海外投資政策方案』, 韓國輸出入銀行, 1992. 11.
- 서상록,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的 戰略』,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0.
- 안응호, 『우리나라 製造業의 海外投資 現況과 運營實態』, 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研究所, 1992.
- 윤건영·임주영, 『租稅支援制度의 現況과 改善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3.

- 이용우, 「海外直接投資의 戰略的 性格과 方向」, 『企業經濟』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6. 9.
- 이원호·박종훈, 「AFTA 結成과 投資進出 戰略」, 『企業經濟』現代經濟社會研究院, 1996. 9.
- 이인표, 「高金利의 原因과 對策」, 『재정포럼』, 韓國租稅研究院, 1996. 11.
- 이흥구, 『外國人直接投資와 投資政策』, 韓國開發研究院, 1994. 12.
- 임천석, 『엔高하에서의 日本企業의 對應實態와 示唆點:對아시아 直接投資를 中心으로』,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994. 12.
- 財務部, 『財政金融統計』, 1994. 5~6.
- 財政經濟院, 「'96 上半期中 海外直接投資 動向」, 1996. 8.
- _____, 『月刊 經濟動向』, 1996년 各號.
- _____, 「二重課稅 防止協約 締結現況」, 1996. 5.
- _____, 『財政金融統計』, 1996. 1~2, 5~6, 7~8.
- _____, 「投資保障協定 締結國 現況」, 1996. 5.
- 조영삼, 『中小企業 海外直接投資의 構造와 成果』, 產業研究院, 1995. 9.
- 韓國貿易協會·產業研究院, 『製造業 海外直接投資의 效率化 方案』, 1993.
- 韓國輸出入銀行, 「우리나라 中小企業의 最近 海外投資 動向과 戰略」, 『수은조사월보』, 제13권, 1994. 5.
- _____, 「日本の 海外直接投資 自由化와 우리나라의 自由化 與件」, 『수은조사월보』, 제11권, 제4호, 1992.
- _____,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 支援制度』
- 韓國銀行, 『海外投資事業 成果分析 報告書』
- _____, 『海外投資 統計年報』, 各號.
- 韓國銀行 外換管理部,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制度』, 1994. 10.
- _____, 『海外投資 現地法人 現況』, 1994.
- 日本 勞動省, 『海外勞動白書』, 1994.
- 日本 通產省, 「日本企業의 海外事業活動」, 1995.

- Aliber, R., "A Theory of Direct Foreign Investment," C. Kindleberger(ed.), *The International Corporation*, Cambridge, MA.: MIT Press, 1970.
- Brewer, 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Patterns, Policies and Prospects*, Washington, D.C.: World Bank PRE Working Paper No. 712, June 1992.
- Buckley, P.J and M. Casson, *The Future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Macmillan, 1976.
- _____(eds.),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5.
- Cantwell, J. A., "The technological competence theory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its application to international production," D.G. McFetridge (ed.), *Foreign Investment Technology and Growth*, Calgary: University of Calgary Press, 1992.
- Caves, R. E., *Multinational Enterprise and Economic Analysi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 Contractor, F.J., "Ownership Patterns of US Joint Ventures abroad and the Liberalization of Foreign Government Regulation in the 1980s: Evidence from the Benchmark Survey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1, 1988, pp. 55~73.
- Culem, C., "The locational determinants of direct investment among industrialized countries," *European Economic Review*, Vol. 32, 1988, pp. 885~904.
- Dunning, J.H., "T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J. Dunning(ed.),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the*

-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76.
- , “Explain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Japan: Some theoretical insights,” N. Yoshitomi and E. Graham (ed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Japan*, Vermont: Edward Elgar Publishing Co., 1996.
- Dunning, J.H. and R. Narula, “Transpacific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investment development path: the record assessed,”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Essays in International Business*, No. 10, pp. 1~69, May 1994.
- Eaton, J. and A. Tamura, “Bilateralism and Regionalism in Japanese and U.S. Trade and Direct Foreign Investment Patterns,” NBER Working Paper No. 4758, 1994.
- Froot, K.A. (ed.), *Foreign Direct Investment*, NBER, Chicago and Lond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Giddy, I. and S. Young, “Conventional Theory and Unconventional Multinationals,” M. Rugman(ed.), *New Theor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Croom Helm, 1982.
- Grubert, H. and J. Mutti, “Taxes, Tariffs and Transfer Pricing in Multinational Corporation Decision Taking,”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3, 1991, pp. 285~93.
- Guisinger, S.E. and D.W. Loree, “Policy Inducements to FDI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6, 1995, pp. 281~300.
- Hennart, J.F. and Y.R. Park, “Location, Governance and Strategic Determinants of Japanese Manufacturing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Vol. 15, 1994, pp. 419~36.

- Horst, T., "The Industrial Composition of US Exports and Subsidiary Sales to the Canadian Market,"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2, 1972, pp. 37~45.
- Hymer, S.H.,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Ph.D. theses, MIT: Published by MIT Press(also published under same title in 1976), 1960.
- , *The International Operations of National Firms: A Study of Direct Investment*, Cambridge, MA: MIT Press, 1976.
- Kogut, B. and A. Singh, "The Effect of National Culture on the Choice of Entry Mode,"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19, 1988, pp. 411~32.
- Kojima, K., "A Macroeconomic Approach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Hitotsubashi Journal of Economics*, Vol. 14, No. 1, June 1973.
- , *Direct Foreign Investment: A Japanese Model of Multinational Business Operations*, London: Croom Helm, 1978.
- Li, J. and S.E. Guisinger, "The Globalization of Service Multinationals in the 'Triad' Nations: Japan, Europe and North America,"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23, 1992, pp. 675~96.
- Lipsey, R. and M.Y. Weiss,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in Manufacturing Industri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3, 1981, pp. 488~99.
- , "Foreign Production and Exports of Individual Firm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6, 1984, pp. 304~8.

- Nelson, R.R. and S.G. Winter, *An Evolutionary Theory of Economic Chang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82.
- OECD, *Financial Market Trends*, No. 64, June 1996.
- O'Sullivan, P.J., "An Assessment of Ireland's Export-Led Growth Strategy via Foreign Direct Investment: 1960~1980," *Weltwirtschaftliches Archiv*, 1993.
- Porter, M.E., *Competition in Global Industries*, Cambridge: Harvard Business School, 1986.
- , *Competitive Advantage*, New York: The Free Press, 1985.
- , *The Competitive Advantage of Nations*, New York: The Free Press, 1990.
- Root, F.R. and A.A. Ahmed, "The Influence of Policy Instruments on Manufacturing Direct Foreign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Vol. 9, Winter 1978, pp. 81~93.
- Rugman, A.M., "New Theories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n Assessment of Internalization Theory," *Bulletin of Economic Research*, Vol. 38, 1986, pp. 101~118.
- Ryou, Jai-Won, "Korea's Outward Direct Investment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Asia Pacific," 1995,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Cooperation in the Pacific Basin U.C. Berkeley, CA: June 29~30, 1995.
- Safarian, A.E.,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Public Policy*, Aldershot, UK and Vermont: Edward Elgar, 1993.
- Shah, A. and J. Slemrod, *Tax Sensitivity of Foreign Direct In-*

- vestment: An Empirical Assessment*,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PRE Working Paper, June 1990.
- Toece, D. J., "Transaction Cost Economic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An Assessment," *Journal of Economic Behavior and Organization*, No. 7, 1986.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1993, 1994, 1995.
-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ernational T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66, pp. 190~207.
- , "Th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J. Donning(ed.), *Economic Analysis and Multinational Enterprise*,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1974.
- Wallace, C.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1990's: A New Climate in the Third World*, Dordrecht, Boston and London, Martinus Nijhoff, 1990.
- Wang, Lianshe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 Review of Trade-Theoretic," *Memorandum*, 26, University of Oslo, 1992.
- Wells, L., "The Internationalization of Firms from Developing Countries," T. Agmon and C. Kindleberger(eds.), *Multinationals from Small Countries*, 1979.
- Wheeler, K. and A. Mody,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Location Decisions: the case of US firm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33, 1992, pp. 57~76.
- Yamawaki, H., "Location Decisions of Japanese Multinational Firms in European Manufacturing Industries," K. Hughes (ed.), *European Competitivene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 “Entry Patterns of Japanese Multinationals in US and European Manufacturing,” M. Mason and D. Encarnation (eds.), *Does Ownership Matter?*, Oxford: Clarendon Press, 1994.

〈附表 1〉 最近의 主要 大規模 海外直接投資(1995년 이후)

(單位: 百萬달러)

	투자지역	허가금액	사 업 명	비 고
현 대 자 동 차	인 도	282	자동차 및 부품생산	신규
현 대 중 공 업	미 국	150	반도체제조 및 판매	증액
대 우	중 국	90	부동산임대·숙박업	신규
대 우	영 국	54	자동차 및 부품판매	증액
한 솔 제 지	인도네시아	50	신문용지생산	신규
봉 산	미 국	50	동 및 통합금제조	증액
현 대 전 자 산 업	중 국	50	hard disk생산	신규
오 리 온 전 기	멕시코	50	칼라브라운관생산	신규
유 개 공	영 국	50	천연가스생산	신규
S K C	미 국	42	pet film제조	신규
성 원 건 설	베트남	42	건설·부동산임대	신규
금 호 건 설	베트남	41	부동산개발	신규
동 양 화 학 공 업	미 국	40	화학제품판매	증액
현 대 건 설	중 국	40	사무실·상가건설	신규
포 철	브라질	38	제철 생산	증액
삼 성 전 자	싱가포르	35	무역·건설·서비스	증액
삼 성 전 자	영 국	35	메모리칩 판매	증액
엘 지 전 자	브라질	34	PC모니터 제조	신규
금 성 전 선	말레이시아	31	자석코일 생산	증액
삼 성 전 자	중 국	30	전자제품도소매	신규
대 우	라오스	30	수력발전소 건설	신규
엘 지 정보통신	미 국	30	기술개발	증액

資料: 재정경제원 국제투자과, 1996. 8.

〈附表 2〉 우리나라의 年度別 · 投資規模別 海外投資 現況

(單位: 件, 千달러)

	1,000 이하		1,0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건
1968~77	327	31,606	14	22,615	19	74,667	6	42,082	0	0	366	170,970	467
1978	208	25,283	9	13,538	7	26,616	5	35,140	1	10,543	230	111,120	483
1979	244	33,559	14	19,697	7	23,250	6	40,468	1	10,543	272	127,517	469
1980	253	37,507	19	26,128	8	25,736	6	40,398	1	10,543	287	140,312	489
1981	290	51,438	19	26,930	7	23,258	8	56,936	1	10,543	325	169,105	520
1982	313	61,725	19	26,323	13	44,675	7	46,936	4	86,957	356	266,616	749
1983	346	67,137	22	29,821	15	52,321	11	73,603	6	146,126	400	369,208	923
1984	368	74,429	31	43,197	16	54,439	11	73,805	7	171,521	433	417,391	964
1985	372	78,978	33	46,918	19	60,504	13	88,746	6	208,785	443	483,931	1,032
1986	393	88,791	34	47,977	26	82,495	12	81,606	11	344,246	476	645,115	1,355
1987	437	101,657	44	61,611	31	98,885	13	83,601	11	620,258	536	966,012	1,802
1988	558	154,127	47	64,853	46	153,745	16	104,785	13	652,598	680	1,130,108	1,662
1989	719	220,950	96	134,986	69	225,929	24	159,059	18	781,571	926	1,522,495	1,644
1990	908	292,698	163	240,092	107	345,200	32	231,681	33	1,217,009	1,243	2,335,680	1,879
1991	1,200	395,874	224	331,856	151	498,230	50	354,970	48	1,791,974	1,673	3,372,904	2,016
1992	1,526	504,712	282	420,257	200	651,499	64	452,224	66	2,477,940	2,138	4,506,632	2,108
1993	1,995	639,337	360	534,900	245	806,279	71	508,874	85	3,088,922	2,756	5,578,312	2,024
1994	2,005	606,792	322	475,584	211	694,320	60	437,690	54	1,976,715	2,652	4,191,101	1,580
1995	4,055	1,136,273	560	825,041	398	1,300,680	147	1,076,077	166	5,886,928	5,326	10,224,999	1,920

註: 투자기준.

資料: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해외투자통계연보』, 각 연도.

〈附表 3〉 우리나라의 地域別 · 投資比率別 海外投資 現況

(單位: 件, 千달러)

	20% 미만		20~50% 미만		50%		51~100% 미만		100%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건
아 시 아	62	58,035	725	509,752	377	449,608	922	1,543,954	1,716	2,013,148	3,802	4,574,497	1,203
중 동	2	12,778	21	81,764	5	2,484	4	4,010	3	1,698	35	102,734	2,935
북 미	47	246,655	68	226,997	31	36,593	91	459,497	517	2,181,913	754	3,151,655	4,180
중 남 미	7	21,405	28	26,999	15	23,922	32	34,327	151	229,858	233	336,511	1,444
유 럽	11	14,722	37	62,519	47	163,082	43	354,508	175	949,552	313	1,544,383	4,934
아프리카	1	20,336	9	99,692	9	11,250	10	67,418	22	67,213	51	265,909	5,213
대 양 주	1	681	10	4,246	16	8,660	15	6,627	96	229,696	138	249,310	1,807
계	131	374,612	898	1,011,909	500	695,299	1,117	2,470,341	2,680	5,672,478	5,326	10,224,999	1,580

註: 투자기준.

資料: 한국은행 외환업무부, 『해외투자통계연보』, 1996.

〈附表 4〉 外國支店과 外國子會社의 租稅負擔 比較

	외국지점 형태	외국자회사 형태	
		간접공제 허용	간접공제 불허
세전국외소득	100	100	100
외국법인세①	30	30	30
세후국외소득	70	70	70
이익송금 또는 배당	70	배당 70	배당 70
배당원천세액②	0	7	7
세후 수취액③	70	63	63
거주지국 과세소득	③ + ① = 100	③+①+②= 100	③ + ② = 70
산출세액	50	50	35
외국세액 공제액④	① 30	① + ② = 37	② 7
차감납부세액⑤	50 - ④ = 20	50 - ④ = 13	35 - ② = 28
실질세부담	① + ⑤ = 50	①+②+⑤= 50	①+②+⑤= 65

資料: 손원익, 「이중과세방지제도: 외국세액공제제도를 중심으로」, 내부자료, 한국조세연구원, 1994.

〈附表 5〉 外國納付稅額 控除限度額 算出方式

국가별	외국 납부세액	국별소득	기준외국 원천소득	세액공제한도액	비고
A국	100	500	$500 - (600 \times 500 / 1,000) = 200$	$120 \times (200 / 400) = 60$	산출세액 120
B국	0	-600			
C국	60	300	$300 - (600 \times 300 / 1,000) = 120$	$120 \times (120 / 400) = 36$	
국내	-	200			
계	160	-600 1,000	320	96	

〈일괄한도액 산출식〉

(전외국으로부터의 외국원천과세소득 ÷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총과세소득) × 국내세율 = 세액공제 한도

〈국가별 한도액 산출식〉

(각국으로부터의 외국원천과세소득 ÷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과세소득) × 국내세율 = 세액공제 한도

국외사업장이 2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이때 어느 국가의 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기준국의 원천소득금액계산은 각 국별소득금액에서 결손금액을 총소득금액에 대한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附錄 1〉 海外直接投資 關聯法規

1. 外國換管理規定

제 10 장 자본거래

제 9 절 부동산거래

제 2 관 해외장기채재자의 거주용주택 취득

제 10-92 조의 2(해외장기채재자의 범위 등) ① 외국인거주자 및 외국의 영주권 또는 외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한 재외국민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해외장기채재자’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대금(이하 ‘취득대금’이라 한다)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할 수 있다.

1. 상용 및 공무 목적으로 외국에 2년 이상 체재하고자 하는 거주자
2. 제1호와 동일한 목적으로 이미 출국한 자로서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자 하는 비거주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자와 규정 제2-24조 또는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장기채재자의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한 명목으로 해외지사의 설치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제 10-92 조의 3(지급한도) ① 해외장기채재자가 제10-92조의 2의 규정

에 의하여 해외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미화 50만달러 이하의 해외 주택 취득을 위해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미화 30만달러를 (1주택에 한한다)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2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지 정착비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 소요비용에서 당해 현지정착비를 차감하여야 한다.

제 10-92 조의 4 (지급절차) ① 해외장기채재자가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의 외국환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 해외주택 취득대금을 송금하여야 한다.

② 해외장기채재자가 해외주택취득을 위해 대외지급수단을 해외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1호의 지급(변경)허가신청(신고)서, 현지공관장 등이 확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 해외장기채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기타 실제 소요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10-92 조의 5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확인) ① 제10-9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장기채재자가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은 제6-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해외장기채재자의 해외여행경비 등의 지급을 위하여 지정하는 외국환은행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지사에 근무하는 해외장기채재자의 경우에는 제10-92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외국환은행이 제6-22조, 제2-24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외국환은행과 동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에 대하여는 당해 거래 외국환은행장이 확인한다.

③ 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지정된 거래외국환은행장은 당해 해외장기채재자가 소속된 해외지사를 설치한 거주자가 제2-24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부동산의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한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0-92 조의 6 (사후관리 및 보고) ① 제10-92조 4의 규정에 의하여 해

외주택 취득대금을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한 해외장기채재자는 해외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외 체재중에 당초 취득한 해외주택을 매각하고 다른 해외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다.

②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6개월마다 이 관에 의하여 해외로 지급한 해외주택 취득대금이 인정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 및 당해 해외장기채재자의 귀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해외주택 대금 지급 및 해외주택 매각대금 회수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은 송금액의 합계가 미화 10만달러를 초과하여 구입한 해외주택에 대해서는 그 취득 및 변동상황 등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0-92조의 7(해외주택의 매각 및 매각대금의 회수) ① 제10-92조의 3의 규정에 의해 해외주택을 취득한 해외장기채재자가 귀국하여 거주자로 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외주택을 처분하고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필요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제1-2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1. 해외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국후 3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해외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3년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외주택을 취득한 해외장기채재자가 해외체재중에 당초 취득한 해외주택을 매각하고 3개월 이내에 다른 해외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에서 세금 등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잔액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주택 매각대금을 국내로 회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장 해외직접투자

제 1 절 통 칙

제 12-1 조(적용범위) 거주자가 법 제3조 제1항 제15호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2 조(해외직접투자의 정의) 이 장에서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거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2.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의 대여
3.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영업소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의 지급
4. 외국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업을 경영하거나 일정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

제 12-3 조(적용규정)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여 이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1. 거주자가 제12-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투자하는 경우는 이 장 제2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2. 거주자가 제12-2조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금융·보험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이 장 제3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거주자가 제12-2조 제3호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14장 제1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이 외국에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제12-2조 제1호 또는 제3호의 방법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제2장 제5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절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제 12-4 조(해외직접투자의 요건) ①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12-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금융기관의 규제대상이 되는 불량거래처
2. 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② 제12-2조 제1호의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장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그 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및 공동으로 투자하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및 공동으로 투자하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합산한다)
2. 투자비율이 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미만으로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 가. 임원의 파견

나. 1년 이상에 걸친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중요한 제조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3. 거주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③ 제12-2조 제2호의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로서 당해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제12-2조 제4호의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거나 거주자가 외

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조사단계는 제외), 기술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제 12-4 조의 2(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①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②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달러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00만달러)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③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까지 투자한 이후에는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투자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증액투자할 수 있다.

④ 개인유사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및 골프장 운영업(이하 '부동산관련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2-5 조(해외직접투자의 지원 등) 재정경제원장관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 국제수지, 대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유형, 업종 또는 지역 등에 따라 투자 및 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거나 우대하게 할 수 있다.

제 12-6 조(해외직접투자의 자율규제 등) ① 해외직접투자가 특정업종 또는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국내기업간 과당경쟁이나 국내산업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협회·현지 진출 기업협의회 등이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 또는 협의를 거쳐 이를 관련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율규제하도록 하거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2-7 조(해외직접투자의 허가 등) ① 거주자가 금융·보험업 및 부동

산관련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신청일로부터 향후 최소 1년간 당해 사업에 투자할 금액을 포함한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미화 1천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5천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제2호 전단위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5천만달러 이하인 경우로서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금융지원 받은 때에는 각각 한국수출입은행장 또는 그 외국환은행본점(외국은행의 경우는 대표지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동 규정의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본호의 정하는 바에 의해 타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 등을 받은 투자사업에 대해 증액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제2호 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금융지원 받은 때에는 각각 한국산업은행총재(본점)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본점)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동 규정의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
5.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신고한 사업에 대해 미화 1천만달러 이하의 증액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기관에 속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자체 이익유보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사업에 대해 제 12-15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포괄사후관리담당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증액투자 금액이 미화 1만달러 이하이고

거주자가 최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7.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투자한 현지법인의 자채이익유보금에 의한 증액투자로서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부동산관련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 이하인 때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한국은행총재, 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를 포괄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계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 등에서 그 추진을 결정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거주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이 거주자의 증액투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건별 미화 5백만달러를 초과하는 건축물 자영건설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 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와 현지법인의 자회사설립 및 자회사의 손회사설립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허가하였거나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기관'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초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투자사업목적 또는 투자대상국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허가기관이 있는 경우 현지법인명 변경, 자회사설립 등의 공통적인 사항의 내용변경은 제12-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포괄사후관리담당기관이 담당한다.

⑥ 거주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외화채무증서를 할인매입하고 동 채무상환에 대체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허가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허가·신고수리에 포함하여 외화채무증서의 매입에 대한 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⑦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1호 서식의 해외직접투자허가신청(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하인 경우(부동산관련업의 경우에는 제외)에는 투자개요서로 갈음
2. 기타 허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국별 신용도가 A등급인 국가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허가신청한 경우로서 허가기관의 별도조치 없이 15일이 경과한 때에는 15일이 경과한 날에 당해 허가신청이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 12-8조(투자사업의 심사 등) ① 허가기관은 해외직접투자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영·이 규정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의 적합여부
2. 사업계획의 타당성
3.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② 허가기관은 해외직접투자의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 동 투자사업의 주무부처 현상공관 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제 12-9조(허가조건 등) ① 허가기관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허가에 있어서 자금조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허가기관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법 제21조 및 영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투자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12-10 조(해외투자심의위원회) ①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이하 이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해외직접투자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해외직접투자의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대외경제협력업무를 관장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2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2.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제2심의관
3. 한국은행 외환담당이사
4. 주거래은행 담당이사(이상 상임위원)
5. 국가안전기획부 6국장(이하 비상임위원)
6.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7. 농림수산부 국제농업국장
8. 환경부 국제협력관
9.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10. 보건복지부 식품국장
11. 노동부 직업안정국장
12.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장
13. 정보통신부 통신기술심의관

14.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15. 산림청 임업정책국장

16. 수산청 어업진흥관

17. 해운항만청 해운국장

18. 한국산업은행 국제담당 부총재보

1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 담당이사

20. 기타 당해사업 주무부처(또는 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③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의 심의에는 위원장, 전체 상임위원, 당해 사업의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의 위원이 참가하며,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달러를 초과하고 미화 1억달러 이하인 사업의 심의에는 위원장, 재정경제원 상임위원, 당해 사업의 주무부처, 한국은행 및 주거래 은행의 위원이 참가한다.

④ 위원회는 투자금액이 미화 1억달러를 초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금조달방법의 적정성, 국내산업에의 영향, 국제수지 및 대외관계에의 영향 등을 통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특정위원을 지명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현지 투자환경 등에 관하여 종합·분석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또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2-11 조(해외직접투자 사전협의를) ① 외국법인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외직접투자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이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미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의 개요가 설명된 서류를 허가기관에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투자업종·투자요건에의 적합여부 등 투자허가 등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예비검토하고 제1항의 입찰 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사전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2-12조(허가 등의 유효기간)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의 허가 등을 받은 날(장기투자를 요하는 해외직접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서 등에 명시된 예정투자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허가 등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 등의 효력은 상실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허가 등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허가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1년(투자금액이 1천만달러를 초과하고 3년 이상 계속투자사업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2-13조(투자금의 회수) 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 허가 등의 조건에 따라 투자 원금과 과실을 현금으로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허가기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 있다.

제 12-14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①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기관(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허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제12-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포괄사후관리담당기관)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천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제12-13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제 12-15조(허가기관의 사후관리) ① 허가기관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하였거나 사전협의한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사업 분석 등에 필요한 관리대장 기록 비치
 2. 허가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3. 해외직접투자의 동향분석
 4. 소속직원에 의한 현지조사
 5. 해외직접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도 및 정보지원
- ② 허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다른 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미화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
 2.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은 금액의 합계가 미화 5천 만달러를 초과하고 해외직접투자자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사업
 3.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사업
 4.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허가 등을 받은 사업
 5.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의 투자
 6. 기타 투자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③ 허가기관은 해외직접투자사업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노동관계법 등 현지국의 법규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허가기관이 있는 경우 결산보고서 징구 등 포괄적인 사후관리 업무는 최초 허가기관이 담당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가 원하는 경우 최초허가기관과 협의하여 포괄적인 사후관리업무 담당기관(이하 '포괄사후관리담당기관'이라 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사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이 증액투자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증액투자허가(신고수리)서 사

본과 증액투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을 포괄사후관리담당기관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⑥ 허가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투신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한 경우와 부동산관련업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한 경우에는 동 허가 등의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16조(현지공관장의 감독 등) ① 현지공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감독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때 그 확인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관할지역 내에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 사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
2. 해외직접투자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등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3. 해외직접투자기업이 해산되거나 투자사업이 청산된 경우 잔여재산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의 여부, 이 경우 필요시 외국환은행 국외점포와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공관의 장은 관할지역 내의 투자사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기업들로 구성된 진출기업 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현지공관의 장에게 투자환경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현지공관의 장은 현지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관련조치 및 투자환경의 변화내용을 수시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17조(보고서 등의 제출) ①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당해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화증권취득보고서(법인설립보고서를 포함) : 허가 등의 유효기간 경과후 6월 이내
2.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한다) : 허가 등의 유효

기간 경과후 6월 이내

3. 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하며 투자원금 및 과실의 영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즉시
4.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는 제외)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다만, 포괄사후관리담당기관은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천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 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5.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청산후 2개월 이내
6.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보고서(부동산관련업의 경우에 한한다) : 회계기간 종료 후 5월 이내
7. 기타 허가기관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② 한국은행총재를 제외한 허가기관은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허가서, 신고수리서 사본 : 즉시
2. 해외직접투자 허가 및 투자실적(월보) : 매 익월 7일 이내
3.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 분기 익월 10일 이내 및 매 익년도 7월 이내

③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직접투자자 및 한국은행총재를 제외한 허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 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 허가 및 투자실적(월보) : 매 익월 10일 이내

2.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분기 익월 15일 이내
및 매 익년도 9월 이내

④ 허가기관은 해외직접투자 허가 등을 한 경우 그 허가서 또는 신고수리서의 사본을 지체없이 현지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해외직접투자기업 현황을 매년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규정한 보고서 중 결산보고서와 청산보고서는 현지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하거나 현지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세무사의 세무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3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대신 소재지 대표자 매출액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한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 12-18 조(해외직접투자지침)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2-5조 및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기타 해외직접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2-19 조(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제재)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제재는 제17-1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 칙

제 6 조(폐지통첩)

1. 해외직접투자 허가 등에 관한 통첩(외투 45750-921, '95.10. 9)
2. 해외직접투자 요건확대에 관한 통첩(해투 45641-193, '94.12.21)

2. 海外直接投資指針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관리규정 제12-18조의 규정에 의거 해외 직접투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등) ①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외국환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외국환관리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금융·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②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기관은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하로서 사업규모가 미화 5백만달러 이내인 해외직접투자사업(외국환관리규정 제12-4조의 2 제4항에 의한 부동산관련업 제외)에 대하여는 이 지침 제6조 제2호, 제7조 내지 제9조의 기준에 의한 심사를 생략하고 개별사항에 대한 관련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기관은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를 초과하고 1천만달러 이하인 해외직접투자사업(외국환관리규정 제12-4조의 2 제4항에 의한 부동산관련업 제외)에 대하여는 이 지침 제6조 제2호 및 제9조의 기준에 의한 심사를 생략하고 이 지침 제9조와 관련된 서류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 2장 일반적 기준

제 3조(투자자)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주의거래처, 황색 거래처, 적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처로 분류된 자가 아닐 것.

다만, 황색거래처 또는 적색거래처에 대한 조치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정관리업체가 기존의 유희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개인인 경우에는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가 아닐 것.

제 4 조(투자상대국) ① 해외직접투자 상대국가는 여권법 시행규칙 제19 조에 따른 특정국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당해국에의 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또는 신고수리)기관은 당해 해외직접투자의 허가(또는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제 5 조(취득대상 부동산) ①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위하여 취득할 수 있는 부동산의 범위는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한다.

②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해외부동산취득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 6 조(투자금액) 해외직접투자의 투자금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1. 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이내일 것.
2.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투자금액이 장부가격 등에 비추어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인정될 것.

제 7 조(자금조달 및 운용)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 투자의 금액, 부동산취득, 소요운전자금 등 자금운용 계획과 소요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하여야 한다.

제 8 조(생산 및 매출계획)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 및 매출계획이 시설규모, 시장수요 등에 비추어 적절하고, 생산제품의 판매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제 9 조(투자금의 회수 및 이익계획)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회수계획이 적정하고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 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이익계획이 적정하여야 한다.

제 10 조(합작계약)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작계약 내

용이 국내 법령, 현지국의 법령, 기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합작계약 조건이 국내 투자자에게 불리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국의 법령이나 외국인투자 정책에 의한 일정 기간 배당금의 송금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제 11 조(투자사업의 허가 등) 외국환관리규정 제12-7조 제8항에서 ‘국별신용도가 A등급인 국가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를 말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국별신용도가 A등급인 국가
2.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국가

제 12 조(자금지원) 해외직접투자자금 지원기관이 해외직접투자 소요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투자사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한국수출입은행이 평가한 국별신용도가 E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투자사업(단, 자유무역지대, 경제개방지구 및 우리나라와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대한 투자의 경우는 제외)
2.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골프장운영업, 오락·레저시설 운영업, 숙박업, 기타 부동산을 사업의 목적물로 하거나 주요 자산으로 하는 사업(첨단기술·디자인 연구개발 사업, 보관 및 창고업과 우리 상품의 해외판매망 구축을 위한 도·소매업은 제외)
3. 금융·보험업, 가사 및 기타 서비스업, 오락관련 사업
4.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경우

제 3장 자기자금 조달 및 지급보증의 기준

제 13 조(해외직접투자금액 중 자기자금 조달)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직접투자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자기자본과 국내에서 기 조달한 원화차입액)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금액 미화 1억달러까지 : 투자금액의 10%

2. 해외직접투자금액 미화 1억달러 초과분부터 : 초과금액의 20% 이상을 '1호'의 금액에 가산

제 14 조(지급보증시의 자기자금 조달) 현지법인이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및 시설투자를 위한 현지금융(이하 '해외직접투자용현지금융'이라 한다) 이용시 모기업(현지법인을 설립한 거주자를 말하며 국내의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을 모기업으로 하고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을 모기업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보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기업은 다음 각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자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① 사업별 총투자금액(해외직접투자금액과 해외직접투자용현지금융 이용액을 합산한 금액)의 50%까지는 모기업이 자기자금 지원없이 지급보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모기업의 자기자금 지원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사업별 총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하는 지급보증분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의 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 50%를 초과하는 지급보증분 중 미화 1억달러까지 : 초과지급보증 금액의 10%
2. 50%를 초과하는 지급보증분 중 미화 1억달러 초과분부터 : 초과지급보증 금액의 20% 이상을 '1호'의 금액에 가산

③ 모기업이 현지법인 등에 지급보증을 할 경우의 당해 모기업의 자기자금 지원은 해외투자자 간주하여 외국환관리규정 제12-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괄사후관리담당기관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 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해외직접투자 허가 등의 절차에는 제13조의 내용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15 조(지급보증의 한도) ① 해외직접투자용현지금융에 대한 모기업

의 지급보증한도는 모기업의 자기자본(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한다. 다만, 모기업이 계열기업군(「금융기관감독규정」 제31조에 의한 계열기업군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모기업의 지급보증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환은행이나 모기업이 소속된 계열기업군 내의 모기업이 아닌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용현지금융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모기업이 지급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 16조(지급보증의 한도관리) ① 해외직접투자용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한도관리는 모기업의 현지금융관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담당한다.

② 해외직접투자용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고자 하는 모기업, 계열기업 또는 외국환은행은 지급보증을 하기 전에 미리 모기업의 현지금융 관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장의 지급보증에 관한 한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외국환은행이 지급보증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 현황을 모기업의 한도관리 외국환은행 앞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7조(적용면제) 재정경제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 제1항, 제2항 및 제15조의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8조(제재) 한국은행총재는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재조치를 순차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외국환관리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이에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

1. 제14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모기업은 당해 사업 총투자금액의 지급보증분 중 미화 1억달러 이하인 금액의 10%, 미화 1억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의 2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지원해야 함.
2. 위 '1호'의 제재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현지금융 지급보증을 금지함.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통첩폐지) 해외직접투자 등에 관한 통첩(외투 45750-921, 1995. 10. 9)은 이를 폐지한다.

<附錄 2>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關聯制度

1.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管理制度

	일 본	대 만	미 국	프 랑 스	영 국	독 일
정책 기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60년대 말 이후 자유화 추진, 현재 거의 모든 투자 자유화 · 최근에는 해외투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정책적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0년대 중반 이후 점차 자유화 추진, 지역별 투자지원책 마련 · 종전 수출지원 위주에서 최근 무역균형 위주로 정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화 (1960년대 중반~70년대 중반중 對新진국 투자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6년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9년 외환관리법 폐지후 완전 자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화
근거 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환 및 외국무역 관리법 · 외국법 관리령 · 외국법에 관한 省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및 기술합작 심사 처리법 · 민간 해외송금에 관한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투자·무역·서비스조사법 ·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무역 · 지급법: 보고
담당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장성: 신고 접수·허가 (일본은행: 정책 수립) · 통산성: 신고 접수(일부), 해외투자실태조사, 효율화 추진 · 일본은행: 신고 접수,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부 투자심의위원회: 허가, 신고접수 · 경제부 국제무역국: 정책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 경제 분석국 (BEA): 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재무부, 예산부, 중앙은행, 경제협력 중앙금고 (CCCE):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은행: 보고

	일 본	대 만	미 국	프 랑 스	영 국	독 일
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해외 투자시작 이후 초기에는 허가제 · 1969 ~78년 5차례 자유화 조치 실시 · 1980년 신고제 전환 · 현재 거의 모든 투자 자유화, 심사부 사전 신고제(신고 후 20일 이내 중지·변경의 권고나 명령이 없으면 자동실행). 단, 건당 3,000만엔 이하의 투자는 신고도 불필요(어업·섬유·가죽제조 등 일부 투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부분적 허가제 실시 · 1987년 연간 500만달러 이내의 해외송금 자유화 · 1990년 500만 달러 이하 투자는 투자후 6개월 이내 사후신고 허용, 투자자 요건 완화 · 투자목적 규제:원자재확보, 수출확대, 기술도입, 경제협력 증진 산업구조 조정 목적의 투자에 국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규제 조치 없음 · 투자 비율 10% 이상의 모든 투자신고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규제 조치없음 (1960년대 건당 300만프랑 이상 투자승인 필요). · 현재 500만프랑 이하의 투자는 신고 · 500만 프랑 초과시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회신이 없으면 자동 승인 · 매년 대차대조표 제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투자는 정부·중앙은행의 사전허가·신고, 사후관리를 받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산 총액이 25만마르크 이상인 투자 비율이 25% 이상인 투자는 보고 의무화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현지국과의 투자마찰의 방지를 위해 통산성을 중심으로 해외투자원활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투자 지원 시책마련:카리브·중남미(1987년), 유럽·동남아(1987년) 투자업무방안(조세·금융·보험지원 실시) 				

資料 : 한국무역협회, 1993.

2. 日本의 主要 海外直接投資 租稅支援制度

명칭	근거법	조건	주요내용
〈특별공제〉			
기술등 해외거래에 관한 소득의 특별공제	조세특별조치법 제58조	청색신고법인, 1964. 4~1992. 3월중 기술등 해외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기술(특히, 노하우: 상표권 제외)의 양도 등 해외거래에 의한 수입의 12%(건설팅 16%) 상당의 금액(소득금액의 40% 이내)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
외국세액 공제	법인세법 제69조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2. 내국법인이 외국회사에서 이자·이익배당, 잉여금 분배를 받는 경우	당해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세금 중 국외원천 소득에 대응하는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해 과세된 외국법인세법 중 이자, 배당 등에 해당하는 부분을 외국법인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
간주외국세액공제	조세조약실시에 수반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지방세법 등의 특례에 관한 省令	내국법인이 조세조약 체결국 소재 자회사에서 지불받은 배당이자·사용료 등에 대해 현지정부가 경감하는 경우	현지 조세 경감분에 대해 외국세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
〈특별준비금〉			
해외투자 등 손실 준비금	조세특별조치법 제55조 (1973. 4~92. 3)	청색신고서 제출내국법인으로 특정해외법인에 정해진 비율(15~100%)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사업 성격에 따라 결정)	사업연도 다음해부터 5년 걸쳐 후 5년간 균등 이익금 산입 가능

資料 : 일본수출입은행, 일본무역홍보사,
한국무역협회, 1993.

3.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金融支援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대 만
담당 기관	해외민간투자공사 (OPIC)	英聯邦 公社 (CDC)	부흥금융공사 (KfW)	프랑스 부역 은행 (BFCE)	Credit National	중국수출입 은행 (EIBC)
재원	정부출자금	정부차입금	정부출자금		민간 투자	정부출자금
설립 연도	1971	1948	1948	1947	1919	1979
성격	중소기업의 對개도국 투자지원	영연방 제국 중심 개도국개발 지원(공공부문 중시)	개도국에 대한 투자지원	국내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금 장기 대부		중장기 해외투자자금 대부
용자 대상 자	국내기업	영연방 역내외 민간기업, 정부	국내기업(주로 중소기업)	국내기업		국내기업
용자 대상	주로 중소기업사업, 개도국 정부승인 사업, 대상국은 원칙적 1인당 GNP 4,269달러 이하(86년) 또는 CBI국가, 1인당 GNP 984달러 이하의 개도국에 대한 사업우선	해외영토, 정부 승인 영연방 제국, 기타개도국에서의 사업	개도국에 대한 투자(상사·기술 컨설턴트의 지점 설치 포함)			주요 원재료 확보, 외국과의 경제협력 증진·수출시장 확대 사업으로서 경제부의 승인 사업
용자 비율	소요자금의 50% 이내(확장투자 75% 이내) 통상 50만~600만달러	통상 10만파운드 이상				70% 이내
대출 금리 (연율)	자본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통상 8.5~9.0% (사업의 수익성에 따라 결정)	후발개도국 2.5% 기타개도국 3.5%			3년 이내 8.5% 3년 초과 9.0%

	미 국	영 국	독 일	프랑스	대 만
상환 기간	5~12년(평균 7년)	평균 15년(거치 3~7년), 최장 40년	15년 이내(거 치 5년)		최장 7년 (연장가능)
융자 실적	· 1991년 실시: 4,000만달러 (12건) *보증실적 · 1991년 실시: 2.5억 달러 (16건)	· 1988년승인: 1.48억파운드 (37건) · 1988년말 융 자잔액:11억 파운드	· 1989년승인: 1.68억 마르크 · 1986~89년 승인:3.67억 마르크		· 1990/91년승인 :2.28억 NT달러 · 1988/89~90/ 91년 승인: 7.42억NT달러
비고	보증(기업규모 불 문)도 실시(보증료 연 2%) * 미국의 수출, 국 제수지, 고용에의 악영향 사업 지원 금지	출자, 채권취득 보증, 현지기업 관리·운영에 관한 기술제공 업무도 실시 * 국내 기업만을 대 상으로 하 는 공적 금융 기관은 없음		1972년 시작되 었으나 최근 이용 없음	· 협조 융자시 輸 銀 비중 70% 이내 · 對 중남미 투자 우대(융자비율: 투자 금액의 70%, 금리:통 상금리보다 2% 포인트 낮음)

資料 : 한국무역협회, 1993.

4. 主要國의 海外直接投資 保險支援制度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담당 기관	해외민간 투자공사 (OPIC)	통상성 무역국 수출보험과	수출신용 보험국 (ECGD)	Treuarbeit, AG	프랑스 무역은행 (BFCE)	프랑스 무역보험 회사 (COFACE)	중국수출입은행
부보 해당 사업	투자보장협정 체결국에 대한 투자가 원칙이며 1인당 GNP 4,269달러 (1986) 초과국 투자시 중소기업, 광물 투자등으로 제한함(신규 투자)	투자대상국에 긍정적효과, 日本의 국제경제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투자대상국 발전에 기여하는 영국 민간기업 또는 그 해외자회사의 해외투자(주로 대개도국), 석유 등 추출산업, 호텔부분투자 제외	투자보장협정 체결국이나 외국투자 보호 개도국(신규투자)에 대한 투자	일반제조업, 엔지니어링서비스, 광업 우대(원유 탐사 농업, 부동산 제외) 신규 또는 확장 투자	프랑스에서 수출증대, 자본재수출을 수반하는 투자	경제부와 투자대상국 정부의 승인사업
담보 대상	주식취득,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대출(3년 이상), 특허제광(5년 이상) 등(수익 포함)	출자지분, 대부금채권, 부동산에 대한 권리 등(수익 포함)	출자지분, 대부(3년 이상) 신규투자 원칙	출자지분, 출자유사대부(수익 포함), 지점·사업소 설치	출자지분, 장기대부, 보증, 채투자 자본금의 50%	출자지분, 지점·대리점 설치 자금, 장기대부	출자지분
담보 위험	통화교환성 위험(A), 수용위험(B), 전쟁·폭동 위험(C)	수용, 전쟁, 송금위험 등 비상위험(이들을 종합보험으로 인수시 신용 위험)	정치적·비상업적(수용·전쟁·송금제한) 위험	정치적위험(국유화, 접수, 전쟁·폭동, 송금불능, 지불금지, 지불유예 등)	정치적위험(물수, 지급불능, 송금위험 등)	정치적위험(투자국 관계 법규의 변화, 수출시장의 폐쇄 위험 포함)	정치적위험(수용, 전쟁·폭동, 송금위험)
담보율	투자액의 90%	90%	100%	95%	100%	100%	85% 이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대만
보험 요율 (연율)	· A:0.3% · B:0.4 ~1.5% · C:0.6 ~0.75% (산업별 차등)	· 종합 0.55 ~0.75% · 종합·신 용 0.70 ~1.75%	부보잔액에 대해 0.7~1.0%	부보액의 0.5~1% 가 기본 및 0.5% 추가	부보잔액 에 대해 0.7~ 1.0%	부보잔액 에 대해 0.4% (예외 0.5~ 0.6%)	부보금액 과 투자지 역의 상황 에 따라 매년 결정
보험 기간	12년 이내 (8년 연장 가능)	5~10년 (최장 15년)	3~15년 (보통 15년)	5~15년 (최장 20년)	15년 (광업 20년)	15년 이내	7년 이내 (최장 10년)
보상 률	90%	90% (신용위험 40~80%)	90%	95%	90~95% (투자 보 장 협정체 결국의 경 우 마지막 3년 75, 65, 50%)	95%	
인수 실적	1988년 9월말 잔액 (보험금): 48.25억달러	1990년: 574.14억엔, 86~90년: 2,458.82 억엔(회계연 도 기준)	1990/91년 부보액: 4,200만 파운 드(15건), 90/91년 말 부보잔액: 1.91억 파운 드(102건)		1988년 인 수 실적: 25건, 18억프랑 (투자 총액)		
비고	1948년 세계 최초로 실시	1956년 세계 2번째로 실시	1972년 시작	1960년 시작. Treuarbeit 는 민간기업 으로 정부 보 험업무를 대행	부처간위 원회에서 부보 결정	경제·재 무부에서 부보 결 정, 수출 실적미달 시 제재	

資料 : 한국무역협회, 1993.

5. 日本의 海外直接投資 情報支援體制

	투자상담	위탁조사	연 수	세미나	자료실	해외지사	기 타
일본무역진흥회	○	○		○	○	○	○
일본수출입은행	○				○	○	○
일본재외기업협회			○	○	○		○
아시아경제연구소	○			○	○		○
해외경제협력기금	○					○	○
국제협력사업단	○	○	○	○	○		
일본상공회의소	○			○		○	○
일본생산성본부			○	○	○	○	
아시아기술협력회		○	○				
해외기술자연수협회			○				
해외자녀교육진흥재단							○
해외무역개발협회	○					○	○
해외일본인의료기금		○				○	○
국제개발센터			○		○		
국제건설팅서비스협회		○					
국제상사중재협회	○			○	○		○
상공조합금융공고	○			○		○	○
중소기업금융공고	○			○			○
중소기업사업단	○		○	○		○	○
일본국제협력기구	○	○					
일본플랜트협회	○			○	○		○
무역연수센터			○				

資料 : 일본무역진흥회.
한국무역협회, 1993.